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420-01

2013. 12

맞춤형 농정지원 등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선방안 연구

Improving the Farm Manager Registration Program  
for its Efficient Application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맞춤형 농정지원 등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수석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종선 부연구위원  
                  변아름 연구원

## 요 약

---

2008년에 도입되어 시행 5년이 되는 농업경영체등록제는 그간 제도적 활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책사업과의 연계가 아직 제한적이고 등록정보를 활용하는 농림사업과의 연계는 미흡한 수준에 있다. 현재 이러한 여건에 있지만 최근 농정의 방향은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매개로 하여 농정추진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등록제를 통해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농업경영체를 유형화하여 맞춤형 농정의 기반을 구축하며, 등록정보를 통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등록제를 매개로 하는 농정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로드맵과 이 로드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행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결과로서 먼저 농업경영체등록제가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본정보로 하는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등록제의 등록정보와 농림사업과의 연계는 정보 획득의 용이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근거로 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셋째, 맞춤형 농정 추진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유형화 기반으로 등록정보를 활용한다. 넷째, 등록제의 등록절차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개념 및 인증기준을 정립한다. 다섯째, 등록정보를 통계적 및 정책자료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여섯째, 농업인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고객서비스(PCRM) 수단으로 등록제를 활용한다.

발전방향에 입각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여기서의 쟁점은 통합DB 구축방식에 대한 것과 타 부처(기관)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이용 가능성 여부 및 이용절차, 그리고 통합관리대상이 되는 농림사업의 연계 우선순위와 대상사업의 관리체계에 대한 것이다. 쟁점별 검토내용은 사안에 따라 단일안 또는 선택적 대안 형태로 제시되거나 시기적으로 구분되는 단계론 형태로 제시되었다. 맞춤형 농정 추진

을 위한 농업경영체 유형화 방안으로는 표준소득에 의한 경영체 유형화 방식이 등록정보를 활용하는 적절한 모델로 제시되었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제도 본연의 특성상 농업경영체의 등록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면 농업경영체 인증기준을 정립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인증기준을 제도화하려면 농업경영체의 개념 정립과 함께 업종별 최소영농규모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농업경영체 개념에는 사업체 개념이 내포되어야 하고, 사업체 개념에는 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인증기준 정립에서는 ‘물적 요건을 구비한 농업경영주’ 개념과 연결시켜 세 가지 업종별(경종농업, 시설농업, 축산업) 등록자격기준을 최소영농규모 형태로 제시하였다.

## ABSTRACT

## Improving the Farm Manager Registration Program for its Efficient Appl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improve the farm manager registration program introduced in 2008 to better support agricultural policies, mainly by evaluating the current process and redefining the direction of the program.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registration program was found to be low, as the program was not connected with the agricultural policy projects. This research will, therefore, focus on addressing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registration program, resetting the directions of its development and refining the measures of application.

The revised directions of the development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Korean 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 System (KIACS) needs to be established, in which the registered data of the program play a key role as basic information. Second, the connection of the registration program with the agricultural policy projects should be built step by step based on the ease of obtaining information and the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Third, in order to meet diverse needs of farmers, it is necessary to use the registered information as a means of the foundation for implementing customized agricultural policy. Fourth, the registration program should be operated as a certification of agricultural holdings. In the process, the criteria of agricultural holdings should be established. Fifth,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otential for statistical utilization of the registered data. Sixth, customized policy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 meet the various needs of farmers and the registration program should be used as a means of implementing the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PCRM).

The most important measure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registration program is the establishment of KIACS. The basic elements of this process are as follows: 1. the way to create the integrated database for KIACS, 2. the possibility to use the tax data of agricultural holdings, 3. the order of the agricultural policy projects, which are applicable to the KIACS. The proposals, which correspond to the respective element, will be made in the form of the selection or stepwise.

The farm manager registration program was introduced to support the farm management of agricultural holdings effectively, but the registration program has an inherent characteristic of functioning as the certification standard of agricultural holdings. Therefore, the registra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so that it can operate very well in these two dimensions. To set up the recognition criteria of an agricultural holding,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concept of the agricultural holding and its minimum size. The term 'agricultural holding' should include a concept of an enterprise which a farmer manages on the independent material basis. In this respect, the criteria for registration of three agricultural sectors are proposed in the form of the minimum size.

Researcher: Soosuk Kim, Jong-Sun Kim, Areum Byun

Research period: 2013. 8. - 2013. 12.

E-mail address: soosuk@krei.re.kr

## 차 례

---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 제2장 농업경영체등록제 운영 실태

1. 등록제 추진경과 및 운용현황 ..... 5
2. 등록제에 대한 농업인의 태도 및 의향 ..... 16

### 제3장 외국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1. 독일 ..... 27
2. 오스트리아 ..... 40
3. 제도 비교 및 시사점 ..... 48

### 제4장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방안

1. 농업경영체등록제 발전방향 ..... 53
2. 등록제도 개선방안 ..... 59

### 제5장 농업경영체등록제 활용방안

1. 등록정보의 통계 및 정책자료적 활용방안 ..... 97
2. 등록제에 의한 스마트 농정 지원방안 ..... 116

###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 요약 ..... 123
2. 정책적 제언 ..... 146



참고 문헌 .....	147
부록 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분류 .....	149
2: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농업인용) .....	153

## 표 차 례

---

### 제2장

표 2-1. 농업경영체등록제 담당인력 및 인건비 .....	9
표 2-2. 농업경영체등록제 등록대상 정보 .....	10
표 2-3. 농업경영체등록제 등록 및 조사실적 (2012년) .....	11
표 2-4. 2013년도 농업경영체등록제 연계 지원사업 현황 .....	12
표 2-5. 전산검증 정보 .....	14
표 2-6. 2012년 등록제 현장 확인결과 통보현황 .....	15
표 2-7. 등록제 인지도 변화 추이 .....	18
표 2-8. 2011년과 2013년의 등록제 효과 비교 .....	24
표 2-9. 2011년과 2013년의 등록제 기대수준 비교 .....	26

### 제3장

표 3-1. 외국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비교 .....	52
--------------------------------	----

### 제4장

표 4-1. 농정 관련 DB 현황 .....	60
표 4-2. AgriX DB 구성 현황 .....	61
표 4-3. 농식품부의 전체 수행사업 현황 (2012) .....	62
표 4-4.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 현황 (2012) .....	62
표 4-5. 통합DB와 대상사업의 연계성 .....	64
표 4-6. 통합관리 대상사업의 유형구분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 .....	71
표 4-7. 경지관련 직불제 추진방식 비교 .....	75
표 4-8. 전업농/겸업농 분류방식 .....	79

표 4-9. 주업농/부업농/자급농 분류방식 .....	79
표 4-10. 영농형태별 농가유형 분류방식 .....	80
표 4-11. 농지원부와 등록제의 등록정보자료 비교 (경영체 수) .....	93
표 4-12. 농지원부와 등록제의 등록정보자료 비교 (필지 수) .....	93

## 제5장

표 5-1. 통계적 활용 가능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99
표 5-2. 개인정보 포함된 농업경영체 등록 항목 .....	100
표 5-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유사한 통계자료 현황 .....	101
표 5-4. 농업경영체 등록DB의 통계적 활용 검토 .....	102
표 5-5. 현행 화훼류 재배현황 통계 개요 .....	112
표 5-6. 현행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생산실적 통계 개요 .....	113
표 5-7. 농림어업총조사 통계 개요 .....	114
표 5-8. 농림사업(농지연금) 신청시 등록DB 활용방안 .....	120

## 그림 차례

---

### 제2장

그림 2-1.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농업인 인지도 .....	18
그림 2-2. 농업경영체등록제 미등록 사유 .....	19
그림 2-3.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	21
그림 2-4. 등록제와 농지원부의 통합방안 (전체 응답자 대상) .....	22
그림 2-5. 농업경영체등록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견 .....	24
그림 2-6. 기존의 등록정보만으로 쉽게 연계될 수 있는 정책사업 .....	25
그림 2-7.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향후 기대수준 .....	25

### 제3장

그림 3-1.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	29
그림 3-2.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체계 .....	36
그림 3-3. 독일의 InVeKoS 농업경영체 등록체계 .....	37
그림 3-4. 독일의 농업경영체 데이터 등록과정 .....	38
그림 3-5. 독일의 단일직불금 관리체제 .....	39
그림 3-6. 오스트리아의 농업경영체 등록체계 .....	40
그림 3-7. 오스트리아 InVeKoS 운영체계 .....	45

### 제4장

그림 4-1.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취지 .....	55
그림 4-2. 농업경영체등록제 활용의 기본방향 .....	58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연구의 필요성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2007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6월부터 본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시행 5년에 이르고 있음.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일괄등록을 마치고 2010년부터 상시관리체제로 들어가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일괄 등록정보에 대해 검증을 진행함과 동시에 각종 농림사업의 신청자격으로 활용되고 있음.
- 당초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한 취지는 농가 및 농업법인을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신고를 기초로 기본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농업경영체에 적합한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에 있었음. 부차적으로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별 정책사업 신청에서의 중복과 분산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함에 있었음.

- 시행 5년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이러한 기본방향을 따르고는 있지만, 정책사업과의 연결이 속도를 내지 못해 등록제의 동력이 떨어지는 상태에 있음. 한마디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그 활용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책사업과의 연계가 아직 제한적이고 등록정보를 활용하는 농림사업과의 연계는 미흡한 수준에 있음.
- 이러한 현실 하에서 최근 농정의 방향은 스마트 농정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직불사업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등록제를 보완·발전시켜 효율적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이것은 농정추진체계를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매개로 하여 새롭게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 다시 말해, 등록제를 통해 농업경영체를 유형화하여 맞춤형 농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개별 경영체를 지원하는 각종 직불사업을 통합관리하며, 등록정보를 통계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등록제를 매개로 한 농정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고, 이 로드맵을 구체화할 수 있는 단계적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태임.

## 1.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추진 및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등록제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등록정보의 통계적 활용을 포함한 등록DB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음.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1. 연구 내용

- 이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됨.
- 제2장에서는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운영실태가 분석됨. 실태분석의 주된 내용은 그간의 등록제 추진과정 및 내용에 대해 분석하는 것과 등록제의 주체인 농업인들이 인식하고 이해하는 등록제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성됨.
- 제3장에서는 외국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즉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분석됨. 사례 국가들은 모두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고유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EU 차원의 단일직불금을 집행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의 하나로 농업경영체등록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들 국가들에 있어 제도 운용의 유사점 및 차이점에 대한 비교분석이 여기서 이루어짐.
- 제4장에서는 농업경영체등록제의 발전방향이 제시되고, 이러한 발전방향에 입각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되고 분석됨. 또한 분석결과에 입각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이 단기적 형태와 중장기적 형태, 또는 제1안과 제2안 등의 선택적 형태로 제시됨.
- 제5장에서는 등록제의 활용방안, 특히 새로운 등록신청서에서 산출되는 등록DB의 활용방안이 다방면으로 검토됨. 활용방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등록정보를 통계적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인데, 이 분야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검토됨. 나아가 등록정보 혹은 등록제 자체를 활용하여 농업인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제시됨.



-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내용에 대한 요약과 함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통합DB 구축 실행방안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함.

## 2.2.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문헌조사, 국내외 현지조사, 설문조사결과 비교분석, 전문가 및 담당자 면담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함.
- 문헌조사에서는 농업경영체등록제 관련 선행연구와 외국의 관련제도를 조사하고, 등록제와의 통합이 검토되어야 하는 농지원부 관련 문헌 및 법령을 조사함.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의 기준과 관련되는 농업인 규정과 농업경영체 유형화와 관련되는 농가유형 구분 기준에 대한 법령 및 지침 등을 고찰함.
- 국내 현지조사에서는 농관원 본부 및 지역사무소를 방문하여 등록제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시·군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등록제의 활용현황 및 직불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파악함. 해외 현지조사의 일환으로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일반과 EU의 단일직불금 집행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InVeKoS)의 운영실태를 조사함.
- 설문조사결과 비교분석에서는 연구진이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한차례씩 실시한 등록제 관련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함.
-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 및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와 별도로 농식품부의 농업경영체등록제 TF에 참가하여 관련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토론을 통해 도움을 받음.

## 제 2 장

---

### 농업경영체등록제 운영 실태

#### 1. 등록제 추진경과 및 운용현황

##### 1.1. 등록제 추진경과

- 농업경영체등록제는 2004년 2월 농림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안정계정’의 도입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농가등록제’의 도입이 제시되면서 비롯됨.
  
- 2007년 농업경영체등록제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함.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실시된 시범사업에서는 도별 시범사무소 9개소에서 1개 읍·면씩 5,591개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그 중 4,506개 농가가 등록함.
  - 시범사업 결과, 농가들이 소득관련 정보, 학력, 농기계 보유현황, 농업 조수입, 농외소득, 농업보험 정보 등의 등록을 기피함.
  - 이에 따라 이들 정보는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여 본사업의 등록항목에서 제외함.

- 이후 등록 및 조사 방식, 등록프로그램 운용 등에 관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지자체와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후 2008년 5월 등록제의 추진을 확정함.
- 사실상의 등록제 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2008년 6월부터 본사업을 실시하여 2009년 12월까지 일괄등록을 진행함.
  - 이 기간에는 등록정보의 검증 없이 등록신청한 정보를 그대로 등록하는 일괄등록방식을 채택함.
- 2010년부터는 등록된 정보를 검증하고 추가적인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을 하는 상시관리체제로 들어감.
  - 2010년 말 약 114만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었는데, 2012년 말에는 약 149만 농업경영체로 등록경영체 수가 늘어남.<sup>1</sup>
- 등록제에 대한 정책적 활용은 ① 등록 여부에 따라 정책지원사업 자격요건으로써 활용되는 것과 ② 등록된 정보(농지, 인력, 재배작물 정보 등)를 바탕으로 정책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구분됨.
  - 정책지원사업의 자격요건은 면세유 지원사업 등 41개 정책사업에서 활용되고 있음.
-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농가소득안정직불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여 2010~2012년 기간동안 세 차례에 걸쳐 도상연습을 실시함.
  - 제1차 도상연습은 2010년 6월에서 10월까지 5개월간 9개 품목에 대해 9개 시·군(9개 읍·면)의 4,420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함.

---

<sup>1</sup> 이는 면세유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추가로 등록하는 경영체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한 농가 내에서 분리등록하는 경영체도 포함됨.

- 제2차 도상연습은 2011년에 19개 품목에 대해 18개 시·군, 44개 읍·면·동의 10,000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함.
  - 제3차 도상연습은 2012년 5월에서 12월까지 8개월 동안 35개 품목에 대해 25개 시·군, 48개 읍·면·동의 10,000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함.
- 세 차례의 도상연습 결과, 축산과 과수 등 고소득품목에 직불금이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등록정보로 추정할 수 있는 농업소득(표준소득)으로 직불금을 지불하기에 추정소득의 정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농가소득안정직불사업과 연계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됨.
- 2012년 발농업직불사업 도입시 신청내용 확인 및 이행점검 수단으로 등록제의 등록정보가 활용됨.
- 2013년 농정의 추진방향이 스마트 농정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직불사업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보완·발전시켜 효율적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함.
- 다시 말해 농정의 방향이 등록제를 통해 농업경영체를 유형화하여 맞춤형 농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개별 경영체를 지원하는 각종 농림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전환하게 됨.
  - 이에 따라 농정당국은 등록제를 재정비하여 농림사업과 연계하는 농정체계 구축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1.2. 추진내용 및 실적

### 1.2.1. 관리기구 운용 현황

#### 가. 관리기구의 제도화 현황

- 농업경영체등록제의 관리는 등록사업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농식품부 내의 업무 분장의 일환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담당해 오고 있음.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등록제의 관리기구를 제도화하는 노력은 미약했다 할 수 있음.
  - 이는 등록제의 관리기구를 농관원으로 명문화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이나 등록제 실시요령 등의 규정집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
- 그런데 농관원을 등록제 관리기구로 명시하는 규정은 2013년 9월 농식품부가 마련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 계획<sup>2</sup>에 따라 향후 명문화될 예정임.
- 등록제의 관리를 위한 실시요령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음. 현재 등록제의 관리는 농관원에서 해마다 작성하는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있음.
  - 농관원이 등록제 관리기구로 제도화되면 등록제의 실시도 실시요령에 해당하는 규정집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sup>2</sup> 이 계획에 따르면, 동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과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 제6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수정 요청 등의 권한을 농식품부장관이 농관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시행령 제22조를 신설하여 명시하는 것으로 됨.

## 나. 인력 운용 현황

- 농업경영체등록제에 종사하는 인원은 2013년 현재 747명으로 이 중 126명이 농관원 정규직원이고, 621명이 조사원으로 고용된 자임.<sup>3</sup>
  - 고용된 조사원은 등록·관리를 지원하고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검증하는 업무를 담당함.
- 조사원은 세부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로 구분되는데, 그 구성에 있어 무기계약 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
  - 예를 들어 2011~13년 기간에 조사원 수는 621명으로 동일하지만, 그 구성에 있어 무기계약 근로자는 2011년의 261명에서 2012년 377명, 2013년 380명으로 늘어남.

표 2-1. 농업경영체등록제 담당인력 및 인건비

단위: 명,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담당공무원 수		126	126	126	126	126
조사원	인원	881	697	621	621	621
	인건비	116	94	97	101	105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조사원 운영현황(2013)

## 1.2.2. 등록현황

### 가. 등록정보 내용

- 당초 등록정보는 맞춤형 농정 실현과 농림사업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 정보와 특정 농림사업 신청시 선택적으로 등록이 필요한 정보로서 연계처리

<sup>3</sup> 정규직원은 농관원 9개 지원과 109개 사무소에서 각 1명씩 지정된 직원과 본원의 농업 경영정보과 직원 8명으로 구성되며 농업경영체의 등록 및 지도·관리 업무를 담당함.

가 되는 상세정보로 구분되었고, 2013년 8월 등록신청서의 변경이 있기 전까지 전체 등록대상 정보는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축산정보 등 6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음.

- 그리고 대상품목은 경영체가 생산하는 전체 농·축산물이고 표준코드 중 분류에 해당하는 1,464개 품목이었음.

○ 2013년 8월 등록제 개선안 추진에 따라 등록항목 수는 기존 60개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10개 항목을 삭제하고 유통·가공·소득 등 43개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93개 항목으로 증가될 예정임<표 2-2>.<sup>4</sup>

- 이 중 24개 항목은 농업경영체가 직접 등록하지 않고 타 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등록토록 함.

표 2-2. 농업경영체등록제 등록대상 정보

구분	항목 수	등록대상 정보
일반현황	33	- 경영주·경영주외농업인·농외종사자 인적사항/영농이력 - 농업법인의 일반 현황, 출자규모
농지 및 농작물 생산	11	- 농지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면적, 재배품목, 수확면적 - 직불금 신청(대상농지 여부, 지급신청면적)
축산정보	7	- 시설(소재지, 면적, 용도) - 사육(축종, 사육 및 출하량)
유통 및 가공	5	- 유통: 주요 품목, 판매금액, 판매처별 비율 가공: 품목, 연간판매액
소득, 자산, 부채	14	- 소득: 농업조수입, 농업소득, 농외소득 자산(유형별) 및 부채(용도별)
농업관련 용자·보조금	7	- 지원받은 사업명, 사업량, 집행기관, 총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
기타	16	- 교육, 후계농업인 선정, 친환경인증, 면세유 배정량
합계	93	

<sup>4</sup> 여기서는 등록정보를 기본정보와 상세정보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

## 나. 등록 실적

- 2012년 말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현황을 보면, 총 1,488,383개 농업경영체가 등록하였는데, 이는 2009년의 농림어업총조사에서 파악한 전체 농가 수 (1,194,716호)의 약 125%에 해당하는 숫자임.
  - 이것은 한 농가 내에서도 2개 또는 그 이상의 경영체로 중복 내지 분할 등록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2년에 현지조사 한 농업경영체는 328,785 개소로 전체의 22.1%를 차지하고 있음.
  - 변경등록은 일괄등록시 등록된 내용이 변경된 것을 등록하는 것으로 2012년 약 85만7천 건이 변경등록됨.<sup>5</sup>

표 2-3. 농업경영체등록제 등록 및 조사실적 (2012년)

등록경영체		현지조사		변경등록	
등록수	비율(%)	조사수	비율(%)	건수	비율(%)
1,488,383	100	328,785	22.1	857,405	57.6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자료. 농업경영체 등록 및 조사실적(2013)

## 1.2.3 정책적 활용 실적

### 가. 정책사업과의 연계

-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제와 정책사업과의 연계는 개별 등록항목에 나타난 구

<sup>5</sup> 변경등록 건수와 변경등록 경영체 수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2012년 한 해 동안 한 경영체가 한 번의 등록변경을 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변경등록 한 경영체는 전체 경영체의 57.6%에 달한다 추정할 수 있음.



체적 정보를 활용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주로 등록제의 등록여부가 개별 경영체 지원과 관련한 정책사업의 지원조건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준에 있음.

표 2-4. 2013년도 농업경영체등록제 연계 지원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지원자격(39)	농지규모화사업(농지매매사업), 농지규모화사업(농지교환·합병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첨단온실신축사업,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사업,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과원영농규모화사업,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친환경비료지원사업(유기질비료지원), 친환경비료지원사업(토양개량제 지원), 농업자금이차보전(농업종합자금지원), 농업자금이차보전(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취약농어가 인력지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경영이양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가축및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축산계열화), 종축장전문화지원사업,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폐업지원사업,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사업, 기자재 영세율 사업,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사업
우선권 부여(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간접보조사업자 선정시 등록제에 등록된 농업법인에게 우선권 부여)
지원자격 및 등록정보 (1)	발농업직접지불제 (*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자료. 농업경영체등록제 연계 정책지원사업 현황(2013)

- 2010년 농식품부의 정책사업 가운데 15개 사업이 해당 사업지원 자격조건으로서 농업경영체등록제의 등록이 요구된 이후, 2011년에는 28개 사업이, 그리고 2012년부터는 농업경영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41개의 정책사업 및 세계지원사업이 등록제의 등록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 됨<표 2-4>.

-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기자재 영세율 포함)은 등록제에 등록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하여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농가경제에 영향이 큰 정책사업과 연계되는 경우 신규등록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sup>6</sup>

#### 나. 정책지원 부당수령자 적발

-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등록정보에 대한 검증절차를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허위정보로 부당하게 정책지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는 역할을 함.
- 등록정보의 정확성 검증은 일괄등록된 정보에 대해 전산검증을 통해 정보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영체를 선정한 후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 전산검증

- 등록정보에 대한 검증은 먼저 전산검증을 실시하여 정보 간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경영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전산검증은 경영체등록정보와 타 기관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일체 검증 및 상시검증 형태로 이루어짐.
  - 등록제 관리기관인 농관원은 9개 행정 및 공공기관의 19개 정보와 전산상으로 연계하여 상호 정보가 불일치하는 등록정보를 찾아내고 있음<표 2-5>.

<sup>6</sup> 예를 들어 2011년에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과 등록제가 연계된 후 신규등록이 7주 동안 8만 호에 달하는 사례가 나타남.

- 일제검증의 주된 검증사항은 경영체 적합 여부와 농지 관련 정보임.
  - 경영체 적합 여부에서는 주민정보, 실경작 정보(벼 매입실적, 출하 품목 등), 가축사육 정보 등을 검증함.
  - 농지정보에서는 토지대장 지적정보, 실경작 정보(각종 직불제, 친환경인증 등의 농지전용 정보를 활용한 실경작 여부 검증), 재배작목 정보 등이 검증됨.
- 상시검증은 실시간 연계가 가능한 타 기관의 전산정보와 등록정보 일치 여부를 상시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임.
  - 검증내용으로는 주민 정보, 토지대장, 농지조서, 대상자 사업이력, 농지 사업이력 등이 됨.

표 2-5. 전산검증 정보

기관	검증정보
농식품부(5)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축산업등록제
농산물품질관리원(2)	친환경농산물 인증, GAP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도축정보
안전행정부	주민정보
국토교통부	토지대장 정보
농협중앙회(3)	벼 매입 실적, 출하품목, 면세유 배정 정보
농어촌공사(4)	농지규모화사업, 경영이양직불제,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 전용정보
낙농진흥회	납유 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	소 이력제 등록정보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3), 「2013년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계획」

## □ 현장조사

- 등록정보 현장조사 대상자는 ① 정책지원 자금수급 신규 경영체, ② 친환경

등 인증 필지, ③ 중복 등록 필지, ④ 일제검증 결과 부적합 경영체, ⑤ 변경 등록 불응 경영체, ⑥ 관외 거주 경영주 등이 됨.

- 현장조사를 통해 등록된 경영체 정보와 실제 정보가 다를 경우에는 정책사업 추진시 참고할 수 있도록 매달 담당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짐.
  - 2011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체별 재배면적 및 실경작 여부 등을 파악하여 면세유 부당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농협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있음.

표 2-6. 2012년 등록제 현장 확인결과 통보현황

사업명	통보 건수	비율
면세유류 지원사업	5,441	42.4
쌀소득보전직불제	3,380	26.4
친환경직불제	649	5.1
조건불리직불제	1,896	14.8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290	10.0
친환경비료지원사업	153	1.2
기타*	10	0.1
합 계	12,819	100.0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3. 1. 16일자 보도자료

- 2012년 한해 동안 정책자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경영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총 12,819건의 부당수령 사례를 적발해 관련기관에 통보하였는데, 이 중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사업에서 부당수령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남<표 2-6>.
  - 면세유류 지원사업이 전체의 42.4%, 쌀소득보전직불제가 26.4%를 차지함.<sup>7</sup>

## 다. 발농업직불제와 연계

-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정책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지만, 발농업직불제는 등록정보를 사업추진에 활용한 선도적 사업에 해당함.
- 발농업직불제는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검증함.
  - 2012년 발농업직불제의 신청면적은 8만4천ha였지만,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활용한 현장점검 결과 사업대상지가 신청면적의 68.1%인 5만7천ha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냄.
- 발농업직불제의 대상농지는 등록제에 등록된 필지로 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 사업의 이행점검을 등록제 관리기관인 농관원이 담당하게 하고 있음.

## 2. 등록제에 대한 농업인의 태도 및 의향

### 2.1. 설문조사 개요

-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운용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과 제도운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중 무작위로 추출된 농업인 1,000명에 대해 2013년 6월에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함.
  - 회수된 설문지는 526부로 응답률이 52.6%임.<sup>8</sup>

<sup>7</sup> 2011년도에도 총 12,212건의 부당수령 사례를 적발하였는데, 여기서는 쌀소득보전 직불제가 전체의 45.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면세유류 지원사업으로 32.0%를 차지함.

<sup>8</sup> 농업인 설문조사 분석은 김수석(2013b)에서 분석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설문 응답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김수석(2013b), p. 19 이하 참조.

-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설문은 2011년 10월 선행연구인 김수석 등(2011)에서도 실시되었는데,<sup>9</sup> 설문내용 중 동일한 항목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추이를 관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두 설문의 결과를 비교분석함.

## 2.2. 설문조사 결과

### 2.2.1. 등록제에 대한 인지도

-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등록제가 무슨 제도인지’, ‘어떤 방법으로 등록하는지’, ‘정책적 수혜를 받기 위해 경영체등록이 필요하다’는 것’과 ‘등록한 정보가 바뀌면 신고해 변경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설문함.
  - 등록제에 대한 인지도는 조사항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70~80% 수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됨<그림 2-1>.
- 조사항목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은 ‘정책적 수혜를 받기 위해 경영체등록이 필요하다’는 항목이었는데, ‘잘 알고 있다’로 응답한 비율이 45.4%, ‘대충 알고 있다’가 34.0%로 전체 인지도가 79.4%로 조사됨.
  - 이는 2011년부터 실시한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사업 등에서 농업경영체등록을 의무화한 것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설문결과를 2011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등록제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표 2-7>. 특히 정책적 수혜를 받기 위해 등록해야 한다는 사항은 20% 이상의 인지도 상승을 보여줌.

<sup>9</sup> 2011년 연구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1,000명에 대해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24명의 응답을 받았음.

그림 2-1.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농업인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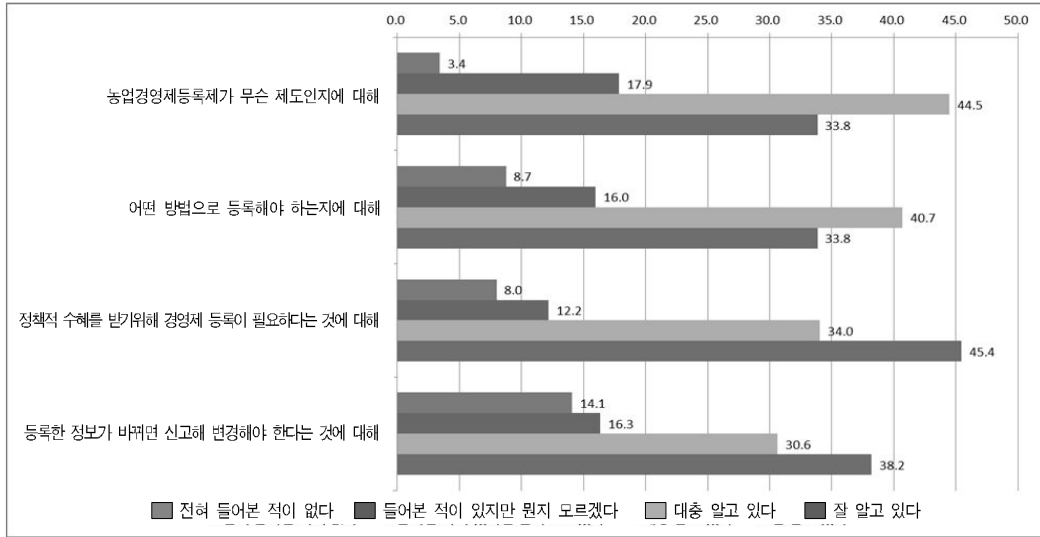


표 2-7. 등록제 인지도 변화 추이

구 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이 있지만 뭔지 모르겠다	대충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등록제가 무슨 제도인지	2011	8.6	23.1	43.1	25.0
	2013	3.4	17.9	44.5	33.8
어떤 방법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2011	16.0	20.2	34.5	28.1
	2013	8.7	16.0	40.7	33.8
정책적 수혜를 받기위해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	2011	17.0	23.8	34.7	24.0
	2013	8.0	12.2	34.0	45.4

주: 잔여비율은 무응답임.  
 자료: 김수석 등(2011) 및 김수석(201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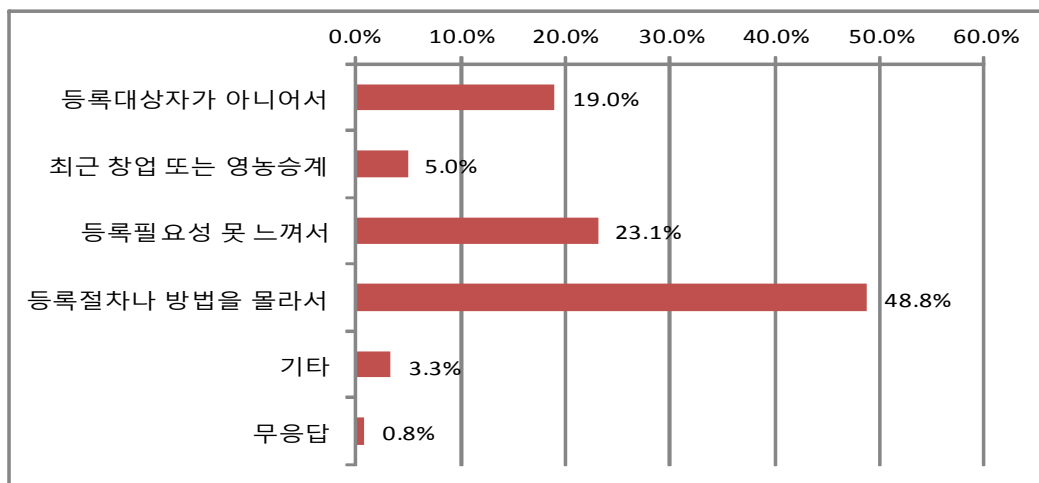
### 2.2.2. 등록 현황

○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등록하였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77.7%

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1년도 설문조사의 등록률 67.9%보다 약 10%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117명의 응답자에 대해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48.8%가 ‘등록하는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23.1%가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9.0%가 ‘등록 대상자가 아니어서’ 라고 응답함<그림 2-2>.

그림 2-2. 농업경영체등록제 미등록 사유



- 미등록 응답자 중 57.3%는 곧 등록할 예정이라 응답하였고, 38.5%는 앞으로도 등록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함.
-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2012년 말 현재 약 149만 농업경영체가 등록하여 총 농가수(2011년 말 현재 116만호)보다 30만개 이상 많지만, 전체 농가 중 10~20% 정도는 아직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음.
  - 설문조사상으로 약 22%의 농가가 미등록으로 나타났지만, 이 중 실제로



등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농가 비율 등을 감안할 때<sup>10</sup> 적어도 전체 농가의 10% 정도는 아직 등록제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전체 농가의 10%는 약 11만호 되는데, 이를 기초로 할 때 현재와 같은 조건 하에서 농업경영체등록제의 등록대상 경영체 수는 최대 160만(149만+11만) 경영체가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2.2.3. 등록정보의 정확성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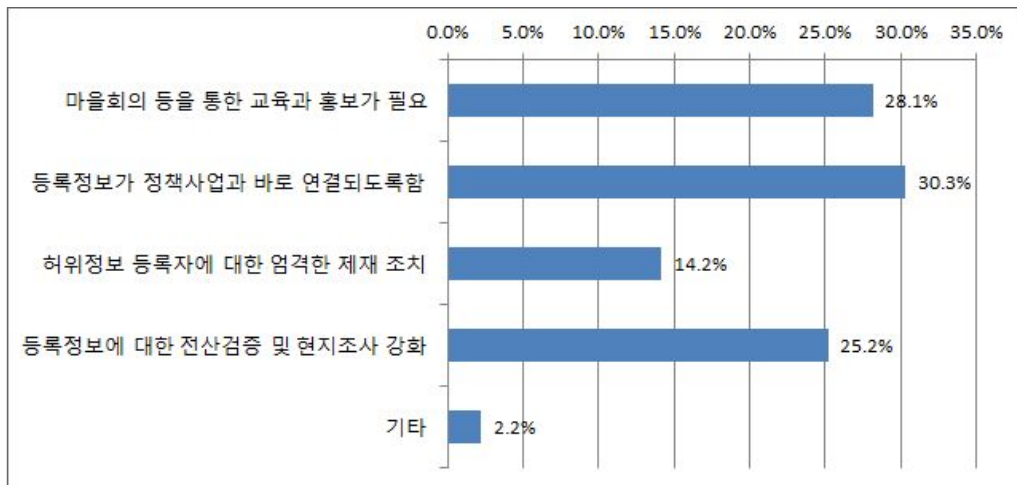
-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는데 애로점에 대해서는 ‘작물재배나 가축사육이 계속 흐름으로 진행되어 등록내용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실제 경작하지 않은 토지소유자가 동시에 등록하기 때문에 정보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각각 44.0%와 41.6%로 높게 나타남.
- 농업경영체가 정확한 등록정보를 기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농관원이 노력해야 할 활동에 대해서는 ‘등록정보가 정책사업과 곧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30.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마을회의 등을 통해 등록제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의견(28.1%)과 ‘등록정보에 대한 전산검증 및 현지조사를 강화한다’는 의견(25.2%) 순으로 나타남<그림 2-3>.
  - 반면에 2011년 조사 때에는 이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50.6%가 마을회의 등을 통한 등록제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였고, ‘등록정보가 정책사업과 곧바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sup>10</sup> 등록제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농업인들 중에는 실제로는 등록하였지만 농업경영체등록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등록 여부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답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이는 응답자들의 의견 개진 내용 중에 농업경영체를 농업법인으로 이해하거나 농업경영체등록을 축산업등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임.

의견은 27.3%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음.

- 이는 등록제 추진과정에 따른 농업인들의 의식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등록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만으로 부족하고 정책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림 2-3.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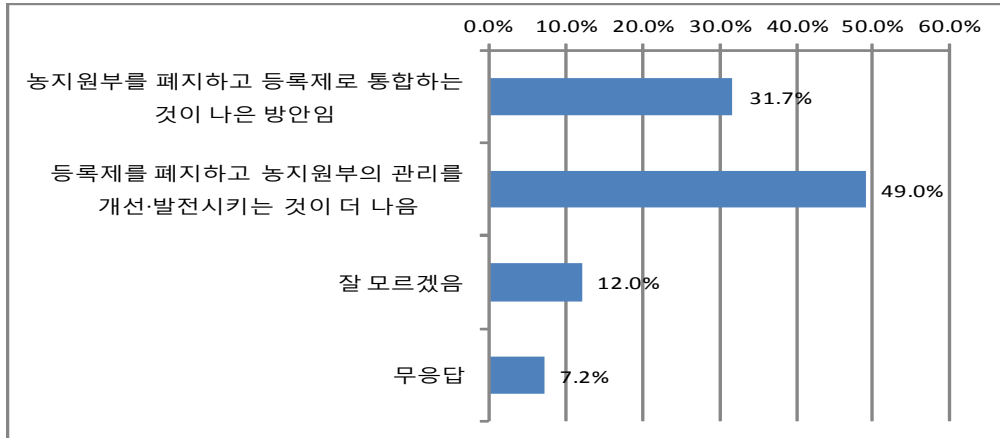


#### 2.2.4. 농지원부와의 통합

- 등록정보 내용상의 유사성으로 인한 이중등록 문제와 농가(농업경영체) 인증수단의 이원화 문제로 인해 농업경영체등록제와 중복이 된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농지원부와의 통합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먼저 전체 설문응답자 526명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여기서는 응답자의 71.1%가 두 시스템의 통합에 대해 찬성함.
  - 설문응답자 중 등록제에 등록한 자에 대해 조사하면 통합찬성률이 76.5%가 됨.

- 그런데 여기서 농가(농업경영체) 인증 수단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차원에 통합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통합하는 것보다 농지원부로 통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응답이 보다 큰 비율을 차지함.
- 전체 응답자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49%가 등록제를 폐지하고 농지원부의 관리를 개선·발전시키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 응답하였고, 농지원부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31.7%만 찬성함 <그림 2-4>.
  - 등록제에 등록된 응답자 중에서는 50.9%가 등록제를 폐지하고 농지원부의 관리를 개선·발전시키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 하고, 농지원부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34.5%만 찬성함.

그림 2-4. 등록제와 농지원부의 통합방안 (전체 응답자 대상)



- 농지원부로 통합이 농업경영체등록제로의 통합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한편으로 설문의 구성에서 농가(농업경영체) 인증 수단의 통일이란 측면을 강조한 결과에 기인하는 면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체등록제가 농가(농업경영체) 인증의 대표적 수단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만큼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반면에 농지원부는 1973년에 처음 도입되어 40년이나 사용되어 왔고, 실질적인 농가 인증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폐지가 쉽게 용인되지 않는 정서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됨.
- 또한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활용이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므로 등록제가 갖는 종합적인 특성(경영체 인증+농림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됨.

## 2.2.5. 등록제 활용 현황 및 기대효과

-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등록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는 정책사업에 사업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6.2%가 사업신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 2011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1.3%가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는 정책사업에 사업신청을 하였다고 응답함.
- 지금까지 추진된 농업경영체등록제의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51.8%가 ‘아직까지 등록제의 효과가 약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사업과 연계되면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응답함.
  - 반면에 응답자의 27.1%는 ‘등록만 했지 실제 활용도는 거의 없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15.4%는 ‘농업경영체 인증기준으로 등록제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냄<그림 2-5>.
- 이 내용을 2011년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등록제의 효과가 큰 폭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점진적인 상승추세에 있음을 보여줌.
  - 예컨대 ‘농업경영체 인증기준으로 등록제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견이 2011년의 12.6%에서 2013년에 15.4%로 증가하고, ‘구체적인 정책사업과 연계되면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48.8%(2011)에서 51.8%(2013)로 증가함<표 2-8>.

그림 2-5. 농업경영체등록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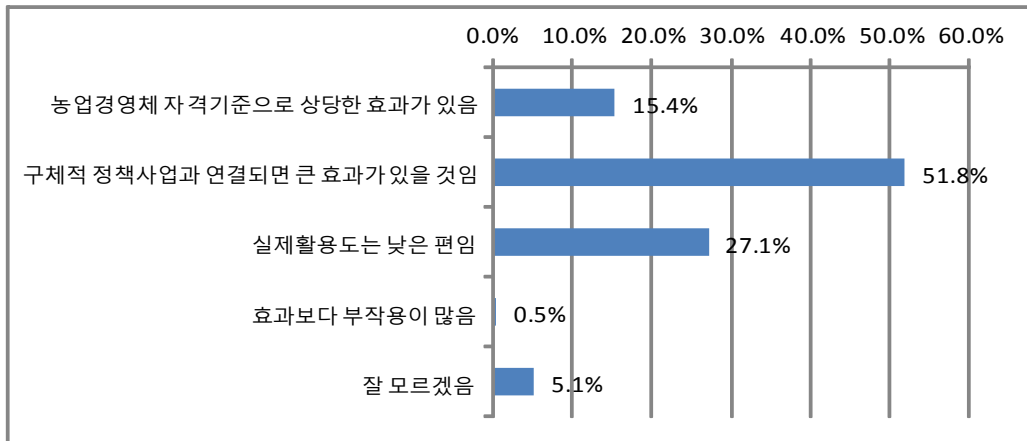


표 2-8. 2011년과 2013년의 등록제 효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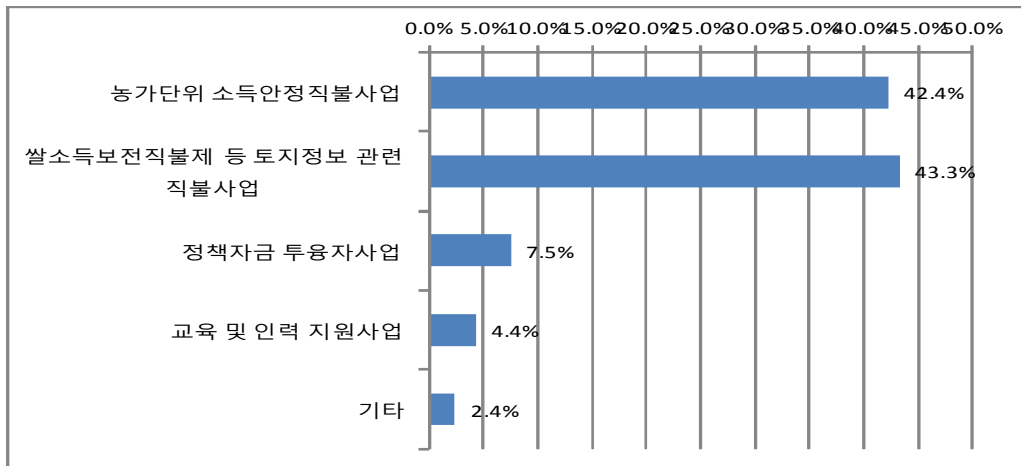
구분	단위: %	
	2011	2013
농업경영체 자격기준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음	12.6	15.4
구체적인 정책사업과 연결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임	48.8	51.8
등록만 했지 실제 활용도는 낮은 편임	32.5	27.1
효과보다 부작용이 많음	1.6	0.5
잘 모르겠음	4.5	5.1
계	100.0	100.0

자료: 김수석 등(2011) 및 김수석(2013b)

○ ‘농업경영체등록제의 등록정보로 가장 손쉽게 연계될 수 있는 정책사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3.3%가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토지정보 관련 직불사업’을, 응답자의 42.4%가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사업’이라 답변함<그림 2-6>.

- 등록제의 연계사업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사업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기존의 등록제의 기본방향이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사업을 지향한다는 정책홍보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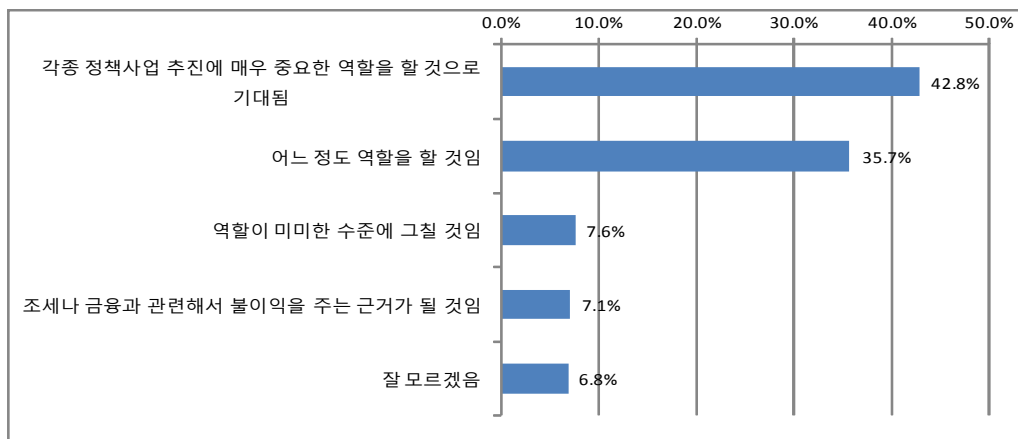
그림 2-6. 기존의 등록정보만으로 쉽게 연계될 수 있는 정책사업



○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향후 기대수준을 보면 응답자의 42.8%가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35.7%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음<그림 2-7>.

○ 이 내용도 2011년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등록제에 대한 기대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표 2-9>.

그림 2-7.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향후 기대수준



- 예컨대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이 2011년의 39.2%에서 2013년 42.8%로 증가하고, ‘등록제의 역할이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2011년의 14.2%에서 2013년에 7.6%로 감소함.

표 2-9. 2011년과 2013년의 등록제 기대수준 비교

구분	단위: %	
	2011	2013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39.2	42.8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	33.4	35.7
역할이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임	14.2	7.6
조세나 금융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는 근거가 될 것	5.3	7.1
잘 모르겠음	7.9	6.8
계	100.0	100.0

자료: 김수석 등(2011) 및 김수석(2013b)

## 제 3 장

---

### 외국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 1. 독일

- 독일에서 농업경영체는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농업경영체를 다른 산업경영체와 조세행정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Förderrecht)상의 농업경영체 개념임.
- 일반적으로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는 이를 인정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반면에,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는 등록 여부를 개별경영체가 결정할 수 있는 임의등록에 속함. 하지만 임의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 등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상적인 농업경영체들은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에 등록하고 있음.<sup>11</sup>

---

<sup>11</sup>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김수석(2013a)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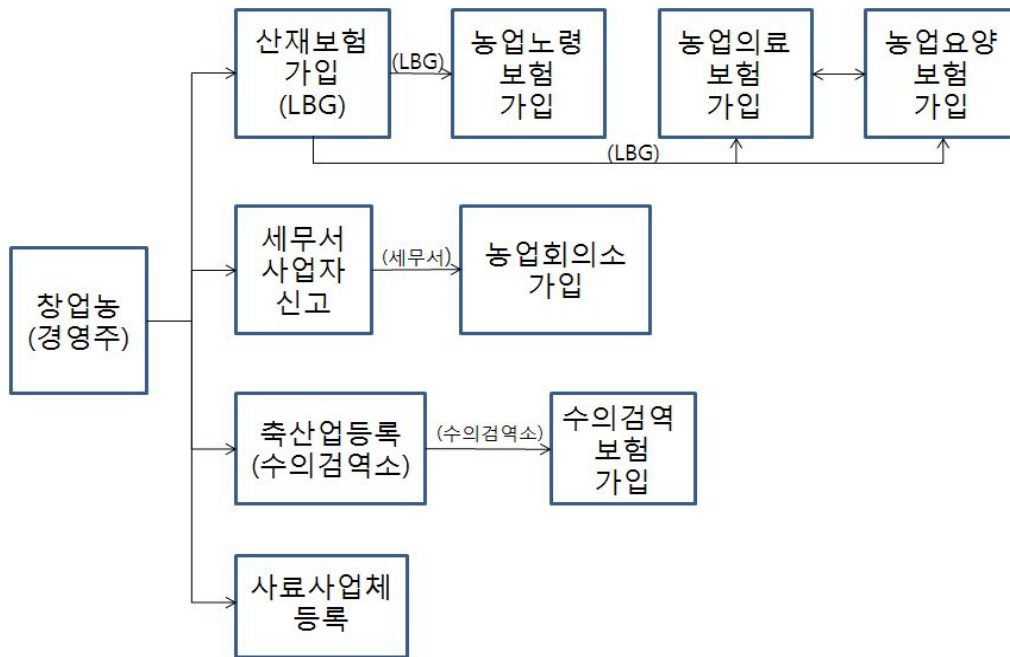


## 1.1.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 1.1.1. 등록내용 및 절차

- 독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보험 가입을 포함한 여러 단계의 등록과정을 거쳐야 함. 이러한 의무적 등록과정은 모든 농업경영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체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됨. 다시 말해 취미농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경영체는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의무만 있지만,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하는 주업농 및 부업농은 등록에 요구되는 모든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 농업경영주가 거쳐야 하는 신고·가입 및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음<그림 3-1>.
  - ① 농업경영체를 창업하는 경영주는 먼저 농업직능조합(Landwirtschaftliche Berufsgenossenschaft, LBG)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함.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농업노령보험과 농업의료보험 및 농업요양보험으로 구성된 나머지 농업관련 사회보험은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최소영농규모 충족) 농업직능조합을 통해 자동적으로 가입됨.
  - ② 농업경영주는 세무서에 사업자신고를 함. 사업자 신고로 농지를 포함한 농장의 가치가 평가되고 과세대상으로 등록됨. 그리고 이 사업자신고를 통해 자동적으로 농업회의소 회원으로 가입됨.
  - ③ 축산업을 전업 내지 겸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을 함. 축산업등록을 통해 수의검역보험은 자동적으로 가입됨.
  - ④ 사료를 자가소비용 혹은 판매용으로 생산하거나 가공·유통하는 사업체는 이를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에 신고·등록함.
- 여기서 등록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하는 것은 농업관련 사회보험을 가입할 때 요구되는 최소영농규모임.<sup>12</sup> 최소영농규모의 기준은 주별로 정하는데, 니데

그림 3-1.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르작센 주에서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최소영농규모는 ① 8ha 규모의 (경종)농업, ② 2.2ha의 원예 및 특작, ③ 75ha의 임업으로 되어 있음.

- 양봉업의 최소규모는 100개의 벌통, 양 방목의 최소영농규모는 큰 양 240마리를 무리로 사육하는 것임(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 2012, 8).

### 1.1.2. 등록 우대내용

- 조세법상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등록에 요구되는 최소영농규모 조건을 구비한 농업경영체는 농업용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세제 감면 혜택의 대상이 됨.

<sup>12</sup> 산재보험은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농업경영체가 가입해야 함.

## 가. 농업용 건축물 건설

- 독일의 전 국토는 건축이 자유스러운 정주공간(Siedlungsraum) 및 교통공간(Verkehrsraum)과 건축이 부자유스러운 자유공간(Freiraum)으로 대별됨. 자유공간에 속하는 농경지는 개발억제영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이 허용되지 않지만 농업경영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건축을 허용함.
- 농업용 건축은 「건축법전」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될 때 일종의 특혜(Privilegierung)로 허가됨.
  - ① 공공기구들이 계획하는 농업용 건축에 반대하지 않고,
  - ② 충분한 개발여건이 보장되어 있고,
  - ③ 농업용 건축이 농업경영체의 경영에 기여하며,
  - ④ 개발면적이 농업경영체의 경영면적에서 적은 부분을 차지할 때
- 건축허가청의 실무지침에 따르면, 농업용 건축은 ① 농업경영체가 이미 영농활동을 하고 있고, ② 지속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③ 농업경영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총소득에 적절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경우에 허가됨.
  - 일반적으로 주업농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부업농은 상기 조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관할청의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허가됨.
  - 농업용 건축에 대한 허가는 관할 시·군청에서 담당함.

## 나. 세제 감면 혜택

### (1) 세제지원 조건

- 독일에서 농업경영체가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다음으로 농업경영체의 영농활동이 조세법상의 농

림업에 해당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조세법상의 농림업은 개념적으로 일반 ‘산업활동(gewerbliche Tätigkeit)’과 구별되는데, 농업경영체의 생산활동 중에도 ‘농림업 활동’에 속하지 않는 ‘산업활동’이 있음. 이것은 ① 법인경영체(자본회사)의 생산활동과 ② 특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축산활동이 됨.
- 조세법상의 농림업은 일차적으로 작물 생산에 종사하는 개인경영체 및 인적 회사<sup>13</sup>의 활동이 되고, 축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할 때 농림업 활동이 되고, 이를 초과하면 전체가 ‘산업활동’으로 간주됨(aid 2009, 12).
  - 처음 20ha까지는 ha당 10 축산단위(Vieheinheit, VE) 준수
  - 그 다음 10ha까지는 ha당 7 축산단위(VE) 준수
  - 그 다음 20ha까지는 ha당 6 축산단위(VE) 준수
  - 그 다음 50ha까지는 ha당 3 축산단위(VE) 준수
  - 더 이상의 사육지에는 ha당 1.5 축산단위(VE) 준수
- 조세법상의 농림업 활동은 농림업 생산활동이 기본이 되지만, 유통 및 가공 활동이 생산활동의 일부분을 구성하거나 생산활동에 비해 비중이 낮을 때 이를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음.<sup>14</sup>

## (2) 세제지원 내용

- 소득세 부과에서 농림업 활동이 우대받는 부분은 특별공제에 있는데, 농림업 공제는 개인의 연간소득이 30,7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670유로,

<sup>13</sup> 인적 회사는 상법 상의 회사 중에서 무한책임사원이 포함되어 있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그리고 민법 상의 회사를 말함. 독일에서 인적 회사는 개인들의 결사체로 간주되어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음.

<sup>14</sup>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미복·김수석(2011) p. 95 이하 참조.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61,40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1,340유로를 공제함.

- 산업세(Gewerbesteuer)는 지방세로서 산업활동을 하는 산업경영체에 부과되는데, 조세법상 농림업 활동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는 산업세가 면제됨.
- 토지세(Grundsteuer)는 산업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지방세로서 농지 및 임야에 부과되는 것과 여타 토지에 부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음. 농지 및 임야에 부과하는 토지세는 농지 및 농장가옥의 수익가치로 산정되는 통합가치(Einheitswert)로 부과됨.
  - 토지세의 대상토지에 대해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그 가치를 실제가격에 근거한 거래가치로 산정하지 않고 일종의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수익가치 내지 통합가치로 산정하면 평가차액 만큼의 감세(과세표준 삭감)효과를 가짐.
- 농림업자산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는 상속재산을 농장의 통합가치(농지+농장가옥+농업용 건축물의 수익가치)로 평가하여 산정함.
  - 농장가옥과 농업용 건축물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 후 10년 동안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함.
- ‘매출세(Umsatzsteuer)’로 명명되는 부가가치세 중 농업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은 정규방식과 평균방식으로 구성됨.
  - 정규과세방식은 일반적인 상품거래에서 통상 세율이 19%인데 반해 농산물과 생필품의 부가가치세율은 7%로 되고, 여기에서 농업경영체가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와 판매한 농산물의 부가가치세의 차액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임.<sup>15</sup>
  - 평균과세방식은 정규방식처럼 정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농업경영체가 판

<sup>15</sup> 부가가치세를 정산하는 정규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수석(2013a), p. 30 참조.

매하는 상품에 (평균화된) 10.7%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이 아닌 일반 농업경영체는 부가가치세 납부에 있어서 정규방식과 평균 방식 중 양자택일할 수 있음.
  - 평균방식을 선택할 수 없는 농업경영체는 (인적회사가 아닌) 법인경영체, 임대인, 자가생산하지 않은 농산물 판매업체가 됨.<sup>16</sup>
- 또한 매출이 소규모인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 지난 해 매출이 17,500유로를 초과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5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농업경영체가 「차량세법」에 따라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세를 면제함. 면세대상이 되는 차량은 트랙터와 차량트레일러 및 특수차량이 됨.
  - 여기서 면세의 전제조건은 이러한 조세감면이 ① 농업경영체의 이윤추구에 기여하고, ② 면세대상차량이 전적으로 농림업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임.
-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유류세의 감면이 이루어지는데, 디젤유의 유류세는 일부 감면되고 바이오디젤 및 식물성 오일의 유류세는 전액 면제됨.

## 1.2.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체가 직접지불금 등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이외에 추가로 등록하거나 경영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항이 있

<sup>16</sup> 정규방식에는 부기기장이 반드시 요구되지만, 평균방식에는 간이계산서 형태도 허용됨.

음. 이러한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

-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취미 농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업경영체들은 이를 이행하고 있음.

○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제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EU 단일직불제의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농지의 이용정보 등을 등록하는 통합관리통제시스템(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 system, IACS) 등록임.

- EU 규정에 따른 IACS를 독일이 회원국 차원에서 제도화한 것이 InVeKoS (Integriertes Verwaltungs- und Kontrollsystem)임.

### 1.2.1. 독일의 InVeKoS 운영 현황

○ 1992년 IACS의 출범 당시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2003~2004년 단일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이를 의무화하는 EU의 법령(이사회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 회원국에서 이를 제도화하게 됨.

- EU의 모범은 2003년에 제정된 「EU 이사회 규정 1782/2003」인데, 여기에 상응하는 독일 국내법은 2004년 7월 21일에 제정된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실행법(Gesetz zur Umsetzung der Reform der Gemeinsamen Agrarpolitik)」임.

- 그런데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실행법」은 단일한 법이 아니라 세 가지 법<sup>17</sup>의 조합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된 법은 「InVeKoS 데이터 법(InVeKoS-Daten-Gesetz)」이고,<sup>18</sup> 이를 실행하는

<sup>17</sup> 「단일직불 실행법(Gesetz zur Durchführung der einheitlichen Betriebsprämie)」, 「다면수행조건 이행 규율법(Gesetz zur Regelung der Einhaltung anderweitiger Verpflichtungen durch Landwirte im Rahmen gemeinschaftlicher Vorschrift über Direktzahlungen und sonstige Stützungsregelungen)」, 「InVeKoS 데이터법(InVeKoS-Daten-Gesetz)」으로 구성되고, 이 법들은 각각의 시행령을 갖고 있음.

시행령은 「지원규정 및 통합관리통제시스템 실행 령(Ver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von Stützungsregelungen und des Integrierten Verwaltungs- und Kontrollsystems, InVeKoSV)」으로 구성됨.

-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2004년 12월부터 InVeKoS 체제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을 실시하고 있음.
  - 「InVeKoS 데이터 법」의 시행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관한 기본데이터를 확보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됨.
- 독일에서 농업행정은 각 주별로 실행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도 주별로 관리되고 있는데, 등록제의 관리를 위해 각 주에서는 농업경영체의 기본데이터를 등록·관리하는 ‘기본데이터 등록기관(Adressdatenstelle)’이 지정됨.<sup>19</sup>
- 등록절차는 농업경영체들이 지역(시·군)별로 산재해 있는 농업청이나 농업회의소 지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면 이것이 ‘기본데이터 등록기관’에 등록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는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임.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는 국가번호를 포함하는 경우 15자리(국가번호 3자리) 숫자로 구성되고 구성항목은 <그림 3-2>와 같음.<sup>20</sup>

<sup>18</sup>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농업지원을 위한 공동규정에 따른 통합관리통제시스템 내에서의 데이터 운용과 활용에 관한 법(Gesetz über die Verarbeitung und Nutzung von Daten im Rahmen des integrierten Verwaltungs- und Kontrollsystems nach den gemeinschaftlichen Vorschriften für landwirtschaftliche Stützungsregelung, 약칭 InVeKoSDG)」임.

<sup>19</sup> 독일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담당하는 ‘기본데이터 등록기관’은 별도로 신설되기도 하지만, 기존의 농업 관련 정보담당 기구에 이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임. 니테르작센 주의 경우 기존의 축산등록 관리기구인 사단법인 축산통합정보시스템(Vereinigte Informationssysteme Tierhaltung, VIT)에서 이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sup>20</sup>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하여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 확인 수



그림 3-2.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체계

2	7	6												
---	---	---	--	--	--	--	--	--	--	--	--	--	--	--

<국가번호> <주 번호> <군 번호> <게마인데 번호> <경영체 개별번호>

○ 등록정보 중 인적 사항 데이터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경영체 주소: 경영체 이름, 경영주 이름, 경영체의 법적 형태, 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
- 등록 사유: 농장양도계약에 의한 조기양도, 매입이나 임차에 의한 전체농장 양도, 농장의 분할, 경영체 창설
- 법인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사업장(경영체)을 통합하는 통합경영체를 등록할 때는 신규 등록에 기존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를 같이 기재함.
- 등록 사유가 발생한 시점
- 영농유형: 축산을 포함한 농업, 축산 없는 농업, 취미농업, 도축업, 가축유통업, 정책프로그램 대상 농업
- 가축(소, 돼지, 양, 염소, 말, 가금) 사육두수와 축산단위

○ 경지 데이터는 이른바 ‘경지식별번호(Flächenidentifikator, FLIK)’ 체계로 구축되어 있음.

- FLIK는 경지대장(Flurbuch)<sup>21</sup> 상의 최소단위인 필지(Flurstück) 중에서 식별번호를 신청하는 자가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에 부여하는 일종의 지번에 해당함.
- FLIK는 6자리의 문자와 10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6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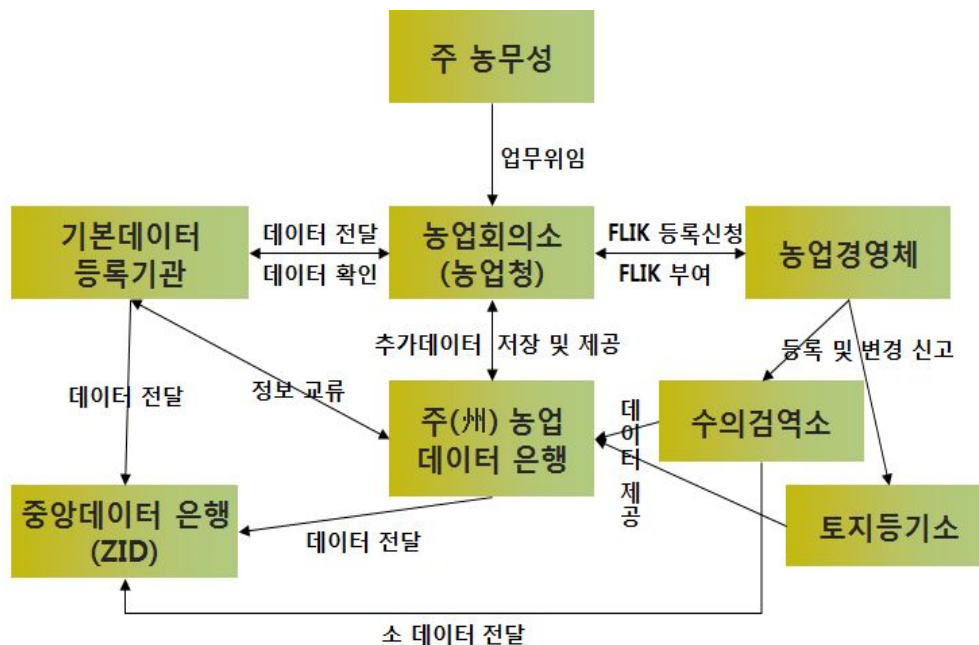
단일 없기 때문에 농업경영체에 대한 확인 수단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번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

<sup>21</sup> 독일에서는 토지의 소유권 중심으로 목록이 구성된 토지대장(Grundbuch)과 별도로 경지의 일반적 활용 중심으로 목록이 구성된 경지대장이 있음. 필지 또한 소유필지(Grundstück)와 구별되는 경작필지(Flurstück)가 있음.

문자는 2자리의 국가코드(DE)와 2자리의 주(州) 코드, 그리고 농업 InVeKoS를 의미하는 LI로 되어 있고, 10자리 숫자는 주별로 재량에 따라 임의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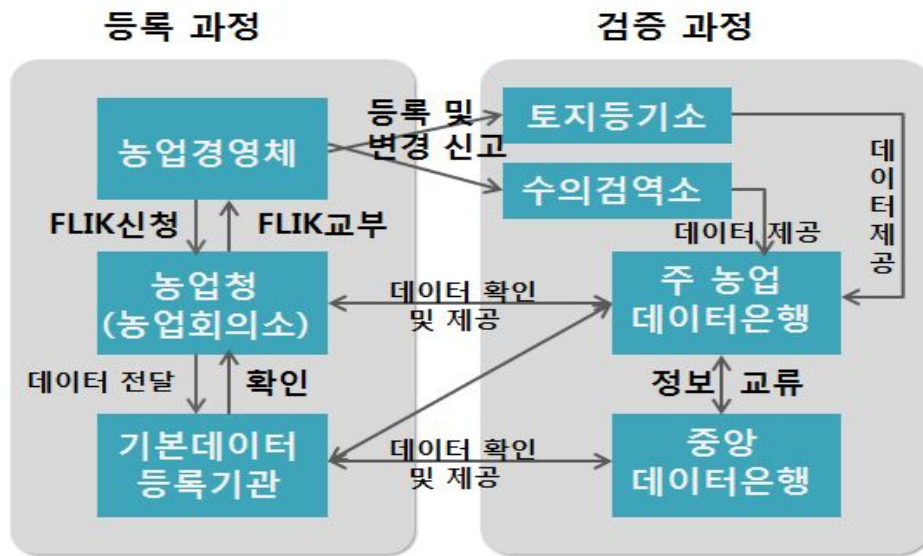
- FLIK 신청은 경작자가 InVeKoS 신청을 관할하는 관청(농업회의소 혹은 농업청)에 하고, 기재내용에 대한 확인 및 관리는 토지등기소(Katasteramt)의 경지대장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이루어짐.
- 축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에 속하는 축산업 등록을 통해 확보된 정보를 활용함.
- 즉, 수의검역소가 축산업등록정보를 주농업데이터은행에 전달하여 저장하는데, 이를 농업경영체등록의 신청기관인 농업회의소(농업청)와 관리기관인 기본데이터 등록기관이 활용함.
- 이처럼 독일에서 InVeKoS에 의한 농업경영체등록제는 EU 규정에 의한 경

그림 3-3. 독일의 InVeKoS 농업경영체 등록체계



영체의 인력 및 경지정보 등록과 독일 고유의 축산업등록제에 의한 축산정보 등록을 종합하여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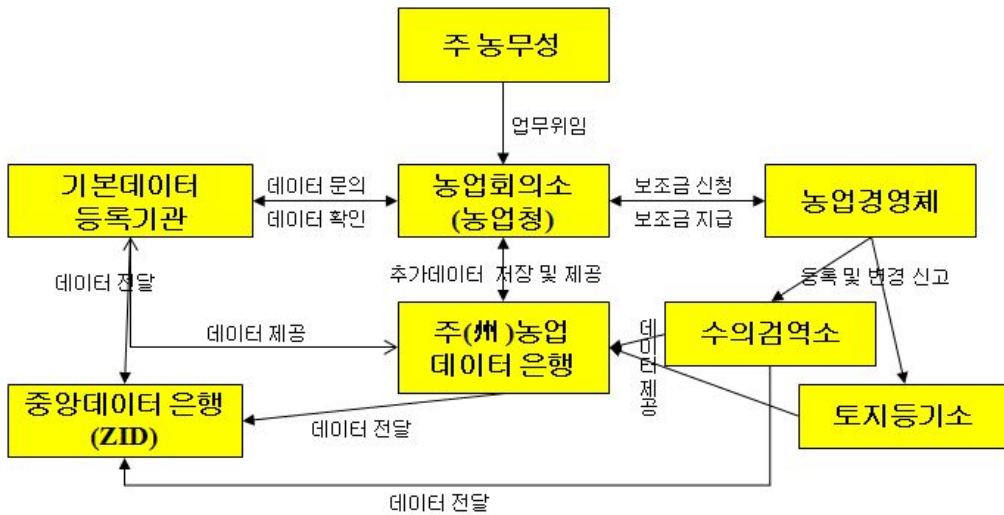
그림 3-4. 독일의 농업경영체 데이터 등록과정



### 2.1.2. 단일직불금 집행체계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독일의 InVeKoS는 기본데이터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의 인력정보와 경지식별번호(FLIK), 그리고 독일 고유의 축산업등록제를 활용하여 EU의 직접지불금을 통합적으로 배분·관리하는 체제로 되어 있음.
- InVeKoS를 활용해 단일직불금을 집행하는 체계는 <그림 3-5>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개별 농업경영체가 지역에 있는 농업청(농업회의소)에 EU의 직불금을 신청하면, 이 신청서의 내용이 ‘기본데이터 등록기관’을 통해 검증됨.

그림 3-5. 독일의 단일직불금 관리체제



- 농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등록된 FLIK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고, 축산에 대한 것도 기존의 등록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 신청서 내용이 시스템상 하자가 없다고 평가되면, 해당 경영체에 직불금이 지급됨.
  - 시스템에 의한 검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농업경영체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함.
- InVeKoS가 등록정보와 연계해서 수행하는 사업은 단일직불제가 가장 주된 것임. 당초 InVeKoS를 적용하는 프로그램은 단일직불제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2009년 「EU 이사회 규정 73/2009」가 새로 시행됨에 따라 단일직불제 이외에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규제지역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농업프로그램, 지속가능한 임업프로그램 및 와인 관련 프로그램에도 InVeKoS가 활용되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InVeKoS의 적용영역은 경지정보 관련 프로그램(사업)에 한정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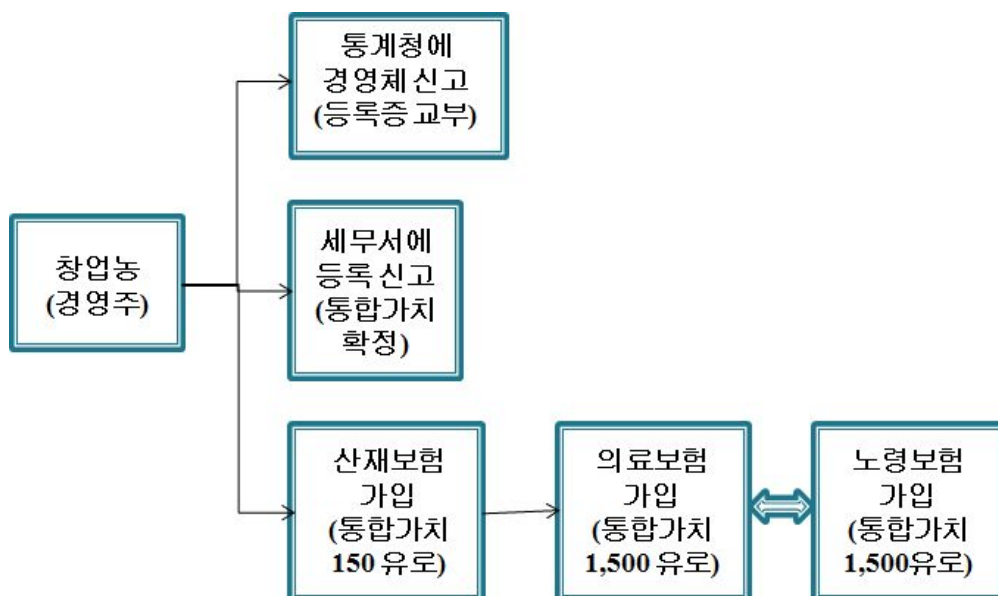
## 2. 오스트리아

### 2.1. 일반적 농업경영체 등록

#### 2.1.1. 등록절차 및 내용

- 오스트리아도 독일처럼 EU의 단일직불금 집행을 위한 InVeKoS와 별도로 전통적인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갖고 있음.
- 이러한 농업경영체등록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절차로 이루어짐<그림 3-6>.
  - 먼저 창업농은 농업회의소 지소를 통해 통계청에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번호를 교부받음.
  - 창업후 1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창업을 신고해야 함. 이 때 창업한 농업경영체가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단순한 취미농인지 밝힐 수 있음.

그림 3-6. 오스트리아의 농업경영체 등록체계



- 또한 창업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련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함.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및 노령보험임.
- 등록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계청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① 경영주의 이름과 생년월일, ② 사업장 주소와 집주소, ③ 농지와 임야로 구분된 경지면적과 재배유형, ④ 축산유형과 사육가축 수 등이 기재됨.
- 세무서에 농업경영체 등록 사실을 신고하면 세무서는 경영체의 통합가치(Einheitswert)를 평가하여 통지하고, 추후 과세대상이 될 때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과세요율 등을 부과함.
  - 오스트리아의 통합가치는 개념상으로 농지와 농장가옥을 포함한 농장 전체의 수익가치를 의미하는 독일의 통합가치보다는 농지의 수익가치를 의미하는 경영가치(Wirtschaftswert)와 유사한 편이나 산정방식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음.
  - 통합가치는 해당 경영체 토지의 헥타르당 수익가치<sup>22</sup>에서 헥타르 면적을 곱하여 도출하는데, 여기서 직불금 등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이 점이 가산되고 평균 이상의 축산 및 특작을 하는 경우에도 이 점이 가산되어 최종 통합가치가 결정됨.
- 「농민 사회보험법(Bauern-Sozialversicherungsgesetz, BSVG)」에 의해 가입 대상자가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일종의 최소영농규모에 해당하는 경영체의 자산규모(통합가치 크기)를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함.
- 산재보험은 통합가치 150 유로 이상의 농업경영체를 경영하는 소유자 혹은 혹은 경작자(임차인)가 가입해야 하는데,<sup>23</sup> 피보험자는 경영주와 영농활동에

<sup>22</sup> 헥타르당 수익가치는 해당 필지의 토양기상점수(Bodenklimazahl)에다 지역경제적 여건과 경영체 여건 및 영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 점수(경영체 점수)에 24를 곱하여 도출함.

참여하는 가족구성원(배우자, 자녀 및 그들의 배우자, 손자, 부모, 조부모, 시부모, 처부모, 형제 등)이 됨.

- 통합가치 산정에서 경작자의 소유농지는 통합가치의 크기 그대로(100%) 산정되고, 임차농지는 통합가치의 2/3 크기만 산정됨.

○ 의료보험과 노령보험은 「농민 사회보험법(BSVG)」에 따라 통합가치가 1,500 유로 이상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가 가입해야 함.<sup>24</sup>

- 부부 공동소유 경영체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입해야 함.
- 경영체가 민법상의 회사인 경우에는 통합가치를 사원별로 할당하여 할당된 가치가 1,500 유로 이상일 때 개별적으로 가입의무가 생김.
- 다른 형태의 무한책임회사는 통합가치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보험(산재보험, 의료보험, 노령보험)에 가입해야 함.

○ 의료보험과 노령보험의 피보험자는 경영주 이외에 주업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가족구성원(배우자, 만 15세 이상의 자녀·손자 및 그들의 배우자)이 됨.

## 2.1.2. 등록우대 조치

### 가. 농업용 건축 건설

○ 오스트리아의 국토관리 체계 또한 크게 봐서 기본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지(Bauland)와 건축이 자유롭지 못한 녹지(Grünland)로 구별되고, 이 녹지 속에 농림녹지가 있음.<sup>25</sup>

<sup>23</sup> 통합가치가 150 유로 미만이라도 가족농의 생계가 주로 경영체의 수입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됨.

<sup>24</sup> 여기서도 통합가치가 1,500 유로 미만이라도 가족농의 생계가 주로 경영체의 수입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영체의 경영주는 의료보험과 노령보험의 가입대상이 됨.

- 농림농지에서 농업용 시설 건축은 농업경영체의 농업적 이용을 위해 필요하고 자기 소유 건축지에 적절한 입지를 갖고 있지 못할 때 허가됨.
  - 농장가옥의 건설은 경영주 가족의 주거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허가되지만 농업용 시설과 달리 최초의 건설 한 번만 허용됨.
  
- 농업용 건축의 신고 및 허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sup>26</sup>
  - ① 허가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는 건축계획: 신축하는 건축과, 건축물의 안전 및 위생상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개조 등
  - ② 신고 후 8주 이내에 허가 거절 등 다른 조치가 없으면 가능한 건축계획: 목적 변경에 따른 개축 및 시설물 교체 등
  - ③ 건설 시행후 4주 이내에 통지만 하면 되는 건축계획: 용량이 다른 에어컨으로 교체 등<sup>27</sup>
  
- 이처럼 오스트리아에서는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대해 농림농지에 농업용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 나. 세제 지원

- 농업경영체에 대한 세제지원에서 토지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음.
  -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 토지합병이 생기면 토지취득세가 면세됨.
  - 창업농에게는 과세표준에서 7만5천 유로를 공제함.
  - 55세 이상 농업경영주나 경영능력상실자가 농장(농지)을 이양하면 과세표준에서 36만5천 유로를 공제함.

<sup>25</sup> 오스트리아에서 국토관리의 실행법은 주별로 제정되는데, 여기서 참조한 법은 「1976년 니테르오스트리아 공간질서법(NÖ Raumordnungsgesetz 1976)」임.

<sup>26</sup> 이 부분은 「1996년 니테르오스트리아 건축령(NÖ Bauordnung 1996)」을 참조함.

<sup>27</sup> 통상적인 관리를 위한 보수 및 부품교체에는 사후 통지가 필요 없음.



- 토지세와 소득세에서는 과세표준을 거래가치가 아닌 통합가치로 평가하여 산정하는데, 이로써 세제지원이 이루어짐.
- 매출세(부가가치세)에서는 중소기업 농업경영체에 대한 특별규정방식을 채택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 특별규정방식은 부가 기장을 하지 않은 중소기업 경영체에게 적용되는데,<sup>28</sup> 여기서는 통상적인 매출세율인 20%를 적용하지 않고 10%(일반 소비자가 매입할 때) 또는 12%(사업체가 매입할 때)의 세율을 적용함.

## 2.2. 오스트리아 InVeKoS

### 2.2.1. 운영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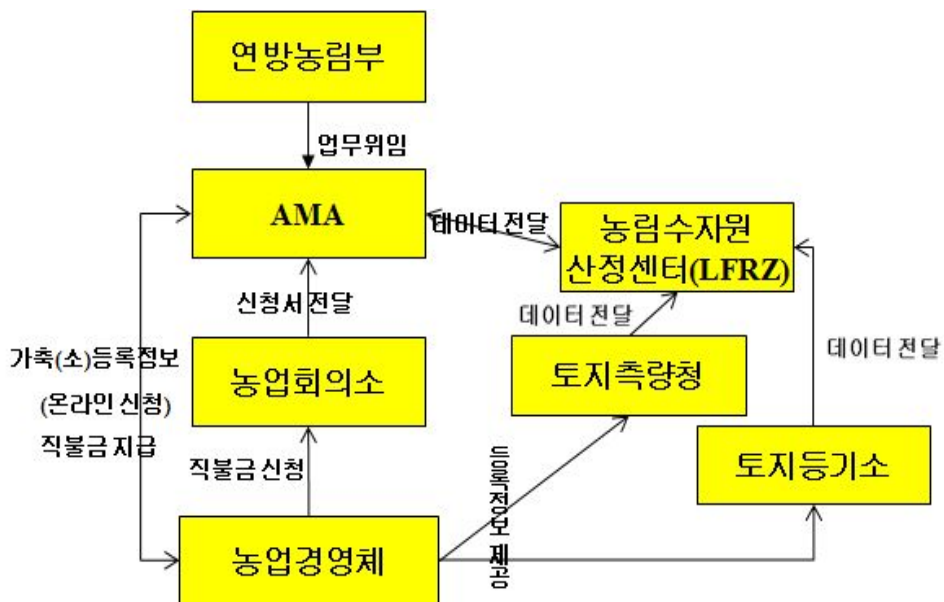
- 오스트리아에도 EU의 단일직불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통제시스템(InVeKoS)을 운영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는 InVeKoS 운영과 단일직불금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한 전담 기구로 오스트리아 농업마켓(Agrarmarkt Austria, AMA)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런데 InVeKoS에 필요한 등록정보 수집 및 확보과정을 보면, 토지식별번호에 대한 등록정보는 토지등기소와 토지측량청을 통해 수집되어 데이터은행 역할을 하는 농림수자원산정센터(Land- forst- und wasserwirtschaftliches Rechenzentrum, LFRZ)로 집결되어 전달됨.
  - 축산정보는 직불금을 신청할 때 이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게 하여 획득하는데, 소에 대한 등록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로부터 바로

<sup>28</sup> 오스트리아에서는 농업경영체의 통합가치가 15만 유로 이상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40만 유로 이상이면 부가 기장의 의무가 있음.

AMA로 전달되게 하고 있음.

- 단일직불금의 관리·집행과정은 농업경영체가 농업회의소에 직불금을 신청하면 이를 AMA에 전달하고, AMA가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직불금을 지급함.
  - 오스트리아 InVeKoS에서 개별 경영체와 AMA의 직접적인 대면(연결)은 배제되어 있는데, 이는 직불금의 신청처리 및 축산정보 수집은 농업회의소가 담당하고 경지정보는 토지등기소와 토지측량청 등을 통해 수집되어 전달되기 때문임.
  - 다만 온라인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때와 소에 대한 이력을 등록할 때는 농업경영체가 인터넷으로 AMA에 접속할 수 있음.

그림 3-7. 오스트리아 InVeKoS 운영체계



## 2.2.2. InVeKoS 관리 및 운용 현황

### 가. 관리기구 AMA<sup>29</sup>

- 오스트리아 농업마켓 AMA는 1992년에 제정된 「AMA법」에 따라 1993년 공적 기구로 설치됨.
- AMA의 고유업무는 ① 국내외 농산물시장의 시장 및 가격 동향 파악, ② 농산물 품질 개선방안 마련, ③ 오스트리아 농산물에 대한 마케팅 등임.
  - 이와 관련하여 AMA는 1995년 농업마케팅 지원을 위한 자회사로 ‘오스트리아 농업시장 마케팅 회사(Agrarmarkt Austria Marketing GmbH)’를 설치함.
- AMA는 이러한 고유업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연방정부(농림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집행 및 관리를 위임받아 실시함.
  - 낙농기금을 포함한 각종 기금 관련 사업(우유쿼터 관리, 소 등록 및 이력 관리 등)
  - 정부(농림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오스트리아 환경농업사업 ÖPUL 등)
  - EU 공동농업정책 차원의 보조금에 대한 집행 및 관리(단일직불제, 조건 불리지역직불제 등)
- AMA는 7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InVeKoS는 이 중 한 개의 부서(EDV 부서)를 이루고 있음.
  - 또한 AMA는 기술적 시험을 담당하는 지역사무소 운영을 통해 연방 전체를 관할하고 있음.

<sup>29</sup> AMA, Bericht des Vorstandes 2010 참조.

○ 2010년 현재 AMA 정규직원 수는 489명이고, 연간 운영비는 3,400만 유로에 달함.

- 한편, 2010년도에 AMA를 통해 오스트리아에 지원된 EU 공동농업정책 기금지출은 약 13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나. 시스템 운용의 인력 및 예산 현황

○ AMA에서 InVeKoS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과 재정의 크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AMA의 업무가 농산물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고유업무와 정부의 정책사업 위탁업무로 합쳐져 있고, 정부의 위탁업무도 InVeKoS 업무와 보조금 지급 업무 등이 혼재되어 있어 InVeKoS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도출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임.

○ 이에 따라 AMA의 조직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InVeKoS 및 관련 업무의 인력 및 재정 규모를 개략적으로 추정해 보기로 함.

○ 7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 AMA 조직을 살펴보면, 3개 부서는 농산물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고유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3개 부서는 InVeKoS와 직불금 지급 등의 정책사업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나머지 1개 부서는 지역사무소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여기서 InVeKoS와 직불금 지급 등의 정책사업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규모는 2010년도의 총 인력 489명 중 적어도 200명은 된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이 분야의 재정규모도 2010년도 총 운영비 3,400만 유로 중에서 약 1,500만 유로는 달할 것이라 추정할 수 있음.

○ 그런데 이것은 InVeKoS 운영과 이 시스템에 근거한 정책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 중 AMA에만 소요되는 것을 추정한 것임. 실제 InVeKoS

운영과 이 시스템에 근거한 정책사업 실시에는 단일직불금 신청 처리를 담당하는 농업회의소 소요비용과 경지관련 등록정보를 수집하는 토지등기소와 토지측량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됨.

- 여기서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앞에서 추정된 내용이 InVeKoS가 구축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가동할 때 소요되는 운영비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임. InVeKoS 구축 시기에는 이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 할 수 있음.
  - AMA 보고에 따르면, InVeKoS 구축시기에는 등록정보를 입력하는데 많은 단기고용인력이 필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치비가 약 1천만 유로에 달했다고 함.<sup>30</sup>
  - 따라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시기에는 시스템 시설비와 추가적인 고용인력비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시기보다 약 2배의 재정투입이 요구된다 할 수 있음.

### 3. 제도 비교 및 시사점

#### 3.1. 일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비교 분석

-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중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은 EU의 공동농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것이지만,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은 독일의 고유의 등록제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
  -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은 비록 등록요건에 대한 세부적 사항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다 강화되는 형태로 바뀌긴 했지만, 농업경영체등록의 최초 기원은 1885년 농업산재보험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도입된 시점

<sup>30</sup> 이는 AMA의 국제협력담당자(Mr. Patschka)와의 인터뷰 결과임.

- 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음.<sup>31</sup>
- 따라서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이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근간이 된다 할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오스트리아의 일반적 농업경영체등록도 독일의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과 마찬가지로 등록제도의 근간이 되는 고유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
- 다만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연방법 차원에서 농업경영체등록이 규율되지 않고 주법에 따라 등록의 기준 및 내용이 규정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내용 변경(예를 들어 등록기준 변경)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음.
- 독일의 조세법상 농업경영체등록제의 핵심은 ① 하나의 사업체로서 농업경영체 개념, ② 최소영농규모 설정, ③ 농업관련 사회보험 가입, ④ 조세관련 사업자등록에 있음.
-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등록제도의 핵심내용은 독일과 비슷함. 다만 농업경영체의 인증기준에 해당하는 최소영농규모 설정이 독일만큼 강한 의무규정적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할 수 있음.
- 최소영농규모 설정과 관련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제도상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독일은 최소영농규모 지표로 경종농업인 경우 8ha 등과 같은 영농투입규모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통합가치 1,500 유로 등과 같은 경영체의 자산가치를 사용함.

<sup>31</sup> 동서독이 분리된 이후에는 1957년 서독에서 농업노령보험이 농업사회보험으로서 농업경영체등록요건으로 추가되었고, 1972년에는 농업의료보험이, 1995년에는 통일된 독일에서 농업요양보험이 등록요건으로 추가됨. [http://www.bundestag.de/dokumente/analysen/2012/Landwirtschaftliche\\_Sozialversicherung.pdf](http://www.bundestag.de/dokumente/analysen/2012/Landwirtschaftliche_Sozialversicherung.pdf) 참조.

- 독일의 경우 최소영농규모가 사실상의 농업경영체로 인정되는 최소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반해, 오스트리아는 이러한 최소영농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농업경영체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 최소영농규모 지표와 관련해서는 독일의 제도가 지표로서 보다 나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이는 독일의 지표가 영농규모의 크기를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실효성 있는 농업경영체 인증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임.
-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대한 혜택은 크게 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음. 즉, 농업용 건축을 할 수 있는 혜택과 세제지원 혜택이 있음.
- 그렇지만 농업경영체에게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독일은 오스트리아에 비해 보다 분명한 원칙과 방향 하에 추진하고 있음.
- 독일이 조세법상 농업경영체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지향하는 기본원칙 및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독일은 농림업을 일반 산업과는 구별되는 특수산업으로 인정하여 세제상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농림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전보다 그 강도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농림업을 일반 산업과 구별되는 조세상의 특수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 둘째, 조세법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주업농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는 농업용 건축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업농 위주로 부여하는데서나 농업관련 사회보험 가입 조건으로 제시되는 최소영농규모가 영세농 수준을 넘어서게 설정되어 있는데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셋째, 세제지원에서 조세법상의 농림업 활동이란 개념을 추가적인 조건으로 부가한 것은 지속가능한 건전한 농업을 육성·지원한다는 정책적 의

지를 보여줌. 일반 산업적 성격이 강한 축산업의 경우, 밀식사육에 의한 기업적 경영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하지 않고 친환경적, 조방적 사육기반을 갖춘 축산경영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 이는 이러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임. 자본회사적 농업법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러한 기본방향과 관련된다 할 수 있음.

### 3.2. InVeKoS 비교분석

- InVeKoS의 관리 및 운영체계를 보면, 독일은 등록정보의 관리기구와 단일 직불제의 집행·관리기구가 분리되어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등록정보의 관리와 단일직불제 등 정책사업의 집행·관리를 최종단계에서 통합·운영하고 있음.
  - 독일에서는 등록정보의 관리는 기본데이터등록기관이 담당하고 단일직불금의 신청처리·관리·집행을 농업회의소 혹은 농업청이 담당함.
  - 오스트리아에서는 등록정보의 최종관리와 단일직불제의 집행·관리를 AMA가 총괄적으로 담당함. 다만 직불금 등 정책사업의 신청처리업무는 농업회의소가 대행하고, 등록정보 중 경지관련 정보는 토지등기소 등을 통해 전달받음.
- 이러한 운영체계상의 차이는 농업경영체등록제(InVeKoS)의 순수한 관리와 등록제의 정책적 활용을 통합해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분리해서 운영하느냐 하는 것임.
  - 독일은 분리해서 운영하고 오스트리아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통합해서 운영함.
  - 반면에 영국은 직불사업 관리기구인 농촌지불청(Rural Payment Agency, RPA)이 등록제와 직불사업 집행·관리를 완전히 통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sup>32</sup>



○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의 InVeKoS 운영체계상의 차이점은 <표 3-1>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음.

표 3-1. 외국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비교

구 분	영 국	독일	오스트리아
설치근거 (목적)	EU의 IACS 규정 단일직불금 집행	EU의 IACS 규정 단일직불금 집행	EU의 IACS 규정 단일직불금 집행
등록대상	전 농업경영체	전 농업경영체	전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임의등록 (조건부 의무)	임의등록 (조건부 의무)	임의등록 (조건부 의무)
등록정보 내용	인적 정보, 경지 및 가축정보	인적 정보, 경지 (가축정보)	인적 정보, 경지 및 가축정보
등록정보 수집 및 검증기구	농촌지불청(RPA)	농업회의소/농업청, 토지등기소, 수의검역소	토지등기소, 토지측량청,
등록정보 관리기구	농촌지불청(RPA)	기본데이터 등록기관 (주농업 데이터은행)	오스트리아 농업마켓(AMA)
등록정보 갱신방법	경영체의 신고	경영체의 신고	경영체의 신고
직불금 신청 처리기관	농촌지불청(RPA)	농업회의소/농업청	농업회의소
직불금 집행 및 관리기관	농촌지불청(RPA)	농업회의소/농업청	오스트리아 농업마켓(AMA)
이행점검 방법	시스템상의 관리 GIS 활용, 현장 실사	시스템상의 관리 GIS 활용, 현장 실사	시스템상의 관리 GIS 활용, 현장 실사

<sup>32</sup> 영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오내원 등(2006), pp. 41~46 참조.

## 제 4 장

---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방안

#### 1. 농업경영체등록제 발전방향

##### 1.1. 등록제의 도입 취지와 현주소

###### 1.1.1. 등록제의 도입 취지<sup>3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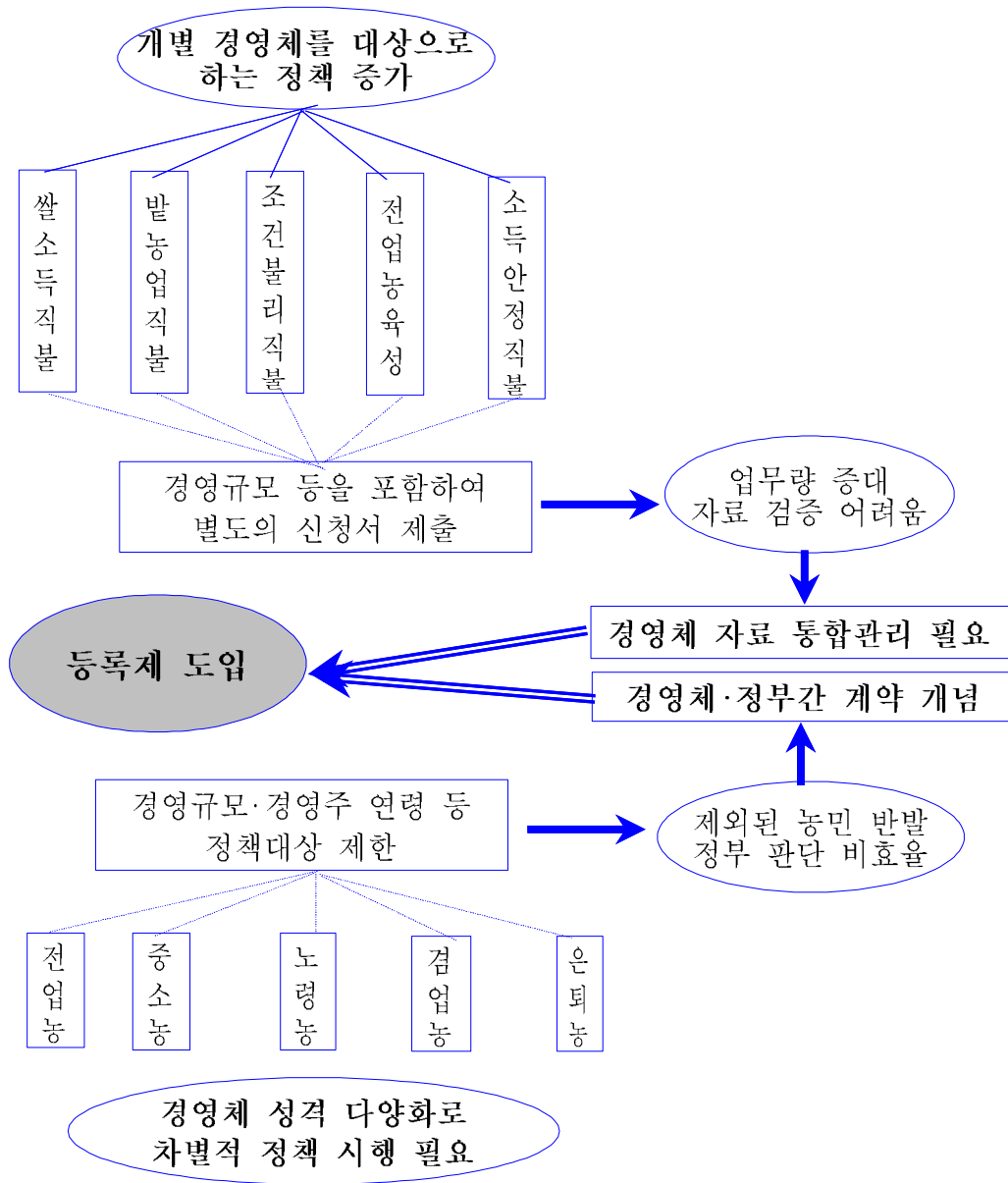
- 2000년대 후반 농업경영체등록제를 도입했을 당시 등록제 도입의 주된 취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음.
- 첫째,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로 농정에서 가격지지나 시장개입 정책이 축소되고 개별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여건 하에서 농업경영체 관련 정보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sup>33</sup> 이 부분은 김수석(2013b) 참조.

- 이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서 구축하는 농림사업 관련 DB를 농업경영체등록제 DB와 연계하여 개별 경영체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 둘째, 농업경영체의 경제적, 사회적 동질성이 약화되어 경영규모나 작목, 상업화와 겸업화 정도, 경영주의 연령 및 라이프사이클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현실 하에서 평균적이고 획일적인 농업정책으로는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의 정책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농가 또는 농업경영체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
  - 다시 말해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이 필요한데, 이러한 맞춤형 농정을 위한 경영체유형 구분의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등록제 도입이 필요함.
- 셋째, 다양한 성격의 농업인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고객서비스(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PCRМ)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도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농업인이 정책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등록을 하고, 정부는 이를 전제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이상과 같은 농업경영체등록제의 도입취지는 <그림 4-1>과 같이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

그림 4-1.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취지



자료: 오내원 등(2006), p. 66에서 재정리

### 1.1.2. 등록제의 현주소

- 농업경영체등록제는 2008년부터 도입을 시작했지만 등록제의 당초 도입 취지는 아직까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무엇보다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개별 정보가 정책사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음.
- 현재 AgriX에서는 농림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및 농업경영체등록제의 등록정보 등 총 43종의 DB를 보유하고 있고 농업경영체등록제 DB는 기본정보관리 체계 속에 구축되어 있는데, 농림사업관리 체계와의 연계가 아직 제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3년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제는 41개 농림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나, 그 활용방식은 경영체의 등록 여부 확인이나 경영체등록자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수준의 형식적 연계에 머무르고 있음.
- 등록제의 세부정보가 아직 정책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별 경영체를 지원하는 농림사업에서 뿐 아니라 맞춤형 농정 추진을 지원하는 분야에도 같은 실정임.
  - 즉,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활용한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수요자인 농업인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1.1.3. 등록제의 발전방향

- 농업경영체등록제의 도입이 필요했던 정책추진의 여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경영체 인증수단과 같은 제도적 활용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나타나는 현실 하에서 등록제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더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그간 진행되었던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추진과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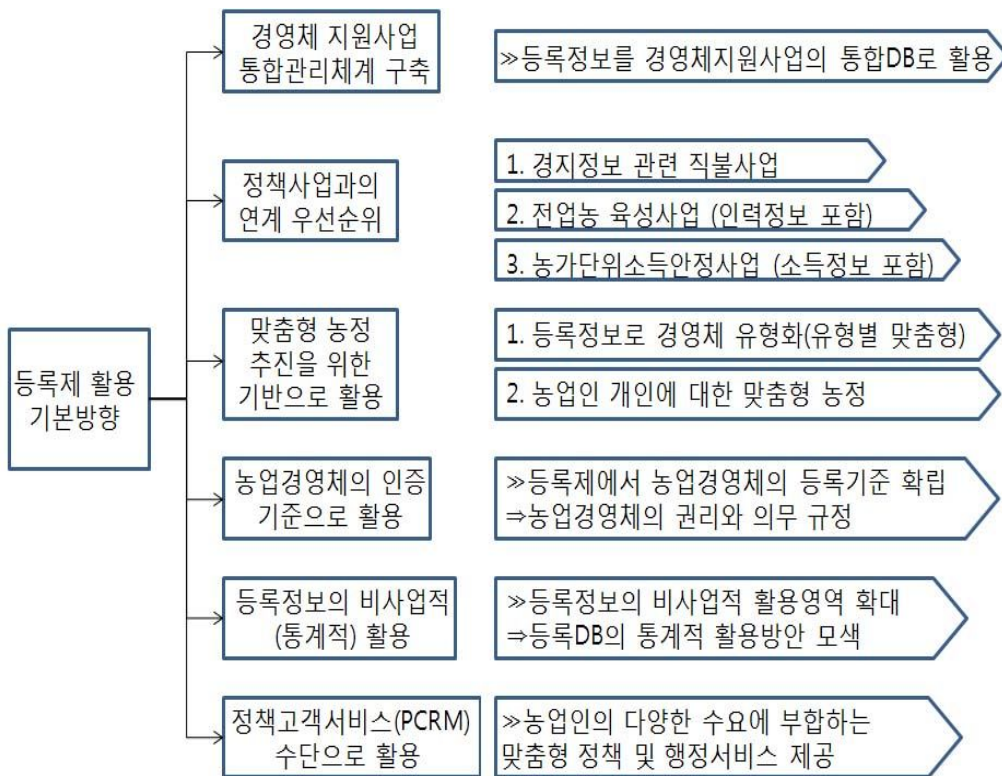
점검·평가하여 발전방향을 재정립하고 이러한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농업경영체등록제가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농업경영체등록제 DB를 각종 농림사업의 기본정보로 활용하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구축함.
  - 이는 아직까지 불완전한 AgriX를 보다 완전한 형태로 변경시켜 나가는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서, 각종 개별 경영체 지원 농림사업 수행시 농업경영체등록제의 등록정보가 (공통적인) 기본정보로 활용되게 하는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함.
- 둘째, 등록제의 등록정보와 농림사업과의 연계는 정보 획득의 용이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근거로 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농림사업과의 연계는 사업유형별로 봐서 일차적으로 경지정보 관련 직불제사업, 그 다음 전업농육성사업, 마지막으로 경영체소득안정사업 순으로 함.
  - 정보획득의 용이성 측면에서 보면, 경지정보 관련 직불제사업에는 경영주 및 경지에 대한 기본정보, 전업농육성사업에는 영농종사자의 영농이력 및 경영능력, 경영체소득안정사업에는 경영체의 소득 정보가 요구됨.
- 셋째, 맞춤형 농정을 실시하기 위한 기반 구축 수단으로 등록제를 활용함. 이것은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의 수단으로 등록제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록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영체 유형화 방식에 대한 분석임.
  - 등록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농정은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뿐 아니라 농업인 개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까지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등록제의 등록절차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자격 및 인증기준이 정립되도록 함.

-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체계 내에서 농업경영체 개념이 불완전하며,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인증기준도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음.
- 등록제에서 농업경영체의 등록기준 및 조건을 확립하여 농업경영체의 개념과 인증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함.

그림 4-2. 농업경영체등록제 활용의 기본방향



○ 다섯째, 농림사업 이외 분야에서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활용하는 영역을 넓히도록 함. 특히 등록정보의 통계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운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의 정

확성만 보장된다면 표본조사에 의한 통계보다 유용성이 높은 분야가 있음.

- 여섯째, 농업인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시행하는 수단으로 등록제가 기능할 수 있게 함. 즉, 등록제의 등록정보가 대 농업인 서비스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2. 등록제도 개선방안

- 등록제의 발전방향에 입각하여 이를 추진하는 실행방안을 모색하면, 여기에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과 등록제의 활용도를 높이는 사항으로 구별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등록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먼저 이 장에서 분석하고, 다음 장에서 등록제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분석하기로 함.

### 2.1.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 등록제의 제도적 개선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제를 개별 경영체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제도화하는 것임.

#### 2.1.1. 농정분야 DB 구축 및 통합DB 추진 현황<sup>34</sup>

##### 가. DB 구축 현황

- 현재 농식품부가 직접 생산하였거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총 DB

<sup>34</sup> 여기에 대해서는 김수석(2013b), pp. 86~92 참조.



수는 98종임.

- 이 중에서 43종은 AgriX 시스템에서 직접 관리 또는 연계하여 관리하고, 32종은 농관원, 농축산검역본부, 농협 등 10개 산하 기관 및 소속 단체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이고, 나머지 8개는 관계 부처의 정보와 연계하여 주민·토지·소득·통계 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임<표 4-1>.

표 4-1. 농정 관련 DB 현황

구 분	시스템 내역	개수	사업명
농식품부 구축 DB (75종)	본부 운영·관리	33 (관리)	농업경영체등록, 쌀소득 보전직불 등
	소속기관·단체 정보연계 등(10)	10 (연계)	축산업등록, 농지정보, 농특회계 등
활용 DB (23종)	관계부처 정보 연계(8)	32	동물방역, 친환경인증, 소이력추적, 면세유관리, 농협 보조·융자 등
	주민·토지·소득 정보, 통계 시스템	23	주민정보, 토지대장, 농림수산물통계(16종), 국세행정 등

자료: 농림수산물부 기획조정관실(2012), 농림수산물사업 통합관리 및 DB 구축 추진 계획(안)

○ AgriX가 관리하는 43종 DB 중에서 AgriX의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직접 관리하는 것이 33종이며, 농촌행정 등 다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10종이 됨.

- AgriX는 또한 DB정보의 유형에 따라 ① 농림사업관리 ② 기본정보관리 ③ 통계관리로 구분할 수 있음.
- 여기서 농림사업관리는 농림사업 중에서 AgriX에 DB화 된 사업의 관리를 말하는데, 현재 21종의 DB가 구축되어 있음<표 4-2>.<sup>35</sup>

<sup>35</sup> AgriX는 농림사업 중에서 대상사업자가 많거나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

표 4-2. AgriX DB 구성 현황

농림사업관리	기본정보관리	통계관리
경영이양직불, 농업정책자금관리, 쌀소득보전직불, 친환경직불, 조건불리직불, 물류표준화, 가축분뇨처리, 토양개량, 농어업경영권설립, 우수농업인 추가지원, 후계농업인 육성, 영유아양육비지원, 농기계임대, 농가단위소득안정, 퇴·액비지원, 과수고품질시설, 과실전문생산단지, 거점산지유통, 에너지효율화, 면세유 사후관리, 산지유통시설관리 (21)	농업경영체등록, 축산업등록, 축산농가기본정보, 인공수정사면허정보, 시군구보건위생, 농지정보, 소브루셀라검사관리, 산지유통종합평가 (8)	배합사료생산량, 농림생산지수, 화훼재배량, 산지유통조직, 계약재배량, 약정출하량, 기타 가축통계, 특용작물생산량, 농기계보유현황, 정부관리양곡현황, 과실류생산 및 가공량, 시설채소생산량, 시설채소온실현황 및 채소류생산량, 농수산물통계종합DB (14)

자료: 농림수산물부 기획조정관실(2012), 농림수산물사업 통합관리 및 DB 구축 추진 계획(안)

#### 나. 통합DB 추진 현황

-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등록제를 기반으로 하여 개별 농업경영체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농식품부의 당초 기획안(농림수산물부 기획조정관실 2012)에 따르면, 2012년도에 농식품부가 실시하는 총 사업 수는 세부사업으로 326개(내역사업으로 816개)인데,<sup>36</sup> 이 중에는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으로 분류된 대상사업은 55개 세부사업(142개 내역사업)이었음<표 4-3>.

요한 사업위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sup>36</sup> 농식품부가 수행하는 총 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사업과 시행지침서상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예산 및 기금운영 설명자료에 의한 사업으로 구성됨. 2012년의 경우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99개(204개 내역사업)이고, 지침서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업이 227개(612개 내역사업)임.

표 4-3. 농식품부의 전체 수행사업 현황 (2012)

단위: 개수, 억원

구 분	내역사업	세부사업	예산	대상사업* (내역/세부사업)
경영체 지원	236 (29%)	94 (29%)	60,463 (39%)	125/46
인프라 구축	151 (18%)	54 (17%)	34,582 (22%)	1/1
공공 서비스	354 (43%)	141 (43%)	36,820 (24%)	8/3
지역경제·개발	55 ( 7%)	19 ( 6%)	17,557 (11%)	8/5
기본 경비	20 ( 3%)	18 ( 6%)	4,662 ( 3%)	-
계	816(100%)	326(100%)	154,083(100%)	142/55

\* 여기서 대상사업은 통합관리시스템의 대상으로 분류된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을 말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관실(2012)

표 4-4.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 현황 (2012)

단위: 개수, 억원

구 분	내역사업	세부사업	예산
전체 농림사업	816 (100%)	326 (100%)	154,083 (100%)
개별 경영체 지원 대상 사업	142 (17%)	55 (17%)	49,419 (3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관실(2012)

- 여기서 농식품부는 이들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음. 다시 말해 142개 내역사업(55개 세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영체정보를 통합DB(‘농업경영체 통합DB’)로 구축하여 개별 농업경영체로 하여금 지원받고자 하는 농림사업들을 사업별로 각각 신청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그런데 2013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수산분야 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대상 사업은 102개로 줄어들게 됨.

- 대상사업의 확대에 따라 농업경영체 통합DB에 포함되는 등록항목도 조정이 이루어져 현행 60개 항목에서 93개 항목으로 늘어나게 됨.<sup>37</sup>
- 농식품부는 통합DB의 구축절차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제시하고 있음.
  - ① 농업경영체등록 DB와 농지원부 DB, 그리고 현재 전산시스템에서 구축·운영 중인 38개 자료를 정비하여 이를 ‘통합DB’ 형태로 전환함.
  - ② 일부 추가 입력 등이 필요한 자료는 원천자료 보유기관과 협의하여 정보를 연계하거나 수작업 입력 등으로 DB를 보완함.
  - ③ 정리가 완료된 통합DB의 정보는 농관원 등에서 확인 및 검증토록 함.
- 농식품부의 2012년 기획안(기획조정관실 2012)에 따르면, 당초 대상사업인 142개 내역사업을 통합DB의 정보와 농림사업 선정요건 간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유형화해보면 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표 4-5>.
  - ① 통합DB와 연계성이 높은 36개 사업: 통합DB만으로 대상사업의 자격 선정 및 대상자 선정이 가능한 사업군
  - ② 통합DB와 연계성이 보통인 100개 사업: 통합DB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 별도의 서류로 대상자 자격 및 선정이 가능한 사업군
  - ③ 통합DB와 연계성이 낮은 6개 사업: 통합DB로는 자격여부 만을 확인하고 가입서류 등 별도의 추가서류가 필요한 사업군
- 이를 토대로 하여 농식품부는 새로 조정된 102개 대상사업에 대해 유형분류에 입각한 연차별 사업연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sup>37</sup> 93개 등록항목에 대해서는 제2장의 <표 2-2> 참조.

표 4-5. 통합DB와 대상사업의 연계성

구분	내용	사업종류
통합DB 연계성 : 높음 [36개 사업]		
○ 직불형	- 특정 현황 사실 확인 후 지원 (11개 사업)	밭농업직불,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쌀소득보전변동직불 등
○ 단순 자격 확인형	- 농업인 여부 확인만으로 시혜적으로 지원(2개 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지원
	- 특정한 사고, 재해 발생 시 시혜적 지원 (11개 사업)	축산물수급안정, 생계 및 소득안정, 가사도우미 등
	- 농지구도 및 특정자격 충족 시 지원 (12개 사업)	농지연금, 과원임대차, 유기질 비료지원, 맞춤형비료지원 등
통합DB 연계성 : 중간 [100개 사업]		
○ 적격심사형 (경영활성화 지원형)	- 적정성 여부 검토 후 교육·홍보·컨설팅 등을 지원(9개 사업)	창업후계농업인육성, 농업경영컨설팅, 축산물HACCP컨설팅 등
○ 심사·평가형 (인프라 및 운영비지원형)	- 시설개선·현대화 및 환경조성 비용을 지원 (48개 사업)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등
	- 적정여부 검토 후 운영·유지 자금 등을 지원 (7개 사업)	가공업체 운영자금지원, 브랜드 경영체 운영지원, 원양어업관리 회사지원 등
○ 대출심사형 (이차보전형)	- 심사를 통한 융자금을 보전 지원 (36개 사업)	농축산경영자금, 재해농가이자감면 재해복구융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 등
통합DB 연계성 : 낮음 [6개 사업]		
○ 추가서류 필요 (보험·공제형)	- 대상지정 후 별도 약관에 따른 지원 (8개 사업)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어선원 및 어선보험 등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관실(2012)

## 2.1.2.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농업경영체등록제의 등록정보를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의 통합DB로 활용하여 농림사업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등록제가 추구해 온 본래 목적 중 하나임. 그런데 등록제를 농림사업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성공적 시스템 구축의 관건이 됨.

- 첫 번째 쟁점은 통합DB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책사업이 연계될 경우 제1단계에 필요한 등록제 DB만 일차적으로 만들고 연계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DB 항목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택할지를 결정하는 것임.
- 두 번째 쟁점은 소득관련 국세청 과세정보 등 타 부처 내지 타 기관 보유 정보를 이용하여 통합DB를 구축할 때 개인정보보호 차원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이들 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파악하여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임.
- 세 번째는 통합DB와 연계되는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잘 선정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착오 없이 안착하고 점진적으로 대상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가. 통합DB 구축방식

- 등록제를 개별 경영체 지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은 전술한 등록제의 발전방향에서 제시한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방향성이 올바르다 할 수 있음.
  - 하지만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DB를 일괄적으로 만들어 전체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에는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 통합관리시스템에 필요한 통합DB 구축방식에는 이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구축하는 것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이 있고, 이들 방식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
- 통합DB를 일시에 일괄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의 장점은 한차례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통합관리시스템에 필요한 DB 구축을 완결할 수 있다는 점과 통합

DB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임.

- 일괄구축 방식의 단점은 일시에 너무 많은 내용을 조사하고 등록하게 함으로써 등록의 효율과 등록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임. 또한 등록제의 효과를 체감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괄등록에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반면에 단계적 통합DB 구축방식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최소한의 추가적인 조사·등록만 수행하여 제1단계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적은 노력으로 손쉽게 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제1단계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등록제의 효과를 체감한 후에 이루어지는 그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DB 구축에서는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높을 수 있음.
- 이 방식의 단점은 완결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점과 제1단계에 연계되는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 위주의 부분적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 현재 농식품부는 일괄적 통합DB 구축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 방식의 단점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추진과정상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반드시 관철하는 형태로 추진하지 않고 추진과정상 난관에 부딪힐 경우 단계적 DB 구축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유연한 추진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 판단됨.

#### 나. 타 부처(기관) 보유 정보 활용 가능성 및 절차 (법률적 검토)

- 여기서는 타 부처 또는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통합DB의 항목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용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하는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국세청의 과세정보(소득 자료) 활용을 사례로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실시함.<sup>38</sup>

## (1) 활용 가능성

- 국세청 보유 소득자료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 그런데 이 정보는 ①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와 ② 국세청이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 구분됨.<sup>39</sup>
  - 이 두 가지 종류의 자료(과세정보)는 수집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전자는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후자는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됨.
  
-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다른 국가기관(예컨대 농식품부)이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요구됨.
  
-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관련 조항들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청이 수집하여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거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세청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반면에 「국세기본법」과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세정보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sup>38</sup> 이에 대한 검토분석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진수 교수)에 의뢰한 바, 그 검토결과를 정리함.

<sup>39</sup> 「국세기본법」은 이 두 자료를 통칭하여 과세정보라 함(동법 제81조의13 제1항).



-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과세자료의 제출과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런 규정 내용과 법률적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세기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모두 상호간의 효력 순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과세정보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되는 모든 법률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세기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모두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문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과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
- 과세정보 중 국세청이 직접 납세자 국민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국세청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는 그 기관들이 정보주체인 국민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과세자료라고 하여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또한,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

권에 근거한 일반적 인격권 등을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해당하는 바,<sup>40</sup> 헌법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과세정보(과세자료)를 다른 국가기관인 농식품부에 제공하는 것을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에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지위를 등한시하는 해석이 될 것임.

- 결론적으로 농식품부가 과세정보를 정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①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② 정보주체, 즉 농업인 또는 농업경제체 동의를 있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반대급부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등 반대급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2) 활용 절차

- 개별 입법을 통하여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당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게 하면 될 것임.
-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하여 과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 그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절차는 개인정보처리자(농식품부)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것임(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sup>41</sup>

<sup>40</sup> 헌법재판소 2005.5.26. 99헌마513

<sup>41</sup> 그리고 이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sup>42</sup>

### (3) 등록제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검토의견

- 농식품부가 새롭게 추진코자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서의 기재자료와 함께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절차를 규정해 두고 있음.
- 따라서 등록하는 농업경영체(경영주)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등록하는 농업경영체에게 정책적 지원을 통한 가시적인 반대급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등록정보에 비해 반대급부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의 동의절차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sup>43</sup>

(동법 제15조 제2항).

<sup>42</sup> 구체적으로 동의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sup>43</sup>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는 현실하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농업인의 동의는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다. 대상사업의 연계 우선순위

○ 전술한 바와 같이 농식품부는 102개 대상사업에 대해 통합DB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표 4-6>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4-6. 통합관리 대상사업의 유형구분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

구분	연계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1(시범)	2014년	1-1. 직불형	발농업직불제	발농업직불제	
2(시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쌀소득등보전변동직불금	
3(시범)				쌀소득등보전고정직불금	
4(시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5			경관보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6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직불	
7				친환경축산직불	
8			피해보전직불	피해보전직불(농업)	
9			폐업지원금	폐업지원(농업)	
10			경영이양직불	경영이양직불	
11		1-2. 단순 자격 확인형	친환경비료지원	맞춤형비료	
12				유기질비료	
13				토양개량제	
14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15			과원규모화	과원매매	
16				과원임대차	
17			녹비작물종자대지원	녹비작물종자대지원	
18			논소득기반다양화	논소득기반다양화	
19			농어민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어민건강보험료 지원	농어민건강보험료 지원
20				농어민연금보험료 지원	농어민연금보험료 지원
21		농지규모화	농지교환·분리·합병사업	농지교환·분리·합병사업	
22			농지매매사업	농지매매사업	
23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농지장기임대차사업	
24		농지매입비축	농지매입비축		
25		농지연금	농지연금		
26		축산물수급관리	생계 및 소득안정	생계 및 소득안정	
27			송아지생산안정	송아지생산안정	
28			암소도태장려금	암소도태장려금	
29			축산물수급안정	축산물수급안정	
30		취약농가 인력지원	가사도우미	가사도우미	
31			영농도우미	영농도우미	

표 4-6. 통합관리 대상사업의 유형구분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계속)

구분	연계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32	2015년	2-1. 적격 심사형	농어업경영컨설팅	농어업경영컨설팅(지자체)	
33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자연순환농업 교육·홍보	
34				자연순환농업활성화	
35			창업후계농업인육성	창업후계농업인육성	
36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	
37		2-2. 심사 평가형	가공시설및운영지원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
38					
39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시설지원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40					
41			농어업 에너지이용효율화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
42					
43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44					
45			산지유통종합자금	산지유통시설활성화	수급안정
46					수매지원
47					
48			시설원예품질개선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원예전문단지
49					일반원예시설
50					
51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52					
53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산지저온시설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54					저온수송차량
55					
56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공시설및운영자금	기계장비
57					벗짚처리비
58					사일리지제조비
59					조사료유통비
60					조사료유통센터운영
61					종자비입비
62					초지조성및보완
63					
64			종축장전문화지원	시설자금	운영자금
65					
66		축사시설현대화	우량송아지생산및비육시설		

표 4-6. 통합관리 대상사업의 유형구분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계속)

구분	연계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67	2016년	2-2. 심사 평가형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 현대화	
68				가축계열화지원	
69				브랜드 경영체 운영지원	
70				브랜드판매시설	
71				한우농가조직화	
72			축산분뇨처리시설	개별시설	
73				공동화자원시설	
74				액비저장조	
75				정착촌구조개선	
76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77				친환경농업지구조성	
78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79			2-3. 대출 심사형	농업자금이차보전	귀농귀촌정착지원자금
80					긴급경영안정자금
81		농어촌주택개량자금			
82		농업경영개선자금			
83		농업경영회생자금			
84		농업종합자금			
85		농축산경영자금			
86		도축가공업체지원자금			
87		부채상환인센티브			
88		사료구매자금			
89		상호금융대체자금			
90		시설현대화자금			
91		연대보증해소자금			
92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			
93		재해농가이자감면			
94		재해복구융자금			
95		정책자금대체자금			
96		정책자금상환연기			
97		협동조합합병자금			
98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99		RPC운영자금			
100		낮음	3.보험 공제형	농어업인재해공제	농업인안전공제
101	농어업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102				농작물재해보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 내부자료. 보조·융자사업 연차별 통합관리 대상사업: 102개 내역사업(2013)

- <표 4-6>을 보면, 통합DB와 연계성이 높다고 분류된 직불형 사업과 단순자격 확인형 사업을 통합관리 우선순위 사업으로 설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통합DB와의 연계성이 중간으로 분류된 68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DB의 구축이 현재의 추진계획대로 일괄구축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표 4-6>에 제시한 순서대로 사업연계가 이루어지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통합DB 구축이 단계적 구축방식으로 진행된다면, 통합관리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에서 등록정보가 먼저 구축되는 경작활동 및 영농이력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연계하고 매출액 및 소득 정보와 관련된 사업을 뒤에 연계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으로 판단됨.

#### 라. 통합관리대상 시범사업 실시방안

- 통합관리 대상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4년 경지관련 세 가지 직불사업(4개의 내역사업), 즉 밭농업직불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대해 통합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 3개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현행 추진방식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보면, 이는 <표 4-7>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현재 개별 사업별로 실시되는 경지관련 직불사업이 2014년에는 통합신청서에 의해 한꺼번에 신청되고 관리되게 됨.
  - 이것은 농림사업관리시스템의 변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농림사업추진체계에 관한 사항과 농업경영체등록제와 농림사업집행기구와의 관계 설정에 관한 사항이 먼저 고려되고, 이에 기초한 기본방침에 따라 농림사업의 통합관리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방향 설정 및 로드맵 구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현행 농림사업추진체계 내에서 세 가지 직불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집행하도록 함.

표 4-7. 경지관련 직불제 추진방식 비교

구분	발농업직불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신청담당기관	읍·면·동	읍·면·동	읍·면
사업신청기간	(동계작물) 3월 (하계작물) 5.1 ~6.15	6월(6.1~6.30)	(사업신청) 3월 (약정신청) 5.1 ~6.15
사업자 선정 기관	읍·면·동	읍·면·동	읍·면
심사 및 선정기간 (등록증 발급)	(동계) 3월말까지 (하계) 6월말까지	7월말까지 심사 8월 중 등록증 발급	6월말까지
이행점검기관	농관원: 현지조사 및 농약잔류검사 농업기술센터: 토양 검사	농어촌공사: 농지기능 농관원: 농약잔류검사 농업기술센터: 토양 검사	농관원: 농지관리 시·군·구: 지급요건 이행 여부 확인
이행점검기간	(동계) 4.1~6.15; 등록증 발급~6.30 (하계) 7.1~9.30; 등록증 발급~10.31	등록증 발급후 2개월 (혹은 11월말까지)	7.1~9.30 (이행점검) 10.1~10.5(결과통보) 10.20 (대상자 확정)
자금 집행기관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자금 집행시기	12월	고정직불: 12월 변동직불: 다음해 3월	12월

자료: 2013 농림사업시행지침서

○ <표 4-7>에 정리된 내용을 기초로 잠정적인 통합적 실시방안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① 통합사업 신청은 기존과 같이 읍·면·동에서 담당함.
- ② 사업신청기간은 세 가지 사업에 공통되는 5월 중순~6월 중순으로 하되, 발농업직불제의 동계작물 대상자에 대해서는 3월에 통합신청서에 신청하고 5월 이후 다시 다른 직불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함.<sup>44</sup>



- ③ 통합신청서의 등록내용은 DB로 관리되어 관리기관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고, 개별 점검기관들이 점검내용을 부가·입력할 수 있도록 함.
- ④ 시·군·구에서 배정된 자금을 집행할 때, 쌀소득등보전직불제의 변동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 직불금은 연말에 합산하여 지불하고, 변동직불금만 다음 해 3월에 지불토록 함.

#### 마. 등록제 관리기구와 농림사업 집행기구 간의 관계 설정

- 통합DB에 의한 개별 농업경영체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농림사업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등록제 관리기구와 농림사업 집행기구 간의 관계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농림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집행하기 위해 정비할 필요가 있는 농림사업추진체계는 현재 편의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농림사업의 사무분장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성격에 따라 중앙사무와 지방사무로 재정비하여 추진하는 것임.<sup>45</sup>
- 다시 말해 농림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사업지원방식 위주로 되어 있는 추진체계를 사업의 성격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농정사무 구분 위주의 추진체계로 개편하는 것인데, 이는 보조사업과 융자사업별로 관리하던 농정추진체계를 중앙사무와 지방사무별로 관리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것임.

<sup>44</sup>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경우, 조건불리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마을단위로 신청하는 신청서는 개별 경영체의 사업신청과 직접적 관련은 없으므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3월에 신청하게 함.

<sup>45</sup> 현재의 중앙/지방사무의 구분은 사업의 주관기관 중심으로 분류해 본 것에 불과함. 현행 농정추진체계의 주축은 보조/융자사업 구분에 따른 사업추진방식이고, 중앙/지방사무 구분은 편의성 위주로 구성된 것임. 농정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김수석 등(2010), p. 93 이하 참조.

- 여기에는 새롭게 정비되는 중앙사무와 지방사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 구성이 동반되어야 함. 즉, 현재 중앙사무는 농식품부 산하 다양한 조직들에 의해 분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중앙사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함.
- 이럴 경우, 각종 직불사업은 중앙사무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직불사업의 집행주체도 중앙정부의 산하 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 등록제 관리기구와 농림사업 집행기구와의 관계 설정은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등록제 관리기구가 직불사업 등 정책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국가들이 있어 통합운영의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음을 알 수 있음.
- 외국 사례를 비교분석한 제3장의 <표 3-1>을 보면, 영국은 단일직불제 전담기구인 농촌지불청(RPA)이 농업경영체등록을 관리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은 경영체의 인적 정보와 경지식별번호를 관리하는 등록제 관리기구(기본데이터등록기관)와 단일직불제 집행기관(농업회의소/농업청)이 분리되어 있으며, 가축정보는 독일 고유의 축산업등록제를 통해 수집한 후 주정부 농업데이터은행(DB)에 전달하여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단일직불제 전담기구인 오스트리아 농업마켓(AMA)이 설치되어 직불금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고 농업경영체등록 정보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등록정보 등록이나 직불금 신청 등의 형태로 개별 농업경영체와의 직접적인 대면(연결)은 배제되어 있음. 왜냐하면 직불금 신청처리 업무는 농업회의소가 담당하고 경지정보의 수집은 토지등기소와 토지측량청 등을 통해 수집되어 전달되기 때문임.
- 이런 외국 사례를 고려해 볼 때, 등록제 관리기구가 개별 경영체 지원 농림

사업 중 가장 많은 농업경영체가 참여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 예컨대 쌀소득 등보전직불제를 포함한 경지관련 직불사업 등은 직접 관리·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sup>46</sup>

## 2.2.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업경영체 유형화 기반으로 제도화

- 맞춤형 농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보다 유의미하고 정교한 유형 구분이 필요한데, 등록제를 이러한 유형 구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함.

### 2.2.1. 농업경영체 유형화 운영 현황

- 통계청은 농림어업조사에서 농업경영체(농가)를 전업농가/겸업농가 분류 및 영농형태별 분류를 사용하고, 농가경제조사에서는 전업농가/겸업농가 분류와 주업농가/부업농가/자급농가 분류, 그리고 영농형태별 분류라는 3가지 분류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농식품부는 통계상의 농업경영체(농가) 유형 구분에서는 통계청과 동일한 분류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정책적 육성대상으로서 전업농업인을 개념화하여 분류하고 있음.
- 통계청 및 농식품부의 농가 유형 분류에서 영농형태별 분류는 양적 구분인 전업농가/겸업농가 및 주업농가/부업농가/자급농가 분류와는 성격을 달리 하는 질적 구분으로서 이러한 분류 자체의 존재의의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sup>46</sup> 만약 농정추진체계 개편으로 중앙사무를 관장하는 기구(가칭 ‘지방농업청’)가 설치된다면 이 기구가 개별 경영체 지원 사업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표 4-8. 전업농/겸업농 분류방식

구분	분류 기준
전업농가	농업에만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와 농업 이외 경제활동에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업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겸업농가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업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1종 겸업	전체로 보아 농업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겸업농가
2종 겸업	전체로 보아 농업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적은 겸업농가

자료: 통계청, 2012년 농림어업조사보고서

표 4-9. 주업농/부업농/자급농 분류방식

구분	분류 기준
주업농가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전문	주업농가 중 경지규모가 3h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 원 이상인 농가
일반	주업농가 중 경지규모가 3ha 미만이고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 원 미만인 농가
부업농가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외수입이 농업총수입보다 많은 농가
자급농가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인 농가 중에서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 및 외상판매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농가

자료: 통계청, 2012년 농가경제통계

○ 이에 비해 전업농가/겸업농가 및 주업농가/부업농가/자급농가 분류는 분류 기준에 차이가 있고 활용도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농규모 및 영농 종사비중에 의한 양적 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두 가지 분류상의 차이가 애매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sup>47</sup>

<sup>47</sup> 개념상으로 볼 때, 전업농과 1종 겸업농이 주업농이 되고, 2종 겸업농이 부업농이

- 이 결과 정책당국이 농가 유형 구분에 의한 정책(예컨대 맞춤형 농정) 추진시 어느 분류를 중점적으로 활용할 지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정책고객에게는 두 가지 분류를 혼용해서 활용하면 정책적 시그널에 혼란을 줄 수 있음.

표 4-10. 영농형태별 농가유형 분류방식

구분	분류 기준
논벼 농가	농업총수입 중 미곡 수입이 최대인 농가
과수 농가	농업총수입 중 과수류 수입이 최대인 농가
채소 농가	농업총수입 중 채소류 수입이 최대인 농가
특작 농가	농업총수입 중 특용작물 수입이 최대인 농가
화훼 농가	농업총수입 중 화훼류 수입이 최대인 농가
전작 농가	농업총수입 중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수입의 합이 최대인 농가
축산 농가	농업총수입 중 축산 수입이 최대인 농가
기타 농가	이외 기타 농산물(묘, 벚짚, 농업부산물, 양잠 등) 수입이 최대인 농가

자료: 통계청, 2012년 농가경제통계

- 독일의 경우, 1995년까지 농업경영체 분류를 전업농/겸업농/부업농 분류를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 전업농과 겸업농<sup>48</sup>을 통합한 주업농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주업농/부업농 분류로 바뀌게 됨.

- 주업농(landwirtschaftlicher Haupterwerbsbetrieb)의 초기 개념은 농업경영체의 총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중 50% 이상 차지하는 경영체였음.
- 그런데 2003년 EU 차원의 주업농 분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주업농의 지표는 법인경영체를 제외한 개인경영체 및 인적 회사 중에서 유럽영농규모단위(European Size Unit, ESU)<sup>49</sup> 16 ESU 이상이고 연간노동력단위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구분의 실익이 별로 없음.

<sup>48</sup> 독일에서 겸업농은 우리나라의 1종 겸업농과 유사한 개념임.

<sup>49</sup> 유럽영농규모단위(ESU)는 일종의 표준소득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표준총수입을

(Annual Work Unit, AWU)<sup>50</sup> 1 AWU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바뀌게 됨.

- 부업농은 8~16 ESU 영농규모 (혹은 16 ESU 이상이지만 1 AWU 미만) 농업경영체이고, 8 ESU 미만 농업경영체는 통계조사 및 정책 대상에서 제외됨.

- 독일 및 EU의 농업경영체 분류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영농규모에 의한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이 한 가지 체계로 통일되어 있고, 주업농/부업농 분류기준도 이전에는 농업소득과 비농업소득의 구성비율이 주된 지표가 되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EU 차원의 지표 통일이 이루어져 표준소득

□ EU의 농업경영체 유형구분 방식 (김수석 등 2006, 44-47)

○ 표준총수입 크기에 의한 유형화

- 주업농: 16 ESU 이상, 부업농: 16~8 ESU, 정책대상 제외: 8 ESU 이하
- 주업농의 영농규모별 분류: 4단계로 구분 (16~40 ESU, 40~100 ESU, 100~250 ESU, 250 ESU 이상)

○ 표준수입의 품목별 구성에 의한 유형화

- 표준총수입: 품목별 표준수입(조수입-특정비용)을 합산
- 특정 품목류의 표준수입이 표준총수입의 2/3 이상일때, 해당 농업경영체는 그 유형의 농업경영체로 분류  
[단일 품목군: 경종농업, 원예, 과수, 초지축산(소, 말, 양), 사육축산(돼지, 닭, 기타 가금)]
- 특정 품목류의 표준수입이 총수입의 2/3을 초과하지 못하면 복합경영체(복합 농업경영체, 복합축산, 복합농축)로 분류
- 식물류의 표준수입이 총수입의 2/3 이상이면 복합농업경영체, 동물류의 표준수입이 2/3 이상이면 복합축산경영체, 나머지는 복합농축경영체로 유형화

산출하는 단위로서 곡물 2ha 또는 젖소 1두당 표준수입 크기를 근거로 산출되는데, 현재 1 ESU는 1,200 유로로 책정되어 있음(1 ESU = €1,200).

<sup>50</sup> 연간노동력단위(AWU)는 성인 1명의 노동력을 말하는데, 1 AWU는 16~65세의 노동력이 하루 8시간, 연간 225일 노동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1,800시간 노동하는 것을 말함.

으로 측정된 농업소득의 크기, 즉 농업생산에의 절대적 기여도가 주된 지표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임.

- 우리나라 농업경영체(농가) 유형 분류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점과 외국의 사례에서 얻는 시사점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이원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전업농/겸업농 분류와 주업농/부업농/자급농 분류를 통합해 단일화된 체계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단일화된 농가유형의 분류기준은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의 구성비보다는 농업소득의 절대적 크기를 주된 지표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이는 농정이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시그널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농업생산자가 농업생산활동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가 주업농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임.
  - 그리고 농업외소득의 크기를 파악하는데 따른 현실적 어려움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데이터의 부정확성도 지표 변경의 이유가 될 수 있음.
- 지금까지 서술한 통계상의 농가유형 분류와 별도로, 실제 정책자료를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 많이 활용하는 것이 영농규모에 의한 농가유형 구분임.
  - 그런데 이 영농규모에 의한 유형분류도 주된 근거 내지 지표가 되는 것이 경작지 면적이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농업조수입 등의 매출액 크기가 사용되고 있음.
  - 하지만 농업조수입, 농축산물 판매소득 등의 산출성과를 나타내는 영농규모는 계측하는 방법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
- 경작지 규모에 따른 농가유형화가 농업경영체 유형의 실상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많기 때문에 영농규모에 의한 농업경영체 유형화를 보다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유형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2.2.2. 영농규모에 의한 농업경영체 유형화 방식(들)

- 영농규모에 의한 농업경영체 유형화를 보다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유형화 방식으로 환산영농규모 지표와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지표가 있음.

### 가. 환산영농규모 지표

- ‘환산영농규모(Transformed Size of Farming: TSF)’는 경지 이외의 농업고정자본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얻은 값을 경지면적과 합쳐 농가의 영농규모로 파악하는 방식임.<sup>51</sup>

- TSF의 구체적인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TSF = Lc + FA/Lp$$

TSF: 환산영농규모

Lc: 경지면적

FA: 농업고정자산 평가액(토지제외)

Lp: 농업용 전국평균 지가

- 농업고정자산은 연도초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평가액 중 농업부분만 농업고정자산 평가액에 포함됨.
  - 따라서 농업고정자산 평가액에는 농업적 이용의 건물 평가액, 대동식물과 대농기구의 평가액이 포함됨.
- 축산, 과수, 대농기구, 농업건물 등은 농업고정자산의 관점에서 화폐적으로 평가되지만, 농촌지역의 전국 평균적인 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면적으로 환산

<sup>51</sup> 환산영농규모는 최양부 등(1983)의 “표준영농규모”(standardized size of farming) 개념을 차용해 김수석 등(2006)에서 새롭게 재구성한 것임. 최양부 등(1983)은 표준영농규모를 이용하여 당시의 농업경영체층을 5단계로 구분하였음. 여기에 대해서 김수석(2013b), pp. 95-96 참조.



할 경우 인플레이션 등에 의한 과대평가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음.

- 환산영농규모지표는 품목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체별 종합적인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됨.
  - 복합영농경영체의 영농규모를 파악하고, 농기계 구비 등 경영관련 여건 및 환경을 평가하기에 적합함.
- 하지만 농업고정자본의 범위 설정 문제와 정책집행단계에서 농업경영체의 농업고정자산평가액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나.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지표는 농가의 영농규모를 산출성과인 표준소득 형태로 나타낸 것임.<sup>52</sup> 표준소득 계측은 농가조사 등의 방법으로 농업경영체의 실제 농업소득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고 또한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배작목과 재배면적, 축종과 사육두수 등을 조사하여 간접적으로 농업소득을 파악하는 방법임.
-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계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절차가 차례로 이루어져야 함.
  - ① 단위당 품목별 표준소득을 산출함
  - ② 품목별 표준소득을 근거로 개별 경영체의 표준소득을 산출함
  - ③ 일정 크기의 경영체 표준소득을 영농규모의 단위로 나타내고, 영농규모 단위의 크기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계층적으로 구분함.
-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경영체별 재배작목과 재배면적,

<sup>52</sup>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지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김수석 등(2006), pp. 65-69 및 김수석(2013b), pp. 96-98 참조.

축종과 사육두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의 크기에 따라 농가를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크기의 표준소득을 영농규모단위(Farm Size Unit, FSU)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함.
  - 영농규모단위(FSU)는 기준연도의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일정 크기로 정할 수 있음.<sup>53</sup>
- 영농규모단위가 정해지면 농가에 대한 유형 구분은 FSU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음. 예를 들어, 영세농(10 FSU 미만), 중소농(10~30 FSU), 전업농(30 FSU 이상)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그리고 총표준소득 중에서 주된 품목의 표준소득 비중을 알 수 있어 품목별 유형화가 가능함.

#### 다. 규모에 의한 농업경영체 유형화 방안: 검토의견

- 규모에 의한 농업경영체 유형화의 두 가지 방식 중 환산영농규모 지표는 영농투입규모에 의한 유형화이고,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지표는 영농산출규모에 의한 유형화 방식임.
  - 이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은 각기 그 활용의 용도 및 적용방안에 따른 장단점이 있음.
- 환산영농규모 방식은 영농개시 시점이나 영농활동 중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특히 이 지표가 토지면적으로 환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영농규모를 물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반면에 이 방식이 농업고정자산 평가에 어려움이 있고 품목별 차별성을

<sup>53</sup> 예를 들어 2010년을 기준연도로 해서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100만원을 1 FSU로 정할 수 있음. 그러면 1 FSU = 표준소득 100만원 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활용되게 되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영농규모단위의 실제가치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등식의 내용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음(2015년에 1 FSU = 표준소득 120만원).

표준소득 방식보다 정교하게 구별해 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방식은 농업생산액 규모 크기로 경영체를 유형화할 수 있고 품목별 유형화도 가능한 장점이 있음.
  - 나아가 전업농/겸업농, 주업농/부업농/자급농 분류 등 통계상의 농업경영체(농가) 유형 분류가 EU 국가들처럼 농업생산액이 주된 지표가 되는 형태로 바뀌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표준소득에 의한 농업경영체 유형화는 보다 중요해지는 장점이 있음.
  - 반면에 단점으로는 영농규모의 유형화가 모두 화폐액 형태로만 나타나 실제 영농투입에 이용되는 투입요소적 차별성을 파악할 수 없는 점을 들 수 있음.
- 이처럼 농업경영체 유형화의 두 가지 방식은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택하고 다른 쪽을 폐기하기보다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그 활용 형태에 차이를 둘 수 있는데, 환산영농규모 방식은 후술하는 농업경영체 인증기준 정립의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리고 표준소득 방식은 맞춤형 농정을 위한 경영체 유형화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2.2.3. 표준소득에 의한 농업경영체 유형화 실시방안

#### 가. 품목별 단위 표준소득 산출

- 품목별 표준소득은 현재 농촌진흥청과 통계청이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소득 조사 및 농축산물생산비조사를 통해 산출하고 있음.<sup>54</sup>

<sup>54</sup> 현재 품목별 단위 표준소득은 농촌진흥청과 통계청에서 산출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은 58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단위 표준소득을 산출하고 있으며, 통계청은 5개 농

- 농산물소득조사가 현재와 같은 품목별 생산비 및 소득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을 벗어나서 농업경영체의 표준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품목별 지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기존의 농산물소득조사 방식에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함.
- 먼저 품목별 표준소득 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원화된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함. 이를 위해 기존의 관리체계를 통폐합하고 인력과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다양한 영농활동을 하는 개별 경영체들의 표준소득을 파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품목의 단위표준소득을 산출토록 하되, 조사품목의 세밀화가 표본농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품목들을 하나의 품목류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토록 함.
  - 어떤 경우든 품목별 표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표본농가를 확보해야 함.
- 품목별 표준소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편차를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지역지수는 장기적으로는 조건불리지역과 같은 지역 및 지대별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시·도)별로 지수를 산출하도록 함.
- 개별 경영체의 표준소득 산출에 근거가 되는 품목별 단위 표준소득은 관리기관에서 매년 현행화하도록 함.

---

산물품목(논벼, 고추, 마늘, 양파, 콩)과 7개 축산물품목(번식우, 비육우, 육우, 젖소, 비육돈, 산란계, 육계)에 대해 단위 생산비 및 표준소득을 산출하고 있음.

## 나.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산출 및 유형화

-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을 산출하기 위하여 경영체별 재배품목과 재배면적, 그리고 축종과 사육두수는 농업경영체등록제를 통해 파악함.
- 조사된 농업경영체의 영농실적에 품목별 단위 표준소득을 곱하여 개별 경영체의 품목별 표준소득과 총표준소득을 산출함.
- 농업경영체의 유형화는 ① 총표준소득의 크기에 따라 ② 개별 경영체의 품목별 표준소득이 총표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양적, 질적 유형화가 이루어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EU의 표준수입에 의한 유형화 방식을 응용할 필요가 있음.

## 2.3. 농업경영체 개념 및 인증기준 정립

-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즉 농업경영체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자격 및 인증 기준에 대한 제도를 확립하도록 함. 다시 말해 현행 등록제는 농업경영체의 자격 및 기준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등록제의 제도 개선을 통해 불명확한 농업경영체의 개념을 명확히 확립하고 창업 및 농업경영체 등록의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재)설정하도록 함.

### 2.3.1. 농업경영체 인증제도 운영 현황

- 현재 농업경영체등록 자격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갖는데, 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임.

- 이 중에서 농업인 정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항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 한다고 하였는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이 법의 시행령에 적시된 농업인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음(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① 1,000m<sup>2</sup>(300평)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 ④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 ⑤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 그런데 농업경영체등록제에서 경영체 등록자격을 명확히 하지 않아 시행상의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그 사이 일부 정리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농업경영체 개념이 완전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에 있음.
  
- 농업인 기준으로 제시된 다섯 가지 요건 중 영농조합법인 종사자와 농업회사법인 종사자는 독자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로 간주할 수 있지만, ‘90일 이상 영농종사’ 요건은 별도의 다른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배척할 이유 내지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음.
  - 그런데 ‘90일 이상 영농종사’ 요건은 농업경영주가 아닌 단순 종사자도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가능하고, 동일 세대 내에서 경영체가 분리하여 중복등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음.
  - 또한 이 요건은 ‘90일 이상 영농종사’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난점도 갖고 있음.
  
-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2009년에 고시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65호)을 통해 ‘90일 이상 영농종사’ 규정은 농업경영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와 경영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농업종사자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함(고시 제4조 제3호).

- 다시 말해 이 규정은 농업경영주를 제외한 농업경영체에 속한 (보조)인력에 대한 농업인 인증규정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독자적인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밝힘.

## 2.3.2. 농업경영체 인증제도 개선방안

### 가. 농업경영체 개념 및 인증 기준 정립

-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체계 내에서 농업경영체 개념이 불완전하며,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인증기준도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음.
- 농업경영체 개념에는 무엇보다 사업체 개념이 내포되어야 하고, 이 사업체 개념의 핵심에는 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임.
  - 따라서 농업인이 바로 사업체가 될 수 없고, 적어도 물적 조건을 구비한 농업경영주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하나의 사업체 내지 경영체라 할 수 있음.
- 이렇게 개념화된 사업체가 세제상의 혜택을 받거나 정책적 수혜대상이 되는 사업체(경영체)로 되기 위해서는 경영체 인증에 필요한 의무사항 내지 선결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함.
  - 이런 점에서 앞서 분석한 외국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특히 독일의 조세법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농업경영체 자격요건과 관련한 제도, 즉 농업경영체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여기에 입각한 농업경영체 인증체계를 수립하

는 것은 우리 농정이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자 숙제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음.

-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안착을 위해 보다 시급한 것은 농업경영체의 인증기준을 확립하는 것임.
  - 농업경영체의 인증기준 중 농업법인에 대한 것은 농업법인의 설립등기로 대체할 수 있다 판단되지만, 농업인과 관련되는 농업경영체 인증 기준은 요건을 보다 명확히 명문화하고 법제화하여 시행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그리고 농업인과 관련되는 경영체의 새로운 인증 기준은 농업경영체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함.
- 농업관련 법령상의 농업인 요건을 살펴보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의되고 있음
  - 예컨대 「농지법」 상의 농업인 정의는 농지의 소유자격과 관련되기 때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의 농업인보다 구체적임.
-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농업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음.
  - ① 1,000m<sup>2</sup> 이상 농지를 경작·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영농종사자
  - ② 농지에 330m<sup>2</sup> 이상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이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농업인 정의를 경영체 개념, 즉 ‘물적 요건을 구비한 경영주’ 개념과 연결시켜 현 단계에 바로 도입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 이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제시할 수 있음.
  - ① 경종농업경영체: 1,000m<sup>2</sup> 이상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② 시설농업경영체: 농지에 330m<sup>2</sup> 이상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③ 축산경영체: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 새로운 농업경영체 기준은 분야별로 세분되어 정의되어 있고 판별기준이 명확할 뿐 아니라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물적 조건을 구비한 경영주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경영체 기준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농업인 정의를 리모델링하여 체계화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 상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처럼 ① 하나의 사업체로서 농업경영체 개념, ② 최소영농규모, ③ 사회보험 가입, ④ 조세관련 사업자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을 정비해 나가는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함.
- 특히 최소영농규모와 관련해서는 앞서 검토한 환산영농규모 지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나. 농지원부와와의 통합

### (1) 통합추진 여건

- 농업경영체등록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농업경영체(농가) 인증은 주로 농지원부를 통해 이루어져 왔음. 그런데 현 시점에는 농업경영체 인증 수단이 농업경영체등록제와 농지원부로 중복되거나 양분되는 상황에 있음.
- 이에 따라 등록제와 농지원부와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제

2장의 농업인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

-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등록제와 농지원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그런데 통합방식에 있어서는 농지원부를 등록제로 통합하는 것보다 등록제를 농지원부로 통합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금까지 등록제의 활용도가 별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제의 중요성과 다목적성을 농업인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정책적으로나 제도상으로 농업경영체등록제를 폐지하지 않는 한, 등록제를 농지원부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음.

표 4-11. 농지원부와 등록제의 등록정보자료 비교 (경영체 수)

단위: 개소, %

구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제	농지원부상 일치율
총 경영체 수	2,717,502	1,496,169	
일치 경영체 수	1,312,191		48.3
불일치 경영체 수	1,405,311	183,978	

\* 2013년 4월말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표 4-12. 농지원부와 등록제의 등록정보자료 비교 (필지 수)

단위: 필지, %

구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제	농지원부상 일치율
총 필지 수	9,789,152	7,959,759	
일치 필지 수	6,422,029		65.6
불일치 필지 수	3,367,123	1,537,730	

\* 2013년 4월말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2013년 4월말 현재 농지원부와 등록제의 등록정보자료 비교에 따르면, 농지원부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수는 271만7천 개소이고 이 중 등록제에도 등록된 경영체는 131만2천 개소로 48.3%의 일치율을 보여주고 있음<표 4-11>.

## (2) 통합방안

- 등록제와 농지원부가 통합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농업경영체(농가) 인증기준을 단일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지정보에 대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임.
  - 이 두 가지 사항 모두 각 전산시스템에 들어있는 경영체별 농지정보가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이전되고 통합되어야 실시할 수 있는 사항임.
  - 이것은 현재 두 시스템 중 어느 한 쪽에만 정보가 등록된 개별 농업경영체가 존재하므로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폐지대상이 되는 시스템도 유지시켜 기능적 활용에 어려움이 없게 해야 하기 때문임.
- 농지원부와 통합은 전산시스템 간의 통합이므로 무엇보다 통합으로 인한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에 따라 농지원부와 등록제의 통합절차는 다음과 같은 연차적 로드맵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
  - ① 2014년 시범사업 형태로 양 시스템에 모두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농지원부 상의 6만 개소 경영체 정보<sup>55</sup>를 등록제로 이관하여 통합함.
    - 같은 항목의 등록정보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유효한 정보를 확정토록 함.
    - 농지원부와 통합된 등록제의 등록정보에는 농지원부의 최초 등록일자를 입력하여 영농이력을 활용하는 자료 제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

<sup>55</sup> 농식품부는 2013년 공통으로 등록된 6만 개소 경영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했음.

- ② 2015년에는 양 시스템에 모두 등록한 농업경영체 전부 (약 211만7천 개소 = 271만7천 - 6만)를 등록제로 이관하여 통합함.
  - ③ 2015~2016년 기간에는 등록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약 140만5천 개소의 농지원부상의 경영체에 대한 전산시스템 연계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보의 정확성 및 사실 관계를 확정함.<sup>56</sup>
  - ④ 2017년에는 농지원부와 관련된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지원부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인 농촌행정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개편을 추진함.
  - ⑤ 2018년 농지원부의 등록정보를 완전히 이관하고 농지원부를 폐지함.
- 이러한 절차를 통해 농지원부와 등록제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종국적으로 등록제가 농업경영체 인증의 대표적 수단 및 농지정보시스템이 되게 함.

---

<sup>56</sup> 불일치한 농지원부 등록정보 중에는 농업경영체의 자격상 기준에 미달하는 데이터가 있고 전산시스템상 자동생성된 데이터도 있는데, 이들은 현장조사를 통하지 않아도 전산시스템 검정만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임.



## 제 5 장

### 농업경영체등록제 활용방안

#### 1. 등록정보의 통계 및 정책자료적 활용방안

-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의 통합관리시스템에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 등록정보를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 이들 정보를 통계적으로 활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임.
  - 등록정보는 거의 모든 농업경영체에 대한 경영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공하면 통계자료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변경사항을 수시로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자료를 통계화하여 제공할 수 있음.
- 등록정보가 연도별로 누적되었을 경우 시계열자료 뿐만 아니라 패널자료로도 활용 가능하여 다양한 용도의 정책자료 및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제공하는 자료의 공간적 범위가 마을 및 읍면 단위에서 전국 단위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시·군 또는 시·도 단위의 자료뿐만 아니라 주산지인 읍·면 단위까지 다양한 자료제공이 가능함.<sup>57</sup>

## 1.1. 통계적 활용 절차

### 1.1.1. 등록DB 분석

- 통계 및 정책자료적 활용이 가능한 등록정보에 대한 검토는 통합DB 항목 중에서 타 기관 보유 DB와 연계되는 정보를 제외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함.

#### 가. 활용가능 분야 및 범위 설정

- 먼저 등록DB로 구축되는 전체 항목에 대해 통계 및 정책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구분함.
  -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인 인식이 가능한 항목(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은 제외함.
- 통계적 활용이 가능한 항목 또는 항목들의 조합에 대해서는 ① 신규 통계로 활용하는 방안 ② 기존 통계를 대체하는 방안 ③ 기존 통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함.<sup>57</sup>
- 통계적 활용의 연장선에서 정책자료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함. 다시 말해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데이터를 더 가공하거나 통계자료로는 한계가 있지만 영농실태 파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공하여 정책수립이나 정책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산출 가능성을 검토함.
  - 등록정보를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의 본부 및 산하 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자료의 중요성

<sup>57</sup> 기존의 농업관련 통계자료는 대부분 표본조사 등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어 주로 시·도 단위로 제공되기 때문에 정책이나 연구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는데 제한적이었음.

<sup>58</sup> 이외에도 등록정보는 지역농정 수립을 위한 기초통계 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과 필요성, 자료 산출의 용이도와 자료 활용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함.

## 나. 등록DB의 항목 분석

표 5-1. 통계적 활용 가능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구 분	항목수	주요 등록 정보
일반사항	13	- 경영주 등의 성(性), 연령, 거주지 - 경영주 농업인의 영농이력, 농업종사연수 - 경영주 외의 경영주와의 관계, 농업취업 동기 등
농작물 생산	15	- 농지별 지목(공부, 실제), 경영형태 (자경, 공유, 임차) - 지목별 재배품목 - 지목별 품목별 재배면적 (노지) - 지목별 품목별 시설유형별(유리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비닐온실, 육묘장) 재배면적 - 휴경 및 폐경 면적 등
직불금 신청	18	- 쌀소득보전직불, 발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의 수령 횟수, 전년도 지급면적, 금년도 신청면적 등
가축 사육시설 및 규모	8	- 가축사육시설 면적 (공부, 실제), 시설용도, 사육 축종 - 축종별 사육규모, 전년도 출하량 등
유통 및 가공	11	- 품목별 판매금액, 판매처 비율 등 - 가공품목별 연간 판매금액 등
추정소득, 자산, 부채	23	- 농업조수입, 농업소득, 겸업소득, 급여소득 등 - 고정자산, 금융자산, 재고자산 등 - 농업용 부채, 가계용 부채 등
합계	88	

○ 개정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서 (농업인용)」를 통해서 생산되는 등록정보는 모두 96개 항목이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15개 항목 중 통계 및 정책자료적 활용이 불가능한 8개 항목을 제외한 88개 항목이 자료로 활용 가능함<표 5-1>.

- 경영주 및 세대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지 등 개인정보



가 포함된 15개 항목 중에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료를 전환하면 활용이 가능한 항목은 7개가 됨<표 5-2>.

표 5-2. 개인정보 포함된 농업경영체 등록 항목

구분	개인 정보가 포함된 등록정보 항목	대체 방안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주 등의 성명 (4개)</li> <li>- 경영주 등의 주민등록번호 (4개)</li> <li>- 경영주의 전화번호 등 (3개)</li> <li>- 경영주의 거주지 주소 (1개)</li> <li>- 직불금 수령 계좌번호 (1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적 활용 불가능</li> <li>- 성별, 연령별 자료 활용</li> <li>- 통계적 활용 불가능</li> <li>- 읍면동 단위로 자료 활용</li> <li>- 통계적 활용 불가능</li> </ul>
농작물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목별 소재지 주소 (1개 항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 단위로 자료 활용</li> </ul>
가축 사육시설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사육시설 소재지 (1개 항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 단위로 자료 활용</li> </ul>
합계	15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용불가능 (8개)</li> <li>전환 후 활용가능 (7개)</li> </ul>

### 1.1.2. 기존 통계자료와의 유사성 및 차별성 검토

- 통계청과 농식품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자료 중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유사한 분야의 통계 현황은 <표 5-3>과 같음.
  - 여기에 제시된 통계청 및 농식품부 통계자료의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주기, 조사항목 등을 검토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의 대체 및 연계 가능성을 파악함.
- 대체 및 연계 가능성 검토에서 기본원칙은 기존 통계에 대한 대체는 농식품부가 산출하는 행정통계에 한정하고, 통계청의 승인통계에 대해서는 등록정보와 연계하여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 머물게 하는 것임.
  - 등록정보를 신규 통계로 활용하는 것도 통계청의 통계가 아니라 농식품부의 행정통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도록 함.

표 5-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유사한 통계자료 현황

통계자료 명	작성기관	작성주기	조사 목적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5년	- 5년마다 전국 농림어가의 규모, 분포, 경영형태 등을 조사
농가경제조사	통계청	1년	-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실태를 파악 - 농가소비지출, 노동투하량 등 각종 농가경제지표를 생산
농림어업조사	통계청	1년	- 농림어가 인구, 경영규모, 경영형태 등의 변화 추이 파악
농어업법인조사	통계청	1년	- 농업법인의 생산구조, 운영형태 및 경영수지 등에 관한 실태와 변화 추이 파악
농작물생산조사	통계청	1년	- 식량생산계획, 토지이용의 개선, 농업경영 개선,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대책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축동향조사	통계청	분기	- 가축의 사육규모별 가구수, 성 및 연령별 마릿수 파악
농업면적조사	통계청	1년	- 토지 자원의 확보와 이용, 농산물 수급안정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과실류가공현황	농식품부	1년	- 전국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유자, 매실, 복분자, 머루, 감, 오디, 기타 과실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연도별, 품목별, 가공제품별 가공현황 조사
시설채소온실 현황 및 생산실적	농식품부	1년	- 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등 채소작물 재배면적, 생산량 조사 -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
농림업생산지수	농식품부	1년	-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농림업 생산량을 지수화, 연도별 생산동향 비교분석 등을 통해 생산구조 변화 추이를 파악
화훼류재배현황	농식품부	1년	- 화훼재배농가의 형태별, 규모별, 품목별로 재배면적, 생산량 등 조사
농산물소득조사	농촌진흥청	1년	- 지역별, 작목별 소득을 매년 조사 - 농장경영진단 및 설계 등 경영개선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1.1.3. 검토 결과

표 5-4. 농업경영체 등록DB의 통계적 활용 검토

구분	자료명	주요 항목	활용 방안
신규 통계 및 정책자료	농업경영체 경영현 황	· 농업경영주 특성 · 재배품목 및 면적 · 농산물판매액 · 소득 및 자산	새로운 통계 및 정책자료 생산
	농축산물 생산현황	· 품목별 재배면적 · 품목별 생산량	
	농축산물 판매현황	· 품목별 판매금액 · 품목별 판매처	
	가축 사육현황	· 가축사육 시설면적 · 사육 축종 · 사육규모 및 출하량	
	직불금 운영현황 (정책자료)	· 직불금 신청면적 · 직불금 지급면적 · 직불금 수령회수	
기존 통계 대체 및 연계	화훼류 재배현황	· 화훼류 재배면적 · 화훼류 판매량 및 판매액 · 시설유형	기존 통계를 등록정보로 대체
	시설채소온실현황 및 생산실적	· 채소류 재배면적 · 단수 및 생산량	기존 통계를 등록정보로 일부 대체(재배면적)
	농림어업총조사	· 농가 가구원현황 · 농업경영 현황 · 농업생산 현황	등록정보와 연계 하여 조사 실시

- 등록DB의 항목을 분석한 결과 <표 5-4>와 같이 농업경영체 경영현황, 농축산물 생산현황, 가축사육현황, 농축산물 판매현황, 직불금 운영현황 등을 신규 통계나 정책자료로 산출할 수 있음.
- 또한 기존 통계자료 중에서 행정자료를 통해 농식품부에서 기초자료를 집계하여 제공하고 있는 ‘화훼류재배현황’ 통계를 등록정보로 대체할 수 있으며,

- ‘시설채소온실현황 및 생산실적’ 통계를 등록정보로 일부 대체할 수 있음.
- ‘농림어업총조사’의 경우 등록정보와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임.

○ 통계자료는 등록DB 상태에서 원자료(raw data)를 바로 내려 받을 수 있게 하거나 통계자료집(정책자료집) 발간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함.

## 1.2. 통계적 활용 내용

### 1.2.1. 신규 통계(정책자료)

#### 가. 농업경영체 경영현황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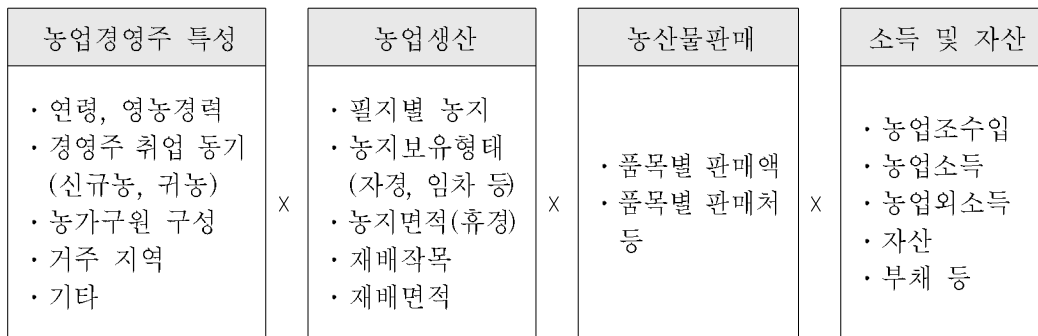
##### (1) 특성

- 현재 농업경영체 경영 구조 등을 분석하기 위해 ‘농림어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산물소득조사’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통계자료는 5년에 한번 실시되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라는 각각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농림어업총조사’에서는 농가의 판매소득을 금액단위가 아닌 소득구간에 대한 자료로 제공하고 있음. 이에 따라 통계분석에 많은 제약이 따름.
  - ‘농가경제조사’에서는 2,800개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포함하고 있음.<sup>59</sup>

<sup>59</sup>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제외하면 전국 농가(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되는 소득, 자산, 부채 등의 자료는 없음.

**(2) 농업경영체 경영 관련 등록DB 항목**

- 농업경영체 등록DB에서는 경영체의 경영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 농업경영주의 연령, 영농경력, 농가구원 구성 등 농업경영주의 특성과 관련된 항목
  - 농지보유형태, 농지면적, 재배작목 등 농업생산과 관련된 항목
  - 농산물 판매, 농가소득 등 농가의 경영성과와 관련된 항목



**(3) 「농업경영체 경영현황 통계」 내용 (예시)**

- 농업경영체 특성
  - 전체 경영체 수 (연도별<sup>60</sup>/연령별/영농경력별/지역별)
  - 귀농 가구수 (연도별/지역별)
  - 농업노동인력 수(농업경영주+농업참여 가구원수) (연도별/지역별)
- 경영투입 현황
  - 경작면적 및 휴경면적 (지역별)

<sup>60</sup> 연도별 단위의 제공범위는 향후 등록정보가 연차별로 누적되었을 경우임.

- 자경면적 및 임차면적 (지역별)
  - 경지규모 (연령별/농업노동인력수별/대분류 작목별)
- 경영성과 현황
- 농산물 판매금액 (연령별/영농경력별/경지규모별)
  - 농업소득 (연령별/영농경력별/경지규모별/농업노동인력 수별)
  - 농외소득 (연령별/영농경력별/경지규모별/농업노동인력 수별)
  - 자산 및 부채 (연령별/영농경력별/경지규모별/농업노동인력 수별)

#### (4) 정책적 활용 (예시)

- 경영체 가구원 구성, 작목, 농지 보유형태, 재배면적, 농산물 판매액, 농가소득 구성 등에서 농업경영체의 경영구조 분석이 가능함.
- 지역별 경영체 경영구조 분석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
  - 연도별 경영체 경영구조 변화분석 (시계열자료 분석)
  - 농업경영체 유형별 경영구조 변화 분석 (패널자료 분석)
  - 지번, 지목별 농지이용 실태(공부상 농지면적/실제 농지면적, 자경/임차면적, 휴경/폐경 면적 등)

### 나. 농축산물 생산현황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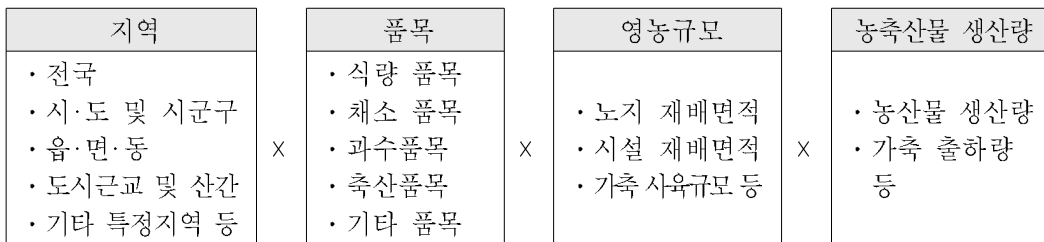
#### (1) 특성

-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통해 식량품목, 채소품목, 과수품목, 축산품목 등 다양한 품목의 전수 조사된 재배현황 자료를 매년 제공할 수 있음.
- 각 품목별 생산현황을 통계자료화 할 수 있음(예: 식량작물 생산 통계, 과수생산 통계 등)
- 읍·면 단위로 각 품목별 단수과약을 통해 품목별 생산량 추정이 가능함.

- 기존의 표본조사에 의한 품목별 재배면적과 단수를 통해 추정된 생산량 보다는 정확한 생산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2) 농축산물 생산 관련 항목**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농축산물의 세부 품목별 생산 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읍·면·동 및 마을 단위 뿐만 아니라 도시근교 지역과 산간지역 등 다양한 공간단위별 정보
  -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의 사육규모 관련 정보 등



**(3) 「농축산물 생산현황 통계 (식량작물)」 내용 (예시)**

- 재배농가 수
  - 세부품목별 재배경영체 수 (연도별/지역별)
- 재배면적
  - 세부품목별 재배면적 (연도별/지역별)
- 생산량
  - 세부품목별 단수 (연도별/지역별)<sup>61</sup>

<sup>61</sup> 농진청 등의 단수 추정자료와 연계하도록 함.

- 세부품목별 생산량 (연도별/지역별)

#### (4) 정책적 활용 (예시)

- 품목별 주산지 변화 분석
  - 지역별 품목별 재배면적 (품목별 주산지 파악)
  - 연도별 품목별 주산지 변화 분석
- 품목별 생산량 추정
  - 품목별 단수 추정자료를 활용하여 품목별 생산량 추정
  - 지역별 품목별 생산량
  - 연도별 지역별 품목별 생산량 변화 추이
- 지역별 특화작목 분석
  - 품목별 지역특화계수 분석
  - 지역통계 자료로 활용 가능
  - 지역특화산업육성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 가능
- 농업관측에 활용
  - 품목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전망을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

#### 다. 가축사육 현황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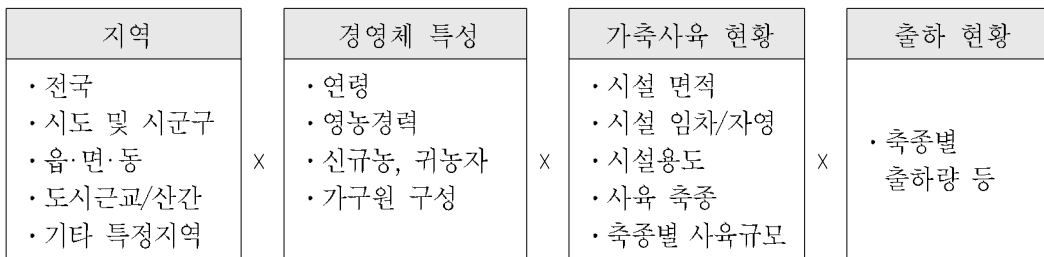
##### (1) 특성

- ‘농림어업총조사’에서는 가축의 사육두수에 관한 사항을 전수 조사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체 등록DB는 가축사육과 관련된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2) 가축시설 및 가축사육 현황 관련 항목**

○ 농업경영체 등록DB에서는 가축사육과 관련한 시설 (시설용도, 시설면적, 보유 형태 등)과 축종별 출하량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3) 「가축사육 현황 통계」 내용 (예시)**

○ 가축사육 경영체 수

- 축종별 사육 경영체 수 (연도별/지역별/농가유형별)
- 축종별 사육규모별 경영체 수 (연도별/지역별/농가유형별)

○ 가축사육시설 현황

- 가축사육시설 면적 (연도별/지역별)
- 가축사육시설 면적(시설 보유형태별/시설용도별)

○ 가축사육 현황

- 축종별 사육 마릿수 (연도별/지역별)

○ 가축출하 현황

- 축종별 출하 마릿수 (연도별/지역별)

## 라. 농축산물 판매현황 통계

### (1) 특성

- ‘농림어업총조사’에서는 판매액을 구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어 경영체의 실제 판매액과 출하처 등 농산물유통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농업경영체 등록DB는 경영체의 매출액과 판로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음.

### (2) 농축산물 판매현황 관련 항목

- 등록DB는 품목별(식량작물, 채소, 과수, 축산) 판매액과 판매처, 그리고 가공품의 판매액 등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농가경영 특성	지역	품목	농축산물 판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li> <li>· 영농경력</li> <li>· 취업동기 (신규농, 귀농)</li> <li>· 영농규모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li> <li>· 시도 및 시군구</li> <li>· 읍면동</li> <li>· 도시근교 및 산간</li> <li>· 기타 특정지역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 품목</li> <li>· 채소 품목</li> <li>· 과수품목</li> <li>· 축산품목</li> <li>· 기타 농산물 품목</li> <li>· 가공품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금액</li> <li>· 판매처</li> </ul>

### (3) 「농축산물 판매현황 통계」 내용 (예시)

- 농축산물 판매액
  - 매출 규모별 농업경영체 수 (지역별/경영체 유형별)
  - 품목별 판매액 (평균금액/합산금액)
  - 판매처별 판매액 (평균금액/합산금액)
  - 농업소득 중 자가판매액 비중 (연도별/지역별/경영체 유형별)

- 농축산물 주요 판매처
  - 품목별 주요 판매처 (지역별)

#### (4) 정책적 활용 (예시)

- 농업경영체의 농축산물 판매 현황 분석
  - 경영 특성별 판매액 분석
  - 품목별, 지역별 판매액 변화 분석
  
- 농업경영체의 농축산물 출하 경로 분석
  - 경영 특성별 품목별 판매처 (경영체의 주요 판매처 분석)
  - 지역별 품목별 판매처 (도시근교 및 산간지역의 농축산물 판매처 비교 분석 등 가능)
  - 연도별 품목별 판매처 (농축산물 출하 경로 변화 분석)

#### 마. 직접지불제 정책자료집

##### (1) 특성

- 기존 통계자료에서 직불금과 관련한 개인별, 지역별, 품목별, 연도별 자료가 작성되어 제공되지 않아 정책자료나 연구자료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농업경영체 등록DB를 통해 직불금 관련 자료가 제공될 경우 정책적 활용뿐만 아니라 연구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임.

##### (2) 직불금 신청 및 지급현황 관련 항목

- 농업경영체 등록DB에서는 직불제별 직불금의 신청면적과 지급면적 등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지역	경영체 특성	직불제 종류	직불금 신청/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li> <li>· 시도/시·군·구</li> <li>· 읍·면·동</li> <li>· 도시근교/산간</li> <li>· 기타 특정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 영농경력</li> <li>· 신규농, 귀농자</li> <li>· 영농규모</li> <li>· 재배작목</li> <li>· 농산물 판매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소득보전직불제</li> <li>· 밭농업직불제</li> <li>· 조건불리지역 직불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불금 수령횟수</li> <li>· 직불금 신청면적</li> <li>· 직불금 지급면적 등</li> </ul>

### (3) 「직접지불제 정책자료집 (쌀소득보전직불제)」 내용 (예시)

#### ○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현황

- 쌀 고정직불금 신청 경영체 수 (연도별/지역별/농가유형별/판매규모별/신청면적별)
- 쌀 고정직불금 신청면적 (연도별/지역별)
- 쌀 변동직불금 신청 경영체 수 (연도별/지역별/농가유형별/판매규모별/신청면적별)
- 쌀 변동직불금 신청면적 (연도별/지역별)

#### ○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현황

- 쌀 고정직불금 수령 경영체 수 (연도별/지역별/농가유형별/판매규모별)
- 쌀 고정직불금 수령 면적 (연도별/지역별)
- 쌀 변동직불금 수령 경영체 수 (연도별/지역별/농가유형별/판매규모별)
- 쌀 변동직불금 수령 면적 (연도별/지역별)
- 쌀 고정/변동직불금 수령액 (연도별/지역별)

## 1.2.2. 기존 통계자료 대체 및 보완

### 가. '화훼류 재배현황' 통계 대체

#### (1) 현행 통계자료 개요

- '화훼류 재배현황'은 농식품부에서 행정조사를 통해 작성하는 보고통계임.
  - 전국의 화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판매량, 판매액, 시설유형 등을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음.
  - '화훼류 재배현황'에서 제공되는 통계자료는 등록정보에서 제공되는 항목과 유사한 항목이 많음.

표 5-5. 현행 화훼류 재배현황 통계 개요

승인통계명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주기	제공내용	비고
화훼류재배현황	· 전국 화훼재배 농가(상업목적으로 생산)	· 읍면별 행정조사를 통한 조사 · 매년 조사	· 품목별 재배면적, 판매량, 판매금액, 시설유형 등	· 시도별, 품목별 생산현황 제공

#### (2) 등록DB 활용 방안

- 등록DB에서 제공되는 품목별, 시설유형별 재배면적과 판매액 등의 항목을 활용함으로써 '화훼류 재배현황' 통계를 대체할 수 있음.
  - 행정자료 작성을 위한 읍·면 단위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통계자료 작성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등록DB가 '화훼류 재배현황' 통계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화훼류의 품목별 구분이 현재의 통계와 맞게 세분화되도록 코드화 해야 함.

- ‘화훼류 재배현황’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할 경우, 기존에 제공되던 시설재배 유형 (예: 토경재배, 양약재배 등)에 대한 정보는 누락될 수 있음. 그러나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및 유통개선대책 수립과 학술연구 및 농업정책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이라는 본래의 조사목적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임.

## 나. ‘시설채소온실현황 및 생산실적’ 통계 보완

### (1) 현행 통계자료 개요

- ‘시설채소온실 현황 및 생산실적’은 농식품부에서 행정조사를 통해 작성하는 보고통계임.
  - 조사대상 농가의 재배면적 및 단수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파악하여 전체 재배면적 및 단수를 추정함.
  - 시·도 단위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읍·면별로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움.

표 5-6. 현행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생산실적 통계 개요

승인통계명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주기	제공내용	비고
시설채소온실현황 및 생산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소류 품목별 읍면단위 3농가</li> <li>· 전국 시설재배 농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별 행정조사를 통한 전국의 재배면적 및 단수 추정</li> <li>· 매년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9종 채소류의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품목별 생산현황 제공</li> </ul>

### (2) 등록DB 활용방안

- <부록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등록정보에서는 품목별 재배면적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추정된 품목별 재배면적이 아닌 실제 재배면적에 근거한 것임.

- 여기에다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읍·면 단위의 품목별 단수를 적용하면, 읍·면 단위의 품목별 생산량을 파악할 수 있음.
- 이러한 등록정보를 활용하면 채소류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으며, 읍·면단위의 상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방식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시설채소온실 현황 및 생산 실적’ 통계를 보완할 수 있음.

#### 다. 등록DB와 연계한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 (1) 현행 통계자료 개요

- 매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유사한 항목이 많음.
  - 가구원에 관한 사항은 농업경영체 등록DB와 거의 유사함.

표 5-7. 농림어업총조사 통계 개요

승인통계명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주기	제공내용	비고
농림어업총조사	· 농업경영체 등록대상과 유사한 농가 (임가, 어가)	· 면접조사 · 매 5년 조사	· 가구원 항목(8개) · 농업경영항목(8개) · 농업생산항목(20개) 등	· 농업/임업/어업부문 및 지역조사로 구분하여 실시

- 농작물 생산관련 항목에서도 농림어업총조사는 논과 밭의 보유형태(자경, 임차) 뿐 아니라 품목별(노지, 시설) 재배면적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조사항목과 큰 차이가 없음.

## (2) 등록DB 활용방안

- 농림어업총조사 대상을 선정시 이미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등록된 농가를 구분함.
- 등록제에 등록된 농가의 가구원에 관한 사항이나 농작물생산에 관한 사항은 등록DB와 연계하여 사전에 미리 확보하고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이를 확인함.
  - 중복되는 항목에 대한 조사를 등록정보와 연계함으로써 총조사의 조사 시간과 조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sup>62</sup>
-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총조사를 등록제의 등록DB와 연계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들이 있음.
  - ① 개인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 이를 조사에 활용하는 문제
  - ②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표 작성이나 조사방법 등에 대한 재설계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 따라서 향후 농식품부는 통계청 등 관련 부처들과 농림어업총조사와 등록DB와의 연계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1.2.3. 통계적 활용을 위한 전제 요건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는 전수조사에 가까운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성만 보장된다면 표본조사 통계가 갖는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또한

<sup>62</sup>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여 공표하는 ‘농림어업조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등록정보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활용은 통계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반면에 등록제의 등록정보는 통계조사가 갖는 익명성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따라서 다양한 검증수단을 통해 등록정보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기존의 승인통계를 대체하거나 새로운 통계로 승인되는 등 통계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통계법」 제18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등록정보를 통계자료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등록정보의 코드화가 필요함.
- 읍·면·동 및 마을 단위까지 세분화된 지역별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지역별 통계자료의 분석이 가능해짐.
  - 또한 재배품목에 대해 중분류 및 소분류별로 코드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세부적인 품목별 재배면적 및 생산현황 등을 통계자료화 할 수 있어야 함.

## 2. 등록제에 의한 스마트 농정 지원방안

### 2.1. 지방농정 계획수립 지원방안

- 각 지자체는 지방농정 수립을 위해 해마다 ‘지역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음.
- 농축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읍·면 단위 위주로 제공되고 있으며, 마을단위의 자료는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음.
  - 지자체의 농정계획이나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농업의 현황에 관한 상세한 자료 확보가 어려워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음.

※거창군의 2012년 통계연보를 보면, 농가인구와 경지면적에 관한 통계자료는 연도별 자료만 제시되어 있으며,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 작목별 생산량과 생산면적은 읍·면 단위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마을단위의 상세자료는 없음

- 등록DB를 통해 각 지자체 마을단위의 농축산물 생산 및 농가경영 관련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음.
  - 각 지자체 지역통계연보 작성시 마을단위의 패널자료 뿐만 아니라 시계열자료까지 제공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보다 체계화되고 다양한 시각에서 업무계획이나 중장기 종합계획 등 지방농정 계획수립에 등록DB를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농교육 등에 지역농업의 보다 구체적인 현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계획 수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2. 농업인 행정서비스 지원

-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농림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를 이전보다 간소화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서류에 등록DB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이를 등록정보로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신청 농업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여기에 대해 농림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농림사업계획서 작성과정과 특정 농림사업(농지연금 사업)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등록DB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례로 제시하고자 함.

## 2.2.1. 농림사업계획서 작성 간소화

- 농식품부의 농림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농업인)는 사업신청서와 함께 농림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예: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
-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상 ‘농림사업계획서’ 양식의 “1. 현황”에서는 소유형태별 (소유/임차) 영농규모 및 작목별 재배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이 부분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동일한 사항이므로 등록DB와 연계할 수 있음.
- 농림사업계획서의 “1. 현황” 대신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서류작성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음.
  -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도 등록DB를 통해 신청농업인의 영농규모와 재배현황을 쉽게 검토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상의 농림사업계획서 양식을 변경하고, 사업계획 공고시 관련 내용을 지자체 및 농업인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음.

### □ 적용 예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사업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경영체 단위 지원면적은 3,000m<sup>2</sup> 내외, 사업비 기준단가는 20천원/m<sup>2</sup>임.
  - 보조 20%, 용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신청인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보급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함.

- 시·군 지자체는 농가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 농업인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시·군의 담당자는 등록DB를 통해 신청인의 경영규모와 고추를 포함한 품목의 재배현황을 검토하도록 함.
- 농림사업계획서 작성에 등록DB를 연계할 경우, 신청인의 서류준비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사업담당 공무원의 업무도 간소화 할 수 있음.

## 2.2.2. 농지연금 제도와 연계한 등록DB의 농업인 지원 사례

### 가. 농지연금 사업 개요

- 「농지연금」 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농촌노인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며,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과 연계하여 전업농 또는 신규 창업농에게 임대 또는 매도함으로써 영농규모화와 신규 농업인의 영농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농업인이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함
  - 영농경력 5년 이상
  - 신청자 명의의 총 소유농지 면적이 3만㎡ 이하
  - 담보를 제공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함. 또한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이 없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함.
-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연금신청서 이외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함.

-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한국농어촌공사)는 신청자의 연령, 영농경력, 소유 농지 면적 등을 검토하여 가입자격을 확인하고 있음.

#### 나. 등록DB 활용방안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상에서 기재되는 사항 중에서 농지와 관련된 사항과 영농경력에 관련된 사항은 등록DB를 통해 검토할 수 있음
  - 농지원부가 등록제로 통합되면 신청인이 농지원부를 제출하지 않고 업무담당자가 등록DB를 통해 농지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음.

표 5-8. 농림사업(농지연금)신청시 등록DB 활용방안

가입 요건	가입요건 검토
신청인의 연령	등록DB (인적 정보),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영농경력	등록DB (인적 정보)
신청인의 총 소유농지 면적	등록DB (경지정보, 필지별 면적으로 합산)
농지의 공부상 지목	등록DB (경지정보)
저당권 등 여부	토지대장 등과 연계하여 확인

- 신청농업인은 농지연금 지원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어 서류 간소화를 통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함.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는 관련 전산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확인 가능함.
- 사업부서는 신청농업인의 영농경력과 소유농지 현황 등을 검토시 등록DB를 활용함으로써 신청서류 검토기간(현행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단축을 통해 농업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2.3. 작물재배업의 사업자등록 지원

### 2.3.1. 작물재배업 사업자등록 추진 현황

- 현재 농업부문의 업종 중 작물재배업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면제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음.
  -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농가의 사업규모가 커지고 전자상거래로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함.
  - 이 경우 농가는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소매업 또는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됨.
  - 이렇게 되면 해당 농가는 도·소매업자 등으로 간주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농작물을 자가생산하여 판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 또한 도·소매업 등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에 있어 일반 사업자로 부과되고 농업인 지원 혜택에서 배제됨.
  
- 요컨대 작물재배경영체(농가)가 거래규모 확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용카드 결제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에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함.
  
- 하지만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작물재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반대함(한국세무학회 2006, 14).
  - 과세되지 않는 분야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에 해당함.
  - 허위계산서,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제재수단이 없음.
  - 작물재배농가임을 입증할 수단이 없어 위장등록 가능성이 있음.
  
- 여기에 대해 김수석 등(2011)은 과세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행정력 낭비라

는 주장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함(김수석 등 2011, 80).

- 농가가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농업)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 분야라 할 수 없음.
  -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농가는 전체 작물재배농가 중 일부에 해당하므로 행정력 소요가 많지 않을 것임.
- 그리고 허위계산서 및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세무학회(2006)가 농가의 허위계산서 및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봄(한국세무학회 2006, 68).
- 이제 작물재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반대하는 세제당국의 입장에 반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신청자가 작물재배업 종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임.

### 2.3.2. 사업자등록 지원방안

- 농업경영체등록은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작물재배경영체가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경우 이를 사업자등록을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등록제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유형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한데, 이는 앞서 농업경영체 인증 기준 정립에서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농업경영체 구분을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음. 즉, 경종농업경영체 혹은 시설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작물재배업 종사자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임.<sup>63</sup>

<sup>63</sup> 경종농업경영체나 시설농업경영체 중 한 유형이 포함된 복합경영체도 작물재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함.

## 제 6 장

---

###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1. 요약

##### 1.1. 등록제의 운영실태

- 농업경영체등록제는 2008년에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 등록제의 당초 도입 취지는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무엇보다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가 정책사업과 직접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음.
  - 2013년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제는 41개 농림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나, 그 활용방식이 경영체의 등록 여부 확인이나 경영체등록자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수준의 형식적 연계에 머무르고 있음.
- 등록제의 세부정보가 아직 정책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별 경영체를 지원하는 농림사업에서 뿐 아니라 맞춤형 농정 추진을 지원하는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 즉,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활용한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책수요자인 농업인 수요에 부합



하는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록제 활용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등록제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 조사에서는 ‘등록제가 무슨 제도인지’, ‘어떤 방법으로 등록하는지’, ‘정책적 수혜를 받기 위해 경영체등록이 필요하다’는 것’과 ‘등록한 정보가 바뀌면 신고해 변경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70~80% 수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이 설문결과를 2011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등록제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특히 정책적 수혜를 받기 위해 등록해야 한다는 사항은 20% 이상 인지도가 상승함.
-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등록하였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77.7%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1년도 설문조사의 등록률 67.9%보다 약 10%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됨. 미등록 응답자 중 57.3%는 곧 등록할 예정이라 응답하였고, 38.5%는 앞으로도 등록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함.
-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2012년 말 현재 약 149만 농업경영체가 등록하여 총 농가수(2011말 현재 116만호)보다 30만개 이상 많지만, 전체 농가 중 약 10% 정도는 아직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음.
-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등록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는 정책사업에 사업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6.2%가 사업신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지금까지 추진된 농업경영체등록제의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51.8%가 ‘아직까지 등록제의 효과가 약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사업과 연계

되면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응답함. 반면에 응답자의 27.1%는 '등록만 했지 실제 활용도는 거의 없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15.4%는 '농업경영체 인증기준으로 등록제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냄.

- 농업경영체등록제의 등록정보로 가장 손쉽게 연계될 수 있는 정책사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3.3%가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토지정보 관련 직불사업'을, 응답자의 42.4%가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사업'이라 답변함.
-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향후 기대수준을 보면 응답자의 42.8%가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35.7%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음.
- 이 내용을 2011년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등록제에 대한 기대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예컨대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이 2011년의 39.2%에서 2013년 42.8%로 증가하고, '등록제의 역할이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2011년의 14.2%에서 2013년에 7.6%로 감소함.

## 1.2. 외국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 1.2.1. 독일

- 독일에서 농업경영체는 개념은 농업경영체를 다른 산업경영체와 조세행정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개념과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개념으로 구분됨.

-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는 이를 인정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반면에,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는 등록 여부를 개별 경영체가 결정할 수 있는 임의등록에 속함. 하지만 임의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 등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상적인 농업경영체들은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에도 등록하고 있음.
-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① 농업경영체를 창업하는 경영주는 먼저 농업직능조합(LBG)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함.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농업노령보험과 농업의료보험 및 농업요양보험으로 구성된 나머지 농업관련 사회보험은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최소영농규모 충족) 농업직능조합을 통해 자동적으로 가입됨.
  - ② 농업경영주는 세무서에 사업자신고를 함. 사업자 신고로 농지를 포함한 농장의 가치가 평가되고 과세대상으로 등록됨.
  - ③ 축산업을 전업 내지 겸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을 함. 축산업등록을 통해 수의검역보험은 자동적으로 가입됨
  - ④ 사료를 자가용 혹은 판매용으로 생산하거나 가공·유통하는 사업체는 이를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에 신고·등록함.
- 여기서 등록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하는 것은 농업관련 사회보험을 가입할 때 요구되는 최소영농규모임. 최소영농규모의 기준은 주별로 정하는데, 니테르 작센 주에서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최소영농규모는 ① 8ha 규모의 (경종)농업, ② 2.2ha의 원예 및 특작, ③ 75ha의 임업으로 되어 있음.
- 조세법상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등록에 요구되는 최소영농규모 조건을 구비한 농업경영체는 농업용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세계 감면 혜택의 대상이 됨.

- 농업경영체가 보조금 등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이외에 추가로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EU 단일직불제의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농지의 이용정보 등을 등록하는 통합관리통제시스템(InVeKoS) 등록임.
- 독일에서 InVeKoS 등록을 관리하는 기구는 ‘기본데이터 등록기관’인데, 등록절차는 농업경영체들이 지역(시·군)별로 산재해 있는 농업청이나 농업회의소 지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면 이것이 ‘기본데이터 등록기관’에 등록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는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형태임.
- 등록정보는 인적 사항 정보와 ‘경지식별번호(FLIK)’로 표시되는 경지정보임. 축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에 속하는 축산업등록을 통해 확보된 정보를 활용함.
- 요컨대 독일의 InVeKoS 등록제는 EU 규정에 의한 경영체의 인력 및 경지정보 등록과 독일 고유의 축산업등록제에 의한 축산정보 등록을 종합하여 구성함.
- InVeKoS를 활용해 단일직불금을 집행하는 체계는 개별 농업경영체가 지역에 있는 농업청(농업회의소)에 EU의 직불금을 신청하고, 이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 ‘기본데이터 등록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 농업청(농업회의소)이 직불금 지급을 집행하는 것임.

## 1.2.2.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도 독일처럼 EU의 단일직불금 집행을 위한 InVeKoS와 별도로 전통적인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갖고 있음.

- 이러한 농업경영체등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절차로 이루어짐.
  - ① 먼저 창업농은 농업회의소 지소를 통해 통계청에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번호를 교부받음.
  - ② 창업후 1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창업을 신고해야 함. 세무서는 신고한 경영체의 통합가치를 평가하여 통지하고, 추후 과세대상이 될 때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과세요율 등을 부과함.
  - ③ 또한 창업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련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함.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및 노령보험임.
  
- 오스트리아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일종의 최소영농규모 기능을 하는 경영체의 자산규모(통합가치 크기)가 가입의 전제조건이 됨. 산재보험은 통합가치 150 유로 이상의 농업경영체를 경영하는 소유자 혹은 혹은 경작자(임차인)가 가입의 전제조건이 되고, 의료보험과 노령보험은 통합가치 1,500 유로 이상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가 가입조건이 됨.
  
- 등록된 농업경영체가 갖는 혜택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농업용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세제 감면 대상이 된다는 점임.
  
- 오스트리아도 EU의 단일직불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통제시스템(InVeKoS)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InVeKoS 운영과 단일직불금의 관리 및 집행에 위한 전담기구로 오스트리아 농업마켓(AMA)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그런데 InVeKoS에 필요한 등록정보 수집 및 확보과정을 보면, 토지식별번호에 대한 등록정보는 토지등기소와 토지측량청을 통해 수집되어 데이터은행 역할을 하는 농림수자원산정센터(LFRZ)로 집결되어 AMA로 전달됨. 그리고 축산정보는 직불금을 신청서에 이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AMA로 전달되게 함.

- 단일직불금의 관리·집행과정은 농업경영체가 농업회의소에 직불금을 신청하면 이를 AMA에 전달하고, AMA가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직불금을 직접 지급함.

### 1.2.3. 비교분석

-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중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은 EU의 공동농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것이지만,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은 독일의 고유의 등록제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 이런 점에서 오스트리아의 일반적 농업경영체등록도 독일의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과 마찬가지로 등록제도의 근간이 되는 고유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
- 독일의 조세법상 농업경영체등록제의 핵심은 ① 하나의 사업체로서 농업경영체 개념, ② 최소영농규모 설정, ③ 농업관련 사회보험 가입, ④ 조세관련 사업자등록에 있음.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등록제도의 핵심내용은 독일과 비슷함. 다만 농업경영체의 인증기준에 해당하는 최소영농규모 설정이 독일만큼 강한 의무규정적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할 수 있음.
- 최소영농규모 설정과 관련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제도상 차이점을 보면, 독일은 최소영농규모 지표로 경종농업인 경우 8ha 등과 같은 영농투입규모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통합가치 1,500 유로 등과 같은 경영체의 자산가치를 사용함. 독일의 경우 최소영농규모가 사실상의 농업경영체로 인정되는 최소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반해, 오스트리아는 이러한 최소영농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농업경영체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 최소영농규모 지표와 관련해서는 독일의 제도가 지표로서 보다 나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됨. 이는 독일의 지표가 영농규모의 크기를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실효성 있는 농업경영체 인증기준으로 기능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임.

-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대한 혜택은 크게 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음. 즉, 농업용 건축을 할 수 있는 혜택과 세제지원 혜택이 있음. 그렇지만 농업경영체에게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독일은 오스트리아에 비해 보다 분명한 원칙과 방향하에 추진하고 있음.
- InVeKoS의 관리 및 운영체계를 보면, 독일은 등록정보의 관리기구와 단일 직불제의 집행·관리기구가 분리되어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등록정보의 관리와 단일직불제 등 정책사업의 집행·관리를 최종단계에서 통합·운영하고 있음. 독일에서는 등록정보의 관리는 기본데이터등록기관이 담당하고 단일직불금의 신청처리·관리·집행을 농업회의소 혹은 농업청이 담당함. 오스트리아에서는 등록정보의 최종관리와 단일직불제의 집행·관리를 AMA가 총괄적으로 담당함. 다만 직불금 등 정책사업의 신청처리업무는 농업회의소가 대행하고, 등록정보 중 경지관련 정보는 토지등기소 등을 통해 전달받음.
- 이러한 운영체계상의 차이는 농업경영체등록제(InVeKoS)의 순수한 관리와 등록제의 정책적 활용을 통합해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분리해서 운영하느냐 하는 것임. 독일은 분리해서 운영하고 오스트리아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통합해서 운영함. 반면에 영국은 직불사업 관리기구인 농촌지불청(RPA)이 등록제와 직불사업 집행·관리를 완전히 통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1.3. 등록제도 개선방안

-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업경영체등록제의 필요성에 비해 정책적 활용도가 높지 않았던 문제점을 시정하고 등록제를 스마트 농정 추진의 기본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간 진행되었던 등록제의 추진과정을 평가하여 발전방향을 재정립하고 이러한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함.

- 등록제의 발전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사항을 들 수 있음.
  - 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의 통합DB로 활용하는 농림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② 등록제의 등록정보와 농림사업과의 연계는 정보 획득의 용이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근거로 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③ 맞춤형 농정을 실시하기 위한 기반 구축 수단으로 등록제를 활용함.
  - ④ 등록제의 등록절차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자격 및 인증기준이 정립되도록 함.
  - ⑤ 등록정보의 통계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함.
  - ⑥ 농업인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고객서비스(PCRM) 시행 수단으로 등록제를 활용함.
  
- 등록제의 이러한 발전방향에 입각하여 먼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①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 ② 맞춤형 농정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체 유형화 방안 마련
  - ③ 농업경영체 개념 정립 및 등록기준 마련

### 1.3.1.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농업경영체등록제를 농림사업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성공적 시스템 구축의 관건임.



- 첫 번째 쟁점은 통합DB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책사업이 연계될 경우 제1단계에 필요한 등록제 DB만 일차적으로 만들고 연계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DB 항목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택할 지를 결정하는 것임.
  - 두 번째 쟁점은 소득관련 국세청 과세정보 등 타 부처 내지 타 기관 보유 정보를 이용하여 통합DB를 구축할 때 개인정보보호 차원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이들 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파악하여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임.
  - 세 번째는 통합DB와 연계되는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잘 선정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착오 없이 안착하고 점진적으로 대상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등록제를 개별 경영체 지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은 등록제의 발전방향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방향성이 올바르다 할 수 있음. 하지만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DB를 일괄적으로 만들어 전체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에는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 통합관리시스템에 필요한 통합DB 구축방식에는 이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구축하는 것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이 있고, 이들 방식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
- 통합DB를 일시에 일괄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의 장점은 한차례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통합관리시스템에 필요한 DB 구축을 완결할 수 있다는 점과 통합DB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임. 일괄구축 방식의 단점은 일시에 너무 많은 내용을 조사하고 등록하게 함으로써 등록의 효율과 등록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임. 또한 등록제의 효과를 체감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괄등록에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반면에 단계적 통합DB 구축방식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최소한의 추가적인 조사·등록만 수행하여 제1단계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적은 노력으로 손쉽게 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제1단계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등록제의 효과를 체감한 후에 이루어지는 그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DB 구축에서는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높을 수 있음. 이 방식의 단점은 완결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점과 제1단계에 연계되는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 위주의 부분적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 현재 농식품부는 일괄적 통합DB 구축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 방식의 단점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추진과정상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반드시 관철하는 형태로 추진하지 않고 추진과정상 난관에 부딪힐 경우 단계적 DB 구축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유연한 추진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음.
- 두 번째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타 부처 또는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통합DB의 항목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용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사례로 하여 살펴본 법률적 검토결과는 농식품부가 과세정보를 정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①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② 정보주체, 즉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반대급부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등 반대급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임.
- 활용절차는 먼저 개별 입법을 통하여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당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게 하면 됨. 다음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하여 과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
- 현재 농식품부가 새롭게 추진코자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서의 기재자료와 함께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절차를 규정해 두고 있음. 따라서 등록하는 농업경영체(경영주)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등록하는 농업경영체에게 정책적 지원을 통한 가시적인 반대급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등록정보에 비해 반대급부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의 동의절차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세 번째 검토사항은 등록DB와 연계하는 농림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것인데, 현재 농식품부는 통합DB를 일괄적으로 구축한다는 전제하에 102개 대상사업에 대해 통합DB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음.
- 여기에 제시된 우선순위를 보면, 통합DB와 연계성이 높다고 분류된 직불형 사업과 단순자격 확인형 사업을 통합관리 최우선순위로 설정하고, 통합DB와의 연계성이 중간으로 분류된 68개의 사업에 대해서 차순위를 설정한 것은 적절하다 할 수 있음.

- 그렇지만 통합DB 구축이 단계적 구축방식으로 진행된다면, 통합관리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에서 등록정보가 먼저 구축되는 경작활동 및 영농이력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연계하고 매출액 및 소득 정보와 관련된 사업을 뒤에 연계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이 된다 할 수 있음.
- 이러한 논리적 우선순위 설정과 별도로 2014년에 일차적으로 실시할 경지 관련 세 가지 직불사업(4개의 내역사업), 즉 밭농업직불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대한 통합관리방안을 검토하면, 과도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① 통합사업 신청은 기존과 같이 읍·면·동에서 담당함.
  - ② 사업신청기간은 세 가지 사업에 공통되는 5월 중순~6월 중순으로 하되, 밭농업직불제의 동계작물 대상자에 대해서는 3월에 통합신청서에 신청하고 5월 이후 다시 다른 직불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함.
  - ③ 통합신청서의 등록내용은 DB로 관리되어 관리기관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고, 개별 점검기관들이 점검내용을 부가·입력할 수 있도록 함.
  - ④ 시·군·구에서 배정된 자금을 집행할 때, 쌀소득등보전직불제의 변동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 직불금은 연말에 합산하여 지불하고, 변동직불금만 다음 해 3월에 지불토록 함.
- 중장기적으로 통합DB에 의한 개별 농업경영체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농림사업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등록제 관리기구와 농림사업 집행기구 간의 관계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농림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집행하기 위해 정비할 필요가 있는 농림사업추진체계는 현재 편의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농림사업의 사무분장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성격에 따라 중앙사무와 지방사무로 재정비하여 추진하는 것임.

- 다시 말해 농림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사업지원방식 위주로 되어 있는 추진체계를 사업의 성격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농정사무 구분 위주의 추진체계로 개편하는 것인데, 이는 보조사업과 융자사업별로 관리하던 농정추진체계를 중앙사무와 지방사무별로 관리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것임.
- 이럴 경우, 각종 직불사업은 중앙사무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직불사업의 집행주체도 중앙정부의 산하 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 등록제 관리기구와 농림사업 집행기구와의 관계 설정은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등록제 관리기구가 직불사업 등 정책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국가들이 있어 통합운영의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런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등록제 관리기구가 개별 경영체 지원 농림사업 중 가장 많은 농업경영체가 참여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 예컨대 쌀소득등보전직불제를 포함한 경지관련 직불사업 등은 직접 관리·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1.3.2. 등록정보를 활용한 농업경영체 유형화 방안

- 통계청은 농림어업조사에서 농업경영체(농가)를 전업농가/겸업농가 분류 및 영농형태별 분류를 사용하고, 농가경제조사에서는 전업농가/겸업농가 분류와 주업농가/부업농가/자급농가 분류, 그리고 영농형태별 분류라는 3가지 분류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농식품부도 통계상의 농업경영체(농가) 유형 구분에서는 통계청과 동일한

분류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정책적 육성대상으로서 전업농업인을 개념화하여 분류하고 있음.

- 통계청 및 농식품부의 농가 유형 분류에서 영농형태별 분류는 양적 구분인 전업농가/겸업농가 및 주업농가/부업농가/자급농가 분류와는 성격을 달리 하는 질적 구분으로서 이러한 분류 자체의 존재의의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이에 비해 전업농가/겸업농가 및 주업농가/부업농가/자급농가 분류는 분류기준에 차이가 있고 활용도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농규모 및 영농종사비중에 의한 양적 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두 가지 분류상의 차이가 애매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독일의 경우, 1995년까지 농업경영체 분류를 전업농/겸업농/부업농 분류를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 전업농과 겸업농을 통합한 주업농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주업농/부업농 분류로 바뀌게 됨. 여기서 주업농의 초기 개념은 농업경영체의 총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중 50% 이상 차지하는 경영체였음. 하지만 2003년 EU 차원의 주업농 분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주업농의 지표는 법인경영체를 제외한 개인경영체 및 인적 회사 중에서 유럽영농규모단위(ESU) 16 ESU 이상이고 연간노동력단위(AWU) 1 AWU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바뀌게 됨.
- 독일 및 EU의 농업경영체 분류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영농규모에 의한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이 한 가지 체계로 통일되어 있고, 주업농/부업농 분류기준도 이전에는 농업소득과 비농업소득의 구성비율이 주된 지표가 되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EU 차원의 지표 통일이 이루어져 표준소득으로 측정된 농업소득의 크기, 즉 농업생산에의 절대적 기여도가 주된 지표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임.

- 우리나라 농업경영체(농가) 유형 분류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점과 외국의 사례에서 얻는 시사점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이원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전업농/겸업농 분류와 주업농/부업농/자급농 분류를 통합해 단일화된 체계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단일화된 농가유형의 분류기준은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의 구성비보다는 농업소득의 절대적 크기를 주된 지표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이는 농정이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시그널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농업생산자가 농업생산활동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가 주업농의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임. 그리고 농업외소득의 크기를 파악하는데 따른 현실적 어려움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데이터의 부정확성도 지표 변경의 이유가 될 수 있음.
- 통계상의 농가유형 분류와 별도로, 실제 정책자료를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 많이 활용하는 것이 영농규모에 의한 농가유형 구분임. 그런데 이 영농규모에 의한 유형분류도 주된 근거 내지 지표가 되는 것이 경작지 면적이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농업조수입 등의 매출액 크기가 사용되고 있음. 하지만 농업조수입, 농축산물 판매소득 등의 산출성과를 나타내는 영농규모는 계측하는 방법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
- 경작지 규모에 따른 농가유형화가 농업경영체 유형의 실상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많기 때문에 영농규모에 의한 농업경영체 유형화를 보다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유형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영농규모에 의한 농업경영체 유형화를 보다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유형화 방식으로 환산영농규모 지표와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지표가 있음. 규모에 의한 농업경영체 유형화의 두 가지 방식 중 환산영농규모 지표는 영농투입규모에 의한 유형화이고,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지표는 영농산출규모에 의한 유형화 방식임. 이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은 각기 그 활용의 용도 및 적용방안

에 따른 장단점이 있음.

- 환산영농규모 방식은 영농개시 시점이나 영농활동 중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특히 이 지표가 토지면적으로 환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영농규모를 물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반면에 이 방식이 농업고정자산 평가에 어려움이 있고 품목별 차별성을 표준소득 방식보다 정교하게 구별해 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방식은 농업생산액 규모 크기로 경영체를 유형화할 수 있고 품목별 유형화도 가능한 장점이 있음. 나아가 전업농/겸업농, 주업농/부업농/자급농 분류 등 통계상의 농업경영체(농가) 유형 분류가 EU 국가들처럼 농업생산액이 주된 지표가 되는 형태로 바뀌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표준소득에 의한 농업경영체 유형화는 보다 중요해지는 장점이 있음. 반면에 단점으로는 영농규모의 유형화가 모두 화폐액 형태로만 나타나 실제 영농투입에 이용되는 투입요소적 차별성을 파악할 수 없는 점을 들 수 있음.
- 이처럼 농업경영체 유형화의 두 가지 방식은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택하고 다른 쪽을 폐기하기보다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그 활용도에 차이를 둘 수 있는데, 환산영농규모 방식은 후술하는 농업경영체 인증기준 정립의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리고 표준소득 방식은 맞춤형 농정을 위한 경영체 유형화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을 산출하기 위하여 경영체별 재배품목과 재배면적, 그리고 축종과 사육두수는 농업경영체등록제를 통해 파악함. 조사된 농업경영체의 영농실적에 품목별 단위 표준소득을 곱하여 개별 경영체의 품목별 표준소득과 총표준소득을 산출함.



- 농업경영체의 유형화는 ① 총표준소득의 크기에 따라 ② 개별 경영체의 품목별 표준소득이 총표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양적, 질적 유형화가 이루어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EU의 표준수입에 의한 유형화 방식을 응용할 필요가 있음.

### 1.3.3. 농업경영체 개념 및 등록기준 확립

-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체계 내에서 농업경영체 개념이 불완전하며,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인증기준도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음. 농업경영체 개념에는 무엇보다 사업체 개념이 내포되어야 하고, 이 사업체 개념의 핵심에는 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임. 따라서 농업인이 바로 사업체가 될 수 없고, 적어도 물적 조건을 구비한 농업경영주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하나의 사업체 내지 경영체라 할 수 있음.
- 이렇게 개념화된 사업체가 세계상의 혜택을 받거나 정책적 수혜대상이 되는 사업체(경영체)로 되기 위해서는 경영체 인증에 필요한 의무사항 내지 선결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함. 이런 점에서 앞서 분석한 외국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특히 독일의 조세법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안착을 위해 보다 시급한 것은 농업경영체의 인증기준을 확립하는 것임. 농업경영체의 인증기준 중 농업법인에 대한 것은 농업법인의 설립등기로 대체할 수 있다 판단되지만, 농업인과 관련되는 농업경영체 인증 기준은 요건을 보다 명확히 명문화하고 법제화하여 시행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그리고 농업인과 관련되는 경영체의 새로운 인증 기준은 농업경영체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함.
- 이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농업인 정의를 경영체 개념, 즉 ‘물적 요건을 구비한 경영주’ 개념과 연결시켜 현 단계에 바로 도입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 이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제시할 수 있음.

- ① 경종농업경영체: 1,000m<sup>2</sup> 이상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② 시설농업경영체: 농지에 330m<sup>2</sup> 이상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③ 축산경영체: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 새로운 농업경영체 기준은 분야별로 세분되어 정의되어 있고 판별기준이 명확할 뿐 아니라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물적 조건을 구비한 경영주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경영체 기준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농업인 정의를 리모델링하여 체계화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 상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처럼 ① 하나의 사업체로서 농업경영체 개념, ② 최소영농규모, ③ 사회보험 가입, ④ 조세관련 사업자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을 정비해 나가는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함. 특히 최소영농규모와 관련해서는 앞서 검토한 환산영농규모 지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농업경영체등록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농업경영체(농가) 인증은 주로 농지원부를 통해 이루어져 왔음. 그런데 현 시점에는 농업경영체 인증 수단이 농업경영체등록제와 농지원부로 중복되거나 양분되는 상황에 있음.
- 이에 따라 등록제와 농지원부와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제2장의 농업인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등록제와 농지원부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2013년 4월말 현재 농지원부와 등록제의 등록정보자료 비교에 따르면, 농지

원부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수는 271만7천개이고 이 중 등록제에도 등록한 경영체는 131만2천개소로 48.3%의 일치율을 보여주고 있음.

- 등록제와 농지원부가 통합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농업경영체(농가) 인증기준을 단일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지정보에 대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임. 이 두 가지 사항 모두 각 전산시스템에 들어 있는 경영체별 농지정보가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이전되고 통합되어야 실시할 수 있는 사항임.
- 농지원부와 통합은 전산시스템 간의 통합이므로 무엇보다 통합으로 인한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에 따라 농지원부와 등록제의 통합절차는 다음과 같은 연차적 로드맵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
  - ① 2014년 시범사업 형태로 양 시스템에 모두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농지원부 상의 6만 개소 경영체 정보를 등록제로 이관하여 통합함.
  - ② 2015년에는 양 시스템에 모두 등록한 농업경영체 전부 (약 211만7천 개소)를 등록제로 이관하여 통합함.
  - ③ 2015~2016년 기간에는 등록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약 140만5천 개소의 농지원부상의 경영체에 대한 전산시스템 연계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보의 정확성 및 사실 관계를 확정함.
  - ④ 2017년에는 농지원부와 관련된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지원부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인 농촌행정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개편을 추진함.
  - ⑤ 2018년 농지원부의 등록정보를 완전히 이관하고 농지원부를 폐지함.
- 이러한 절차를 통해 농지원부와 등록제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종국적으로 등록제가 농업경영체 인증의 대표적 수단 및 농지정보시스템이 되게 함.

## 1.4. 등록제 활용방안

### 1.4.1. 등록정보의 통계적 및 정책자료적 활용방안

-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의 통합관리시스템에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 등록정보를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 이들 정보를 통계적으로 활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임.
- 등록정보는 거의 모든 농업경영체에 대한 경영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공하면 통계자료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등록정보가 연도별로 누적되었을 경우 시계열자료 뿐만 아니라 패널자료로도 활용 가능하여 다양한 용도의 정책자료 및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제공하는 자료의 공간적 범위가 마을 및 읍면 단위에서 전국 단위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시·군 또는 시·도 단위의 자료뿐만 아니라 주산지인 읍·면 단위까지 다양한 자료제공이 가능함.
- 통계 및 정책자료적 활용이 가능한 등록정보에 대한 검토는 통합DB 항목 중에서 타 기관 보유 DB와 연계되는 정보를 제외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했음. 먼저 등록DB로 구축되는 전체 항목에 대해 통계 및 정책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구분함.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인 인식이 가능한 항목(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은 제외함.
- 통계적 활용이 가능한 항목 또는 항목들의 조합에 대해서는 ① 신규 통계로 활용하는 방안 ② 기존 통계를 대체하는 방안 ③ 기존 통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함. 그리고 통계적 활용의 연장선에서 정책자료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함. 다시 말해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데이터를 더 가공하거나 통계자료로는 한계가 있지만 영농실태 파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공하

여 정책수립이나 정책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산출 가능성을 검토함.

- 개정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서 (농업인용)」를 통해서 생산되는 등록정보는 모두 96개 항목이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15개 항목 중 통계 및 정책자료적 활용이 불가능한 8개 항목을 제외한 88개 항목이 자료로 활용 가능함.
- 통계청과 농식품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자료 중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유사한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의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주기, 조사항목 등을 검토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의 대체 및 연계 가능성을 파악함.
- 대체 및 연계 가능성 검토에서 기본원칙은 기존 통계에 대한 대체는 농식품부가 산출하는 행정통계에 한정하고, 통계청의 승인통계에 대해서는 등록정보와 연계하여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 머물도록 하는 것임. 등록정보를 신규 통계로 활용하는 것도 통계청의 통계가 아니라 농식품부의 행정통계에 해당 하는 것으로 한정하도록 함.
- 등록DB의 항목을 분석한 결과 농업경영체 경영현황, 농축산물 생산현황, 가축사육현황, 농축산물 판매현황, 직불금 운영현황 등을 신규 통계나 정책자료로 산출할 수 있음.
- 또한 기존 통계자료 중에서 행정자료를 통해 농식품부에서 기초자료를 집계하여 제공하고 있는 ‘화훼류재배현황’ 통계를 등록정보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온실현황 및 생산실적’ 통계를 등록정보로 일부 대체할 수 있음. 그리고 ‘농림어업총조사’의 경우 등록정보와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는 전수조사에 가까운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성만 보장된다면 표본조사 통계가 갖는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또

한 이에 대한 활용은 통계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반면에 등록제의 등록정보는 통계조사가 갖는 익명성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따라서 다양한 검증수단을 통해 등록정보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1.4.2. 등록제에 의한 농업인 서비스 지원방안

- 등록DB를 통해 개별 지자체의 마을단위 농축산물 생산 및 농가경영 관련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등록DB는 지자체가 지역통계연보를 작성할 때 마을단위의 패널자료 뿐만 아니라 시계열자료까지 제공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개별 지자체는 보다 다양하고 체계화된 시각에서 중장기 종합계획 등 지방농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또한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등록한 농업경영주가 농림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를 이전 보다 간소화할 수 있음. 신청서 제출서류에 등록DB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이를 등록정보로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신청 농업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농업경영체등록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는 작물재배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지원할 수 있음. 그것은 작물재배경영체가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경우 이를 사업자등록을 위한 입증자료(작물재배경영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등록제에 등록한 농업경영체 유형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한데, 이는 앞서 농업경영체 인증 기준 정립에서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농업경영체 구분을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음. 다시 말해 이것은 경종농업경영체 혹은 시설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작물재배업 종사자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2. 정책적 제언

- 지금까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정추진체계 개혁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농림사업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서 현재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일괄적 통합DB 구축방식임. 그런데 이러한 통합DB 구축방식에 대해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 통합DB 구축이 순조롭지 않게 진행되거나<sup>64</sup> 진행되더라도 등록정보의 정확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것은 일괄적 통합DB 구축방식 추진과 더불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다시 말해 제1안은 새로운 등록신청서에 입각한 일괄적 통합DB 구축방식 추진으로 하되, 제1안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농업경영체의 자격조건과 관련되는 항목(인적 정보, 경지정보, 축산정보)과 경지 관련 세 가지 직불사업 신청과 관련되는 항목만을 등록하게 하는 제2안 추진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sup>64</sup> 아직 등록제의 효과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체감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수의 농업인들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자산 및 소득정보 제공과 국세청 자료 등의 활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문제로 개인정보 제공이 보다 신중해지고 엄격해지는 상황이 일괄적 통합DB 구축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참고 문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3. 「2013년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계획」
- 김미복, 김수석. 2011.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2013a.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용시스템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2013b. 「농업경영체등록제의 등록실태와 활용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등. 2006.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유형 구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등. 201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등. 2006. 「맞춤형 농정 추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수산물식품부 기획조정관실. 2012. 「농림수산물식품사업 통합관리 및 DB 구축 추진계획」
- 오내원 등. 2006. 「농가등록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진수. 2013.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 영남대학교(미간행논문).
- 전상곤 등. 2010. 「축산업 면허제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양부 등. 1983. 「농가경제의 유형과 성격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grarMarkt Austria(AMA). 2010. *Bericht des Vorstandes*. Wien.
- AMA. 2013. Cross Compliance (Einhaltung anderweitiger Verpflichtungen). Merkblatt. Wien.
- Auswertungs- und Informationsdienst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aid).  
1998. *Kennzeichnung und Registrierung von Rindern*. Bonn.
- aid. 1999. *Das Herkunftssicherungs- und Informationssystem für Rinder*. Bonn.
- aid. 2006. *Management der Zahlungsansprüche in der Zentralen InVeKos-Datenbank*. Bonn
- EU. 2001. “Special Report on the Audit of the EAGGF-Guarantee -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 System (IACS) together with the Commission’s Replies.” *Special Report No. 4/2001*.
- Landwirtschaftskammer Niederösterreich. 2012. Bauer/Bäuerin werden - Bauer/Bäuerin sein. St. Pölten.
- Landwirtschaftskammer Niederösterreich. 2013. *Jahrebericht 2012*. St. Pölten.
- 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 2012. Gesetzliche Vorgaben für die Gründung eines landwirtschaftlichen Betriebes. Odenburg.
- (법령)
- AMA(Agrarmarkt Austria)-Gesetz 1992



Bauern-Sozialversicherungsgesetz 1979

Council Regulation (EC) No 1782/2003 of 29 September 2003 establishing common rules for direct schem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nd establishing certain support schemes for farmers

Council Regulation (EC) No 73/2009 of 19 January 2009 establishing common rules for direct schem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nd establishing certain support schemes for farmers

Gesetz über die Verarbeitung und Nutzung von Daten im Rahmen des integrierten Verwaltungs- und Kontrollsystem nach den gemeinschaftlichen Vorschriften für landwirtschaftliche Stützungsregelungen (InVeKoSDG)

Niederösterreich(NÖ) Bauordnung 1996

Niederösterreich(NÖ) Raumordnungsgesetz 1976

Tierseuchengesetz

Ver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von Stützungsregelungen und des Integrierten Verwaltungs- und Kontrollsystems (InVeKoSV)

Viehverkehrsverordnung

## 부록 1.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자료 유형
1. 일반 현황	1.1. 경영주 농업인	1.1.1. 성명	1.1.1.1. 경영주 성명	서술
		1.1.2. 국적	1.1.2.1. 경영주 주민등록번호	수치 (번호)
		1.1.3.전화번호	1.1.3.1. 경영주 전화번호	수치 (번호)
		1.1.4. 휴대전화번호	1.1.4.1. 경영주 휴대전화번호	수치 (번호)
		1.1.5 전자우편	1.1.5.1.경영주 전자우편	서술
		1.1.6. 주소	1.1.6.1. 경영주 거주지 주소	서술
		1.1.7. 영농이력	1.1.7.1. 경영주 취업동기	선택 (신규취업 귀농)
			1.1.7.2. 경영주 농업종사연수	수치 (년, 개월)
	1.1.8. 직불금 수령 계좌	1.1.8.1. 직불금 수령계좌번호	수치 (번호)	
	1.2. 경영주 외 농업인	1.2.1. 성명	1.2.1.1.경영주의농업인 성명	수치 (번호)
		1.2.2.주민번호	1.2.2.1.경영주의농업인 주민번호	수치 (번호)
		1.2.3. 경영주와의 관계	1.2.3.1. 경영주 외 농업인의 경영주와의 관계	선택 (1~9번)
		1.2.3. 영농이력	1.2.3.1. 경영주의 농업인 취업동기	선택 (신규취업 귀농)
	1.2.3.2.경영주의 농업인 농업종사연수		수치 (년, 개월)	
	1.3. 농업외 종사자	1.3.1. 성명	1.3.1.1. 농업외 종사자 성명	수치 (번호)
		1.3.2.주민번호	1.3.2.1. 농업외 종사자 주민번호	수치 (번호)
		1.3.3. 경영주와의 관계	1.3.3.1. 농업외 종사자 경영주와의 관계	선택 (1~9번)
		1.3.4. 직종	1.3.4.1.농업외종사자 직종	서술
	1.4. 기타 동거인	1.4.1. 성명	1.4.1.1. 기타 동거인 성명	수치 (번호)
		1.4.2.주민번호	1.4.2.1. 기타 동거인 주민번호	수치 (번호)
1.4.3. 경영주와의 관계		1.4.3.1. 기타 동거인 경영주와의 관계	선택 (1~9번)	
2. 생산	2.1. 농작물 생산	2.1.1. 농지 소재지	2.1.1.1. 지목별 소재지 주소	서술
		2.1.2. 지목	2.1.2.1 지목별 공부상 지목	서술
			2.1.2.2. 지목별 실제 지목	서술
		2.1.3.경영형태	2.1.3.1.지목별 경영형태	선택 (자경 공유 임차)

(계속)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자료 유형
2. 생산	2.1. 농작물 생산	2.1.4. 농지면적	2.1.4.1. 지목별 공부상 농지면적	수치 (면적, m <sup>2</sup> )
			2.1.4.2. 지목별 실제 농지면적	수치 (면적, m <sup>2</sup> )
		2.1.5. 재배면적	2.1.5.1. 지목별 재배품목	서술
			2.1.5.2. 지목별 품목별 노지 재배면적	수치 (면적, m <sup>2</sup> )
			2.1.5.3. 지목별 품목별 유리온실 재배 면적	수치 (면적, m <sup>2</sup> )
			2.1.5.4. 지목별 품목별 경질판온실 재 배면적	수치 (면적, m <sup>2</sup> )
			2.1.5.5. 지목별 품목별 자동화비닐온 실 재배면적	수치 (면적, m <sup>2</sup> )
			2.1.5.6. 지목별 품목별 일반비닐온실 재배면적	수치 (면적, m <sup>2</sup> )
			2.1.5.7. 지목별 품목별 육묘장	수치 (면적, m <sup>2</sup> )
		2.1.6. 미 이용 면적	2.1.6.1. 지목별 휴경 면적	수치 (면적, m <sup>2</sup> )
2.1.6.2. 지목별 폐경 면적	수치 (면적, m <sup>2</sup> )			
3. 작물 급	2.1. 농작물 생산	3.1.1. 쌀보전직불제	3.1.1.1. 지목별 쌀고정직불 수령횟수 (05-08)	수치 (횟수)
			3.1.1.2. 지목별 쌀변동직불 수령횟수 (05-08)	수치 (횟수)
			3.1.1.3. 지목별 쌀직불 기준년도 재배 작물(08-00)	서술
			3.1.1.4. 지목별 쌀직불 기준년도 이전 논농업기간	수치 (년)
			3.1.1.5. 지목별 쌀고정직불 전년도 지급면적	수치 (면적, m <sup>2</sup> )
			3.1.1.6. 지목별 쌀변동직불 전년도 지급면적	수치 (면적, m <sup>2</sup> )
			3.1.1.7. 지목별 쌀고정직불 금년도 신청면적	수치 (면적, m <sup>2</sup> )
			3.1.1.8. 지목별 쌀변동직불 금년도 신청면적	수치 (면적, m <sup>2</sup> )
		3.1.2. 밭농업직불제	3.1.2.1. 지목별 밭직불 전년도 논재배 작물	서술
			3.1.2.2. 지목별 밭직불 기준년도 재배 작물(12-14)	서술
			3.1.2.3. 지목별 밭직불 기준년도 이전 밭농업기간	수치 (년)

(계속)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자료 유형
3. 직불금	2.1. 농작물 생산	3.1.2. 밭농업직불제	3.1.2.4. 지목별 밭농업직불 전년도 지급면적	수치 (면적, m <sup>2</sup> )
			3.1.2.5. 지목별 밭농업직불 금년도 신청면적(동계)	수치 (면적, m <sup>2</sup> )
			3.1.2.6. 지목별 밭농업직불 금년도 신청면적(하계)	수치 (면적, m <sup>2</sup> )
			3.1.2.7. 지목별 밭농업직불 금년도 신청면적(이모작)	수치 (면적, m <sup>2</sup> )
		3.1.3. 조건불리직불제	3.1.2.8. 지목별 밭농업직불 금년도 신청면적(합계)	수치 (면적, m <sup>2</sup> )
			3.1.3.1. 지목별 조건불리 직불 전년도 지급면적	수치 (면적, m <sup>2</sup> )
		3.1.3.2. 지목별 조건불리직불 금년도 신청면적	수치 (면적, m <sup>2</sup> )	
4. 가축	4.1. 가축 사육 시설 및 규모	4.1.1. 가축사육시설 소재지	4.1.1.1. 가축사육시설 소재지	서술(주소)
		4.1.2. 시설현황	4.1.2.1. 시설 소재지별 공부상 시설면적	수치 (면적, m <sup>2</sup> )
			4.1.2.2. 시설소재지별 실제 시설면적	수치 (면적, m <sup>2</sup> )
			4.1.2.3. 시설 소재지별 자영, 임차형태	선택(자영, 임차)
			4.1.2.4. 시설소재지별 시설용도	서술
		4.1.3. 사육출하정보	4.1.3.1. 시설소재지별 축종	서술
4.1.3.2. 시설소재지별 축종별 사육규 모(마릿수)	수치 (마릿수)			
		4.1.3.3. 시설소재지별 축종별 전년도 출하량	수치 (마릿수)	
5. 유통 및 가공	5.1. 농작물 판매 및 유통	5.1.1. 식량품목	5.1.1.1. 식량품목별 판매금액	수치(금액, 만원)
			5.1.1.2. 식량품목별 판매처 비율(정부 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가공 업체, 직거래, 기타)	수치 (비율)
		5.1.2. 채소품목	5.1.2.1. 채소품목별 판매금액	수치(금액, 만원)
			5.1.2.2. 채소품목별 판매처 비율(도매 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 거래, 기타)	수치(비율)
		5.1.3. 과수품목	5.1.3.1. 과수품목별 판매금액	수치(금액, 만원)
			5.1.3.2. 과수품목별 판매처 비율(도매 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 거래, 기타)	수치 (비율)

(계속)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자료 유형
5 · 유통 및 가공	5.1. 농작물 판매 및 유통	5.1.4. 축산품목	5.1.4.1. 축산품목별 판매금액	수치(금액,만원)
			5.1.4.2. 축산품목별 판매처 비율(도매 시장, 조합계통출하, 민간계통 출하, 유통업체, 기타)	수치(비율)
		5.1.5. 기타 품목	5.1.5.1. 기타품목별 판매금액	수치(금액,만원)
			5.1.5.2. 기타 품목별 판매처 비율(도매 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 거래, 기타)	수치(비율)
	5.2. 가공	5.2.1.가공품목	5.2.1.1. 가공품목별 연간판매금액	수치(금액,만원)
6 · 추정 소득, 자산, 부채	6.1. 추정 소득	6.1.1. 추정농업소득	6.1.1.1. 농업조수입 전체평균액(소계)	수치(금액,천원)
			6.1.1.2. 농업조수입 전체평균액(분야별)	수치(금액,천원)
			6.1.1.3. 농업조수입 경영체 추정액(소계)	수치(금액,천원)
			6.1.1.4. 농업조수입 경영체 추정액(분야별)	수치(금액,천원)
			6.1.1.5. 농업소득 전체평균액(소계)	수치(금액,천원)
			6.1.1.6. 농업소득 전체평균액(분야별)	수치(금액,천원)
			6.1.1.7. 농업소득 경영체 추정액(소계)	수치(금액,천원)
			6.1.1.8. 농업소득 경영체 추정액(분야별)	수치(금액,천원)
	6.1.2. 추정농업외 소득	6.1.2.1. 추정농업외소득(소계)	수치(금액,천원)	
		6.1.2.2. 겸업소득	수치(금액,천원)	
		6.1.2.3. 급여소득	수치(금액,천원)	
		6.1.2.4. 자본소득	수치(금액,천원)	
		6.1.2.5. 이전소득	수치(금액,천원)	
		6.1.2.6. 비경상소득	수치(금액,천원)	
	6.2. 자산	6.2.1. 자산(합계)	6.2.1.1. 자산(합계)	수치(금액,천원)
		6.2.2.고정자산	6.2.2.1. 고정자산	수치(금액,천원)
		6.2.3.금융자산	6.2.3.1. 금융자산	수치(금액,천원)
		6.2.4.재고자산	6.2.4.1. 재고자산	수치(금액,천원)
	6.3. 부채	6.3.1. 부채(합계)	6.3.1.1. 부채(합계)	수치(금액,천원)
		6.3.2. 농업용 부채	6.3.2.1. 농업용 부채	수치(금액,천원)
6.3.3. 가계용 부채		6.3.3.1. 가계용 부채	수치(금액,천원)	
6.3.4. 겸업용 부채		6.3.4.1. 겸업용 부채	수치(금액,천원)	
6.3.5. 기타 부채		6.3.5.1. 기타 부채	수치(금액,천원)	

**부록 2.**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농업인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농업인용)**

※ 제5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7쪽 중1쪽)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유형 >	< 농가(법인)고유번호 > < 경영주 번호 >

1. 일반현황

①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②주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③영농이력	③-1 취업동기		③-2 농업종사연수	
	신규취업		□		
	귀농		□		
	년		개월		
④직불금 등 수령계좌	은행		계좌번호		

⑤경영주 외의 농업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영농이력				
				취업동기				
				신규취업	□	귀농	□	농업종사 연수
				신규취업	□	귀농	□	

⑥농업 외 종사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직종

⑦기타 동거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2. 농작물 생산

⑧ 농지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⑨경영형태			농지면적(m <sup>2</sup> )	
		공부	실제	자경	공유	임차	공부상

⑧ 농지 번호	⑪재배면적(m <sup>2</sup> )						미이용(m <sup>2</sup> )	
	재배 품목 (예정품목 포함)	노지	⑪-1시설				휴경	폐경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 비닐온실	일반 비닐온실		

210mm×297mm[일반용지 70g/m<sup>2</sup>(재활용품)]







(제7쪽 중4쪽)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 따라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란	
읍·면·동장	농관원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인 농업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내지 제39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li> <li>2.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토지대장·건축물(위반건축물) 대장·농지조서 정보</li> <li>3.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li> <li>4.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li> <li>5. 농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li> <li>6.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li> <li>7. 농업인 면세유 배정 및 공급정보</li> <li>8.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인정보</li> <li>9.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차량등록원부 등 고자산정보</li> <li>10. 소득, 자산, 부채, 급여 등의 수급정보</li> </o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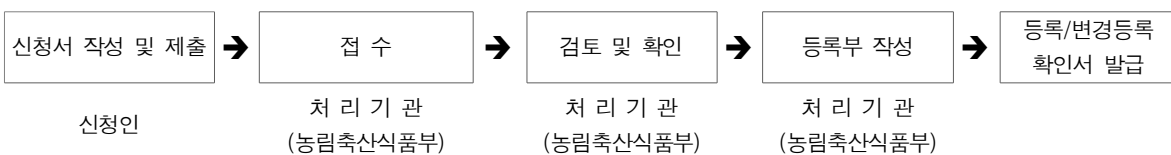
※ 「전자정부법」 제36조 내지 제39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 □**

- \* 신청인은 위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정보와 관련하여 별첨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신청 등록된 개인정보를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합니다.
- \* 본 신청서에 작성한 자료와 농업경영정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자)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①란의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 축산물 등의 경작·사육 활동의 의사결정 및 영업소득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 말합니다.

\* 성명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이메일)을 적습니다.

②란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 거주지)를 적습니다.

③란은 영농이력을 적습니다.

③-1란 취업동기는 신규 영농취업과 타직종에서 귀농으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sqrt{\quad}$  표시 합니다.

③-2란은 농업종사연수를 적습니다..

④란은 신청한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⑤란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배우자 포함) 인적사항, 경영주와의 관계, 영농이력을 적습니다.

\* 경영주와의 관계

01 배우자	02 미혼자녀	03 기혼자녀	04 손자녀	05 부모
06 조부모	07 미혼형제/자매	08 기타	09 고용인	

\* 영농이력 작성요령은 ③과 동일

⑥란은 세대원 중 농업외 종사자의 인적사항, 경영주와의 관계, 종사 직종을 적습니다.

⑦란은 세대원 중 무직자, 학생 등 비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경영주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⑧란은 신청농지 정보 작성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⑨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에 따라 자경, 공유, 임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경 :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공유 : 농업경영체가 본인과 타인의 공동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임차 : 농업경영체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 다만, 경영주, 배우자 등 동일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으로 적습니다.

⑩란은 실제 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 휴폐경 면적)을 적습니다.

⑪란은 등록신청시 당해 연도 재배(직불금을 신청)할 품목과 면적을 적습니다.

⑫-1란은 해당농지의 품목을 재배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재배면적과 시설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예시)재배면적/시설면적 → 500/1,000

⑫-2란은 직불금 대상농지 여부 해당항목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쌀, 밭 직불금만 해당)

⑫-3란은 2005~2008년까지 신청인이 쌀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횟수를 적습니다.

⑫-4란은 (밭농업직불금 중 이모작직불금 신청자만 기재)이모작 작물 재배 전 벼, 미나리, 연근, 왕골 중 재배한 품목을 적습니다.

⑬-3란은 기준연도(쌀: 1998~2000년/ 밭:2012~2014년)에 재배한 작물의 품목명을 적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기록합니다.

\* 1998.1.1~2000.12.31 논 재배 작물 : 벼, 미나리, 연근, 왕골

\*\* 2012.1.1~2014.12.31 밭 재배 작물 : 콩 등 29개 밭 농업직불제 지급대상 품목

⑭-4란은 ⑩-3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기준연도 이전에 논작물(벼, 미나리, 연근, 왕골), 밭작물(콩 등 29개 밭작물 대상품목)을 재배한 기간을 적습니다.

\* ⑩-3,4란은 기준에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서 전산등록 시 전년도에 직불금 지급정보가 자동연계 되므로 기재 불요

⑮란은 해당농지의 당해연도 직불금 신청 면적을 적습니다

\* 밭 직불의 경우 신청면적을 동계, 하계, 이모작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밭직불 신청면적 중 동계, 하계는 둘 중 한 가지만 신청 가능하며, 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과거 쌀고정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농지 또는 물을 가두어 벼, 미나리, 연근, 왕골을 재배한 농지)에서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에 시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을 재배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⑯란은 가족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소유형태, 사용용도를 적습니다.

⑰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족의 축종,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 전년도 출하량을 적습니다.

⑱란은 전년도에 생산하여 판매한 주요 품목을 적습니다.

⑲-1란은 ⑱에서 판매한 품목의 전년도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⑲-2란은 ⑱에 기재한 품목별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판매금액의 점유비율을 적습니다.

⑲-3란은 농작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⑲-4란의 평균액은 등록된 농지정보를 바탕으로 자동계산(재배면적 x 재배품목 단위면적당 수량 x 가격)되며(신청인 작성 불요) 이를 참고로 경영체별 농업조수입 추정액 (농산물판매금액)을 적습니다.

⑲-5란의 평균액은 ⑲-4-경영비(또는 x 소득율)로 자동계산(신청인 작성 불요)되며 이를 참고로 경영체별 농업소득추정액을 적습니다.

⑳란은 농업 외 임업,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종사를 통해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㉑란은 농업 외 임업 및 다른집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농업수입 금액을 적습니다.

㉒란은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㉓란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적보조금 : 농업보조금, 농업외 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금, 기초연금 등

\* 사적보조금 : 출타가족 또는 친인척 등 타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보조금

㉔란은경조수입(축의금, 조의금), 퇴직일급, 사고보상금, 이주만 주거대책비 일일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타가구로부터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㉕란은 토지, 건물, 기계-기구 및 비품, 대식물과 대동물등 고정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㉖란은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갯돈, 빌려준 돈, 미수금, 선금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㉗란은 소동물, 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㉘란은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구입 등)를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㉙란은 가계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용품비, 관혼상제비, 의료비, 기타 생활비, 교육비 등 가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㉚란은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 건물, 기계, 기타 겸업활동을 위한 자출)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㉛란은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및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차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타인에게 채무 보증을 선 후 대신 갚게 된 부채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 직불금 신청 구비서류

### I.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나.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1)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 다.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 라.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 마.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 바.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 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 나.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4.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1)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2)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II. 발농업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시행규칙 제40조의3에 따라 발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서 당해연도에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시행규칙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시행규칙 제1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서 지정된 농지
    -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시행규칙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III.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경작자증명서류(임차농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별첨 1]

(제7쪽중7쪽)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경영주를 포함한 농업인(이하 '본인'이라 함)과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본인의 등록 신청정보 및 경영정보 내용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업실행기관(지자체 포함) 등 공공기관에서 정책(사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대법원, 중앙행정기관(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세청 등과 그 소속·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화,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보험업법』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허가 등을 받은 보험회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민원처리기관'이라 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게 수집·이용·제공·조회 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경영주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영주의 농업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영주의 농업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쌀 등 직접지불제 시행으로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과 맞춤형 농정 지원 - 맞춤형 농정지원/농업인 서비스 지원/지방농정 지원/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li> </ul>
수집·이용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식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인·농업외종사자기타 동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종,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li> </ul> </li> <li>농지정보(취득, 처분, 말소, 전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별 지목, 소유자, 면적, 정보보조용자금 수급, 친환경인증정보 등</li> </ul> </li> <li>농업외소득자산부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소득정보, 각종 연금 수혜정보, 부채정보 등</li> </ul> </li> <li>금융거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li> </ul> </li> <li>기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채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지실경작 여부, 정책자금 수령정보, 가족사육정보, 농(축)산물 유통·가공정보, 농기계 보유정보, 교육이수 정보, 면세유 배정정보 등</li> </ul> </li> </ul> <p>※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p>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말소 또는 해지(해제)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등록말소 후에도 직불금 수혜정보 관리등을 위하여 위의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안내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직불금 수령 및 맞춤형 농정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법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농협 등 금융기관, 공공기관, 민원처리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li> <li>업무위탁기관(자)에 대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탁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li> </ul> </li> </ul>
제공·조회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경영체(경영주를 포함한 농업인) 실질불제 등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농림사업 시행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li> <li>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직불금의 부정·중복 지원의 방지 등</li> <li>맞춤형 농정지원 등을 위한 등록정보의 사실여부 확인,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법령상 의무이행 등</li> </ul>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식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인·농업외종사자기타 동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종,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li> </ul> </li> <li>농지정보(취득, 처분, 말소, 전용 등) : 농지별 지목, 소유자, 면적, 정보보조용자금 수급, 친환경인증정보 등</li> <li>농업외소득자산부채정보 : 종합소득정보, 각종 연금 수혜정보, 부채정보 등</li> <li>금융거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li> </ul> </li> <li>기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채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지실경작 여부, 정책자금 수령정보, 가족사육정보, 농(축)산물 유통·가공정보, 농기계 보유정보, 교육이수 정보, 면세유 배정정보 등</li> </ul> </li> </ul> <p>※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p>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동의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말소 또는 해지(해제)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맞춤형 농정지원,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직불금 중복 지원 방지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동의 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안내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직불금 수령 및 맞춤형 농정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